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20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회



#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



#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

Installation manual of disabled facilities of for the visually impaired  
Public facilities, Park, Apartment house

2017. 12.





# C O N T E N T S

<b>제1장 공통사항</b>	<b>3</b>
1. 용어 정리	3
<b>제2장 공공건물</b>	<b>7</b>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7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3
3. 주출입구(문)	17
4. 실내 출입구(문)	23
5. 복도 및 통로	26
6. 계단	29
7. 승강기(엘리베이터)	33
8. 에스컬레이터	36
9. 경사로	38
10. 화장실	40
11. 민원실 내 편의시설	44
<b>제3장 공원</b>	<b>49</b>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49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원 부설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경우)	55
3. 주출입구(문)	59
4. 보도	63
5. 안내 및 경고 시설	66
6. 계단	69
7. 승강기(엘리베이터)	73
8. 에스컬레이터	76
9. 경사로	78
10. 화장실	80
11. 공원시설	84
12. 매표시설	86

# C O N T E N T S

<b>제4장 공동주택</b>	<b>91</b>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9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97
3. 주출입구(문)(지하주차장 연결 포함)	101
4. 실내 출입구(문)	105
5. 복도 및 통로	107
6. 계단	110
7. 승강기(엘리베이터)	114
8. 에스컬레이터	117
9. 경사로	119
10. 화장실	121
11. 객실 및 침실	125
12. 경비실	127
13.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29
<b>부록</b>	<b>135</b>
부록 1. 점자블록	135
부록 2. 점자표지판	140
부록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145
부록 4. 음향신호기	148
부록 5. 음성유도기	151
부록 6. 경보 및 피난설비	153
부록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154
부록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5

# C O N T E N T S

## 〈표 목차〉

〈표 부록 2-1〉 점자 표기 문구 예시	144
〈표 부록 4-1〉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148
〈표 부록 4-2〉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148
〈표 부록 4-3〉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149
〈표 부록 8-1〉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55
〈표 부록 8-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55
〈표 부록 8-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158
〈표 부록 8-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62
〈표 부록 8-5〉 공동주택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163

## 〈그림 목차〉

〈그림 2-1〉 접근로 예시	7
〈그림 2-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8
〈그림 2-3〉 각 동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9
〈그림 2-4〉 보행안전통로	10
〈그림 2-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11
〈그림 2-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11
〈그림 2-7〉 접근로에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12
〈그림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13
〈그림 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14
〈그림 2-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15
〈그림 2-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16
〈그림 2-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16
〈그림 2-13〉 주출입구 예시	17
〈그림 2-14〉 주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만 있는 경우 평면도, 단면도	19
〈그림 2-15〉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예시	20
〈그림 2-16〉 점자안내판 예시	20
〈그림 2-17〉 스탠드형, 벽면형 점자안내판 예시	21

# C O N T E N T S

〈그림 2-18〉 주출입구 동선 분리 예시	22
〈그림 2-19〉 방풍실 폭, 점자안내판 이격거리별 점형블록 설치예시	22
〈그림 2-20〉 실내 출입문 예시	23
〈그림 2-21〉 실내출입문 평면도, 입면도	24
〈그림 2-22〉 사무실 점자표지판 예시	24
〈그림 2-23〉 실내출입문 점형블록 설치위치(권장)	25
〈그림 2-24〉 복도 및 통로 예시	26
〈그림 2-25〉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1	27
〈그림 2-26〉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2	27
〈그림 2-27〉 시각장애인 유도 예시	28
〈그림 2-28〉 계단 예시	29
〈그림 2-29〉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30
〈그림 2-30〉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30
〈그림 2-31〉 계단의 식별	31
〈그림 2-32〉 계단의 조명	31
〈그림 2-33〉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32
〈그림 2-34〉 승강기 예시	33
〈그림 2-35〉 엘리베이터 구조, 조작반	34
〈그림 2-36〉 엘리베이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예시	35
〈그림 2-37〉 에스컬레이터 예시	36
〈그림 2-38〉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37
〈그림 2-39〉 경사로 예시	38
〈그림 2-40〉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39
〈그림 2-41〉 화장실 예시	40
〈그림 2-42〉 화장실 점자표지판	42
〈그림 2-43〉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42
〈그림 2-44〉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43
〈그림 2-45〉 민원실 내 편의시설 사례	44
〈그림 2-46〉 8배율 이상의 확대경	45
〈그림 2-47〉 점자업무안내책자	45

# C O N T E N T S

〈그림 3-1〉 접근로 사례	49
〈그림 3-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50
〈그림 3-3〉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50
〈그림 3-4〉 보행안전통로	51
〈그림 3-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52
〈그림 3-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52
〈그림 3-7〉 접근로에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54
〈그림 3-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55
〈그림 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56
〈그림 3-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57
〈그림 3-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58
〈그림 3-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58
〈그림 3-13〉 주출입구 사례	59
〈그림 3-14〉 주출입구 경사로 평면도, 단면도	60
〈그림 3-15〉 점자안내판 예시	61
〈그림 3-16〉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62
〈그림 3-17〉 공원 내 보도 사례	63
〈그림 3-18〉 보도 구성 체계	64
〈그림 3-19〉 공원시설과의 연계 사례 1	65
〈그림 3-20〉 공원시설과의 연계 사례 2	65
〈그림 3-21〉 공원 내 점자안내판 사례	66
〈그림 3-22〉 보행안전통로의 경우 안내시설 등(점자안내판) 선형블록 설치 예시	67
〈그림 3-23〉 위험지역에 바닥재 색상 및 질감,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	68
〈그림 3-24〉 계단 예시	69
〈그림 3-25〉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70
〈그림 3-26〉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70
〈그림 3-27〉 계단의 식별	71
〈그림 3-28〉 계단의 조명	71
〈그림 3-29〉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72
〈그림 3-30〉 승강기 예시	73

# C O N T E N T S

〈그림 3-31〉 승강기 구조, 조작반	74
〈그림 3-32〉 승강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75
〈그림 3-33〉 에스컬레이터 예시	76
〈그림 3-34〉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77
〈그림 3-35〉 경사로 예시	78
〈그림 3-36〉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79
〈그림 3-37〉 화장실 예시	80
〈그림 3-38〉 화장실 점자표지판	82
〈그림 3-39〉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83
〈그림 3-40〉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83
〈그림 3-41〉 공원 시설(점자안내판) 사례	84
〈그림 3-42〉 매표 시설 점자블록 사례	86
〈그림 4-1〉 접근로 사례	91
〈그림 4-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92
〈그림 4-3〉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92
〈그림 4-4〉 보행안전통로	93
〈그림 4-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94
〈그림 4-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94
〈그림 4-7〉 접근로상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95
〈그림 4-8〉 점자안내판 예시	96
〈그림 4-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97
〈그림 4-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98
〈그림 4-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99
〈그림 4-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100
〈그림 4-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100
〈그림 4-14〉 주출입구 사례	101
〈그림 4-15〉 주출입구 경사로 평면도, 단면도	103
〈그림 4-16〉 주출입구 점자블록 평면도	104
〈그림 4-17〉 실내 출입문 예시	105
〈그림 4-18〉 실내출입문 평면도, 입면도	106



# C O N T E N T S

〈그림 4-19〉 벽면형 점자표지판 예시	106
〈그림 4-20〉 복도 및 통로 예시	107
〈그림 4-21〉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1	108
〈그림 4-22〉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2	108
〈그림 4-23〉 시각장애인 유도 예시	109
〈그림 4-24〉 계단 예시	110
〈그림 4-25〉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111
〈그림 4-26〉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111
〈그림 4-27〉 계단의 식별	112
〈그림 4-28〉 계단의 조명	112
〈그림 4-29〉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113
〈그림 4-30〉 승강기 예시	114
〈그림 4-31〉 승강기 구조, 조작반	115
〈그림 4-32〉 승강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116
〈그림 4-33〉 에스컬레이터 예시	117
〈그림 4-34〉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118
〈그림 4-35〉 경사로 예시	119
〈그림 4-36〉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120
〈그림 4-37〉 화장실 예시	121
〈그림 4-38〉 화장실 점자표지판	123
〈그림 4-39〉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123
〈그림 4-40〉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124
〈그림 4-41〉 벽면형 점자표지판 예시	126
〈그림 4-42〉 경비실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설치 사례	127
〈그림 4-43〉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128
〈그림 4-44〉 주민공동시설 사례	129
〈그림 4-45〉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130
〈그림 4-46〉 사무실 점자표지판 예시	131
〈그림 4-47〉 실내출입문 점형블록 설치위치	132
〈그림 부록 1-1〉 선형블록	135

# C O N T E N T S

〈그림 부록 1-2〉 점형블록	135
〈그림 부록 1-3〉 점자블록 규격	136
〈그림 부록 1-4〉 점자블록 사용을 금하는 재질	137
〈그림 부록 1-5〉 점자블록 설계 예시	138
〈그림 부록 1-6〉 점자블록 각도별 설계 예시	139
〈그림 부록 1-7〉 점자블록 잘못 설계한 예시	139
〈그림 부록 1-8〉 횡단보도 연석이 곡선인 경우 예시	139
〈그림 부록 2-1〉 승강기 조작반 예시	140
〈그림 부록 2-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141
〈그림 부록 2-3〉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142
〈그림 부록 2-4〉 손잡이 점자표지판 마감	143
〈그림 부록 2-5〉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144
〈그림 부록 2-6〉 손잡이점자표지판 설치 예시	144
〈그림 부록 3-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146
〈그림 부록 3-3〉 스탠드형, 벽면형 점자안내판	147
〈그림 부록 5-1〉 음성유도기 사례	151
〈그림 부록 6-1〉 경보 및 피난설비 사례	153
〈그림 부록 7-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규격	154
〈그림 부록 7-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재질	154
〈그림 부록 1-2〉 점형블록	135
〈그림 부록 1-3〉 점자블록 규격	136
〈그림 부록 1-4〉 점자블록 사용을 금하는 재질	137
〈그림 부록 1-5〉 점자블록 설계 예시	138
〈그림 부록 1-6〉 점자블록 각도별 설계 예시	139
〈그림 부록 1-7〉 점자블록 잘못 설계한 예시	139
〈그림 부록 1-8〉 횡단보도 연석이 곡선인 경우 예시	139
〈그림 부록 2-1〉 승강기 조작반 예시	140
〈그림 부록 2-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141
〈그림 부록 2-3〉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142
〈그림 부록 2-4〉 손잡이 점자표지판 마감	142

# C O N T E N T S

〈그림 부록 2-5〉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144
〈그림 부록 2-6〉 손잡이점자표지판 설치 예시	144
〈그림 부록 3-1〉 점자안내판 예시	145
〈그림 부록 3-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146
〈그림 부록 3-3〉 스탠드형, 벽면형 점자안내판	147
〈그림 부록 5-1〉 음성유도기 사례	151
〈그림 부록 6-1〉 경보 및 피난설비 사례	153
〈그림 부록 7-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규격	154
〈그림 부록 7-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재질	154



# 공통사항

## 1. 용어 정리





# 제1장 공통사항

## 1. 용어 정리

- 1) 시각장애인: 시각에 장애가 발생하여 보행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저시력인과 전맹인을 지칭한다. 저시력인은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시각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시각장애인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다.
- 2)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차도와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通行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보도와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通行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4)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5)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으로 장애인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금번 매뉴얼에서는 모든 노상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다.
- 6) 유효폭: 노상시설 등 보행장애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한다.
- 7) 턱낮추기: 장애인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교통섬,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 8) 경사로: 계단이 설치된 육교나 지하도, 건물 진입로 등에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등의 원활한 통행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시설물을 말한다.
- 9)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각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다.

- 10) 음향신호기: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11)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2) 고원식횡단보도: 횡단하는 부근의 높이를 보도의 높이까지 높여서 차량의 속도를 낮추거나 횡단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 13)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턱낮추기한 부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길말뚝<sup>1)</sup>’ 이라고도 말한다.(이하 길말뚝이라 칭함)
- 14) 계단참: 계단에서 연속높이가 높은 경우에 통행객의 안전을 위하여 디딤판을 길게 늘여 계단중간에 배치하는 여유 공간 이다.
- 15)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등 이다.
- 16)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금융시설 등 이다.
- 17) 공원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 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의하는 공원시설로 출입구, 보도,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

1)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외래어 다듬은 말 ‘볼라드’ 대신 ‘길말뚝’



# 공공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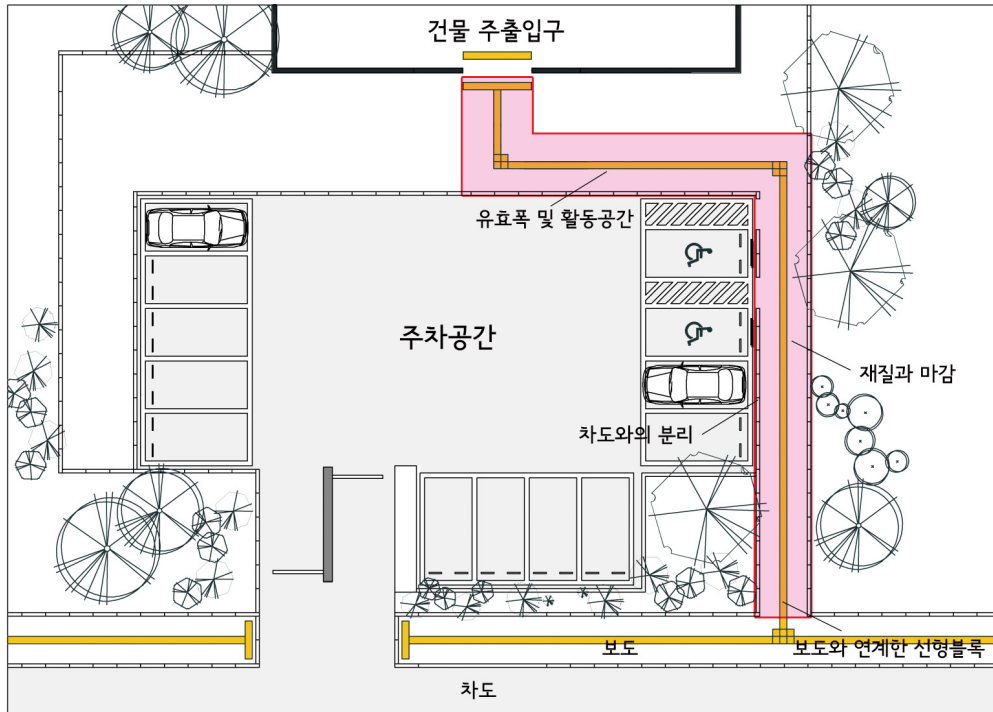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출입구
4. 실내 출입구(문)
5. 복도 및 통로
6. 계단
7. 엘리베이터(승강기)
8. 에스컬레이터
9. 경사로
10. 화장실
11. 민원실 내 편의시설





## 제2장 공공건물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그림 2-1〉 접근로 예시

#### 1) 설계 원칙

건축물 대지면적 인근 보도 및 부설주차장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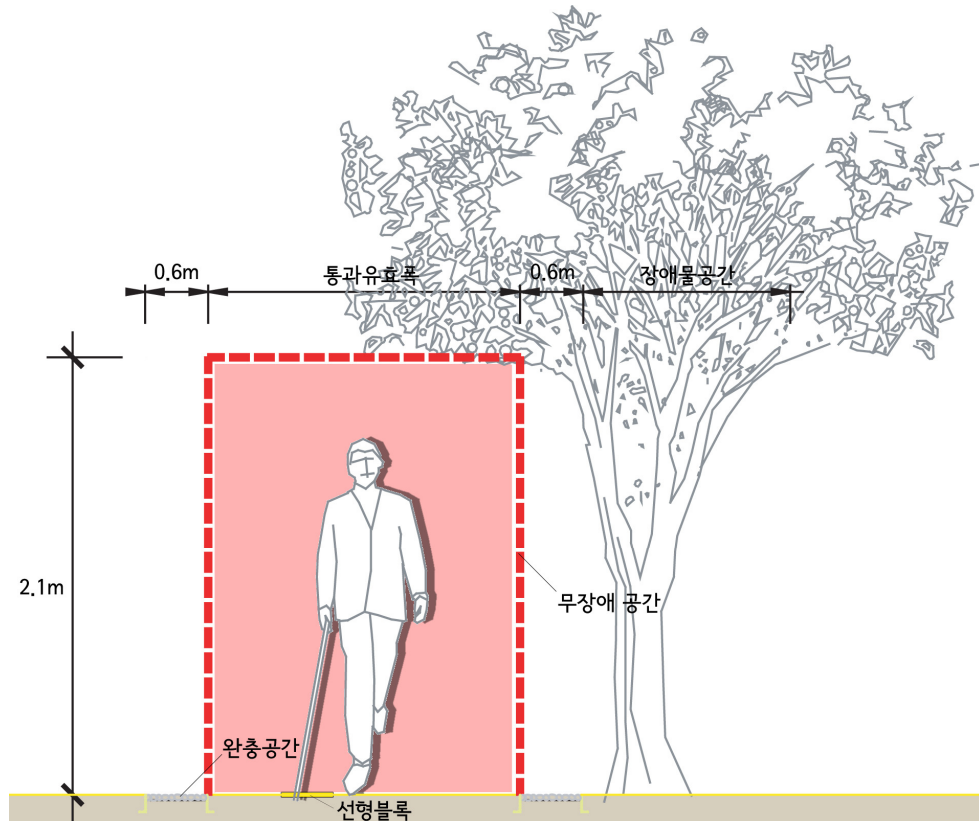
#### 2) 지침 요약

접근로는 충분한 유효폭 및 활동 공간, 완만한 기울기, 차도와의 경계,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과 평탄한 바닥 마감, 보행장애물 제거,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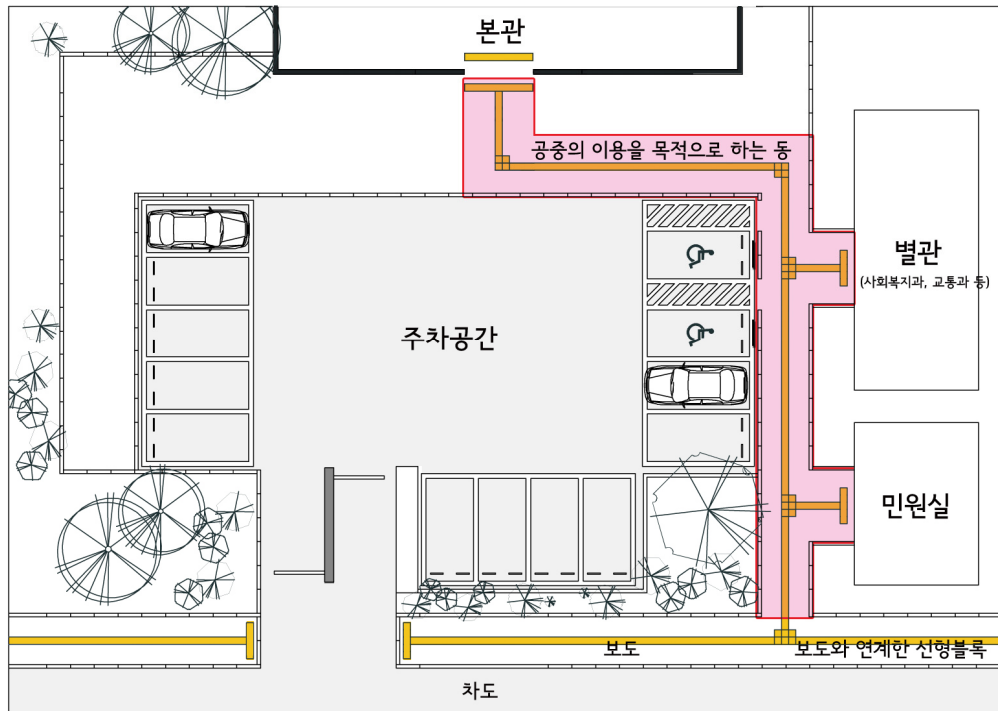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재질 및 바닥마감, 유효폭, 기울기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② 통과 유효폭은 가로수, 가로등, 간판 등 보행장애물을 제외한 1.2m 이상으로 하며, 교차부 근은 1.5m 이상으로 한다.
- ③ 주출입구까지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해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 최소 1/120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단, 건물 대지가 산, 언덕 등에 위치하여 접근로 기울기를 1/120이하로 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을 완화하도록 하나, 최소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④ 바닥에 2cm 초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⑤ 시설 대지면적 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동이 산재되어 있을 경우 각 동의 주 출입구까지 모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주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도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접근로와 연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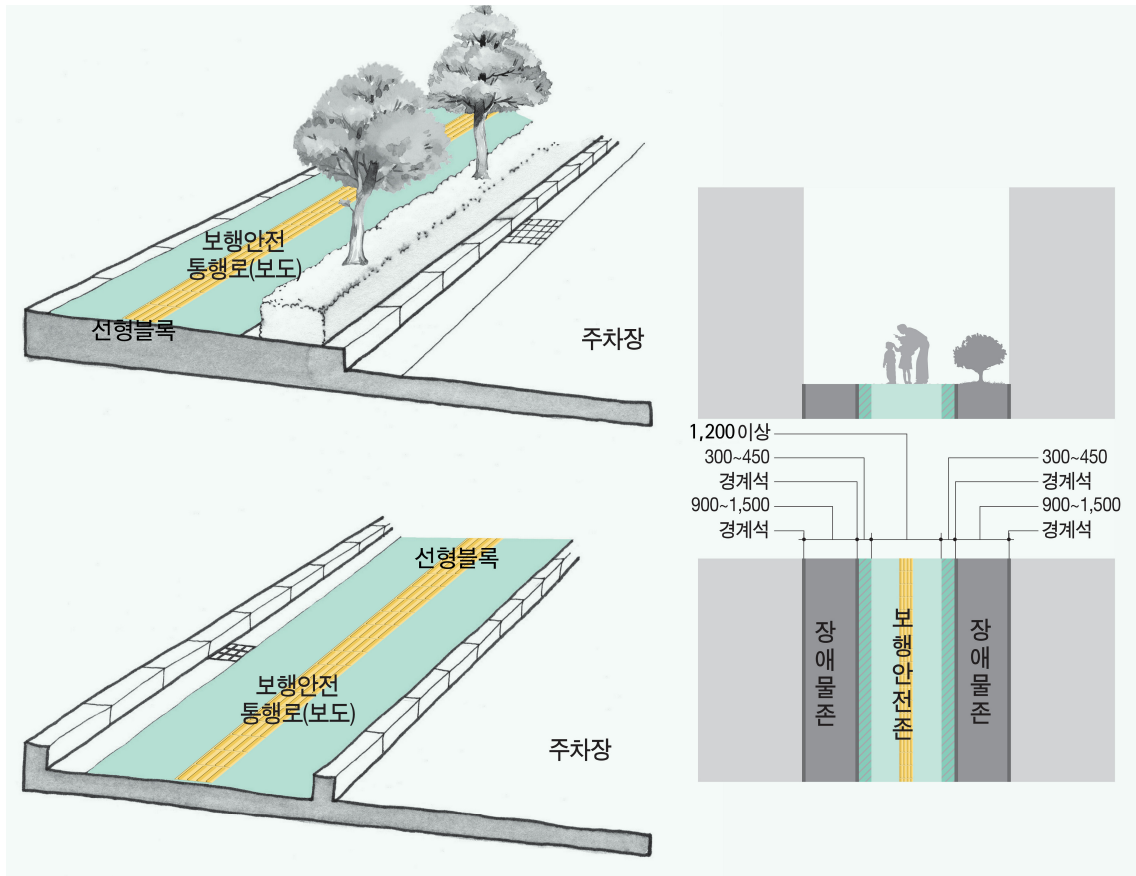
〈그림 2-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그림 2-3〉 각 동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 (2) 선형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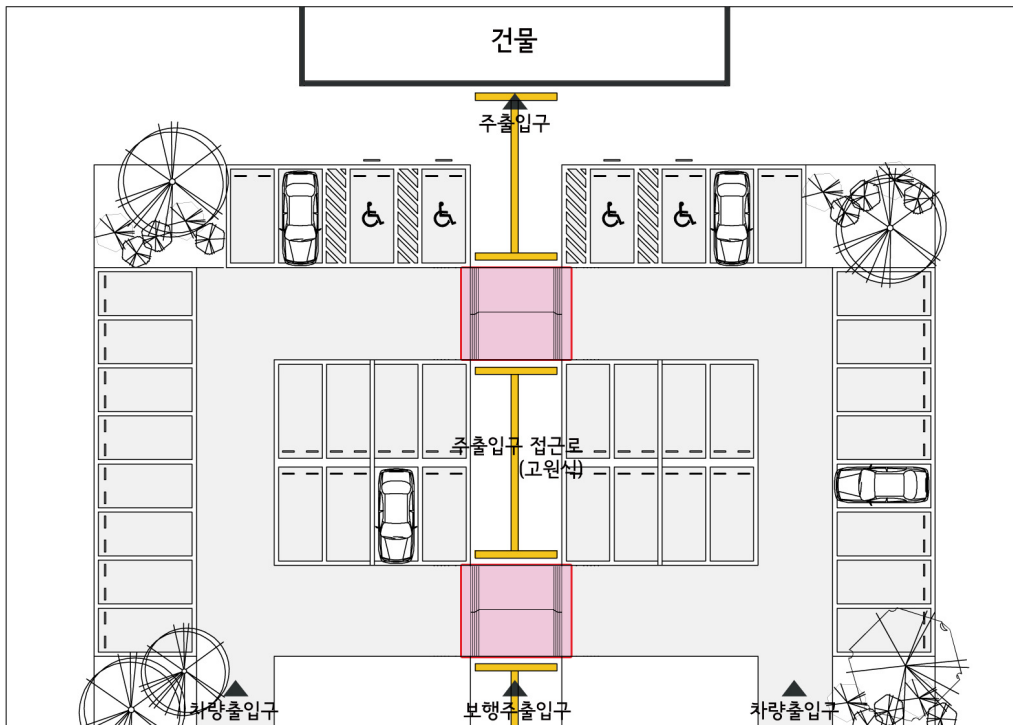
- ①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 주출입구(문)까지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연속 설치해야한다.
- ② 선형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60c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폭이 1.5m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 ③ 단, 접근로에 사감(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점자블록 기능 이상의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었을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및 단체의 검토 하에 선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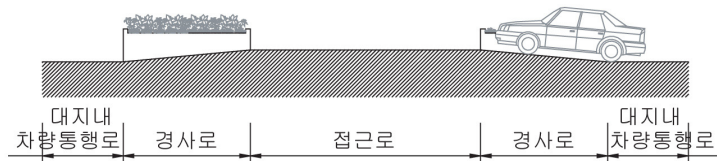
〈그림 2-4〉 보행안전통로

### (3) 차도와 보도 분리, 보행장애물 제거

- ① 접근로와 차도와 보행로는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차도와 보행로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해야 한다.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울타리 및 기타 공작물은 임시적이 아닌 고정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석이나 기타 공작물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달리 해야 한다.
- ③ 차도와 교차되는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동 횡단보도에는 횡단 폭 전면 0.3m 위치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④ 가로등, 전주, 간판, 벤치, 휴지통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행장애물은 접근로 보행 구간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수직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 ⑤ 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 구멍,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림 2-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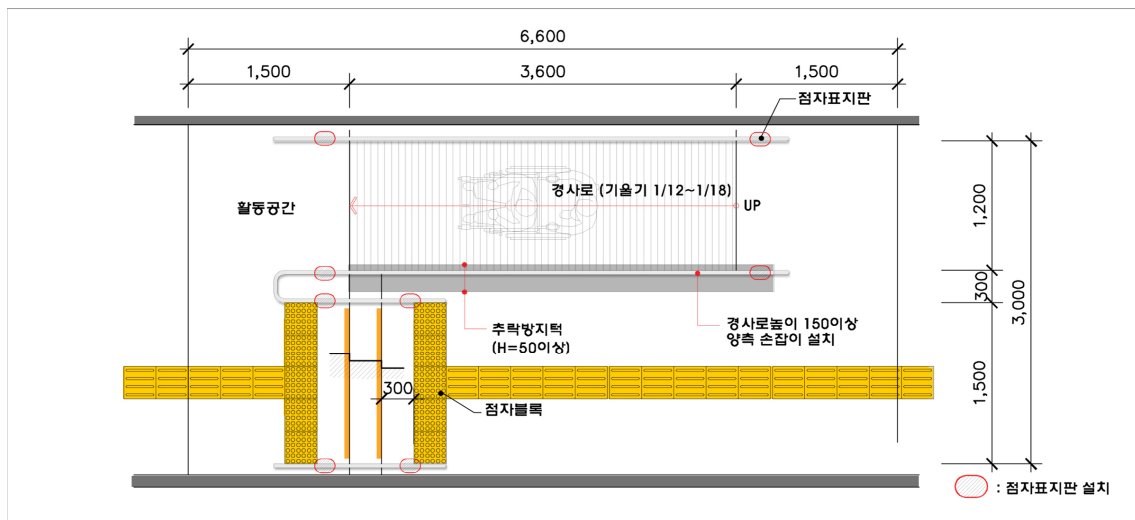
〈그림 2-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 (4) 외부 계단(건물 접근로에 설치되는 모든 계단)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한다.
- ② 계단의 형태는 돌음, 나선형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직선 또는 꺾임으로 하고 디딤판의 넓이와 철평의 높이는 균일해야한다. 또한, 조명을 설치하여 계단 디딤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계단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재질, 색상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계단의 양측면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으로 하며 계단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계단의 시·종점 및 참부분은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시·종점 양쪽 수평손잡이에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 ⑤ 기타 세부기준은 제2장 제6호 계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5) 외부 경사로(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접근로 내에 있는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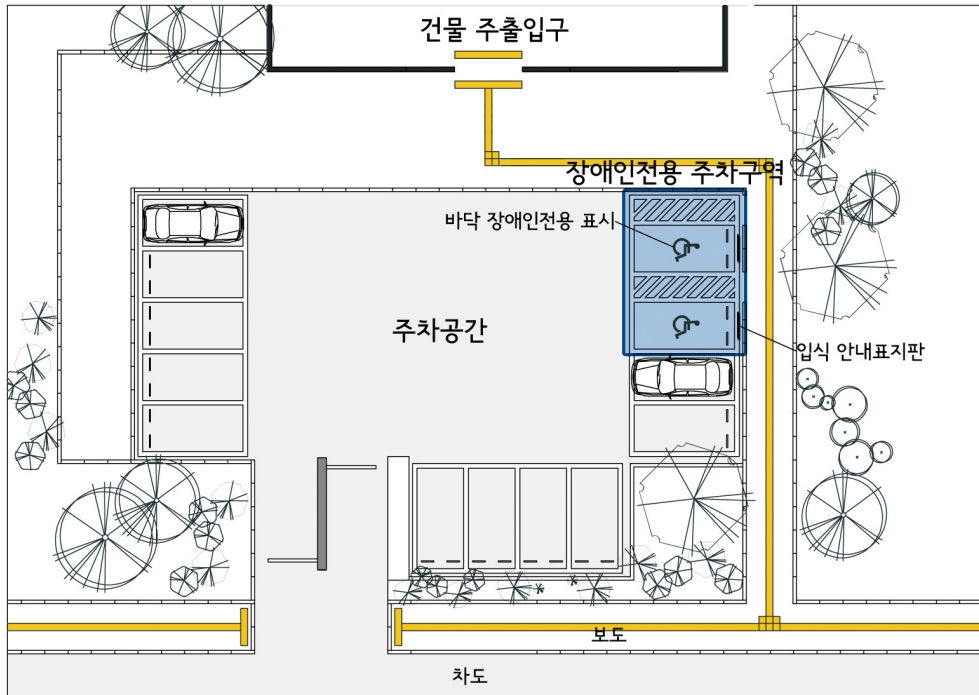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굴절 및 시작과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침을 설치해야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한계사항이 있을 시 유효폭은 0.9m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건축물 조건 및 공간 경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12이하까지도 완화 가능하다.
- ③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점자문구 예: ‘→ 송파구청 본관 주출입구 방면 경사로’, ‘← 좌측 제1별관, 우측 민원봉사실 방면’ 등)
- ⑤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1/18 이하의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단, 기울기가 1/18초과 ~ 1/12이하인 경우 전면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경사로에는 선형블록을 생략한다.
- ⑥ 계단과 경사로 설치가 같이 되어있는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점형블록은 단차전면에 설치한다.)
- ⑦ 추가적으로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기준은 제2장 9호 경사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그림 2-7〉 접근로에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림 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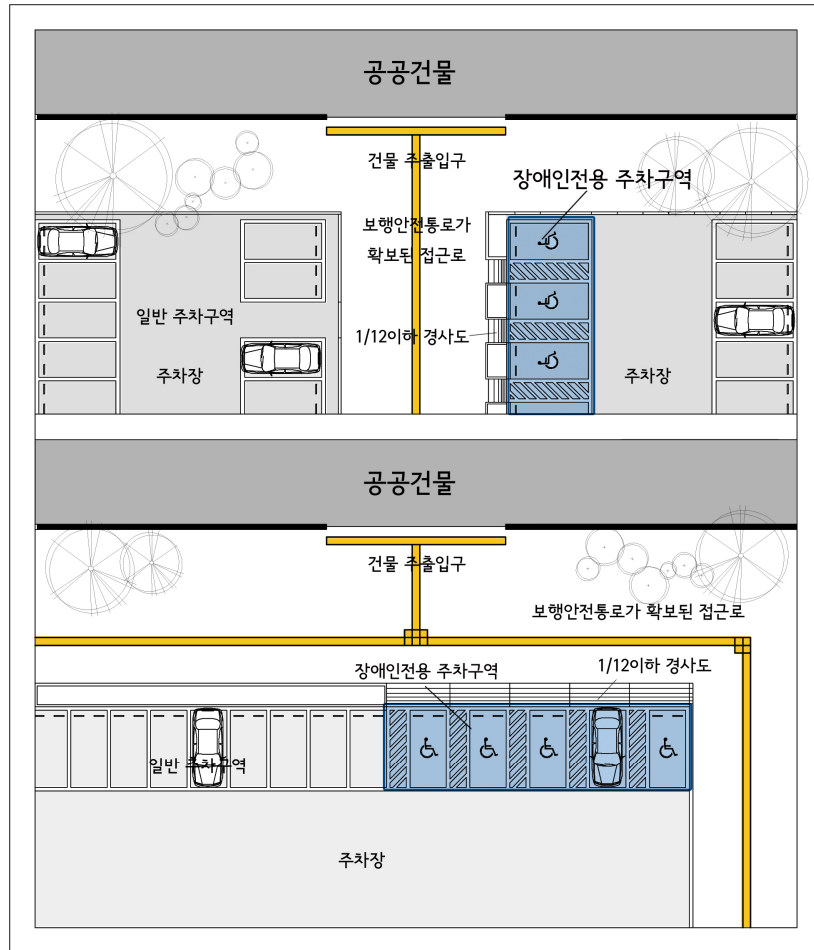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지 및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고려한 설치 위치, 합당한 주차구역의 규격, 주목성 있는 주차구역의 표지 및 안내·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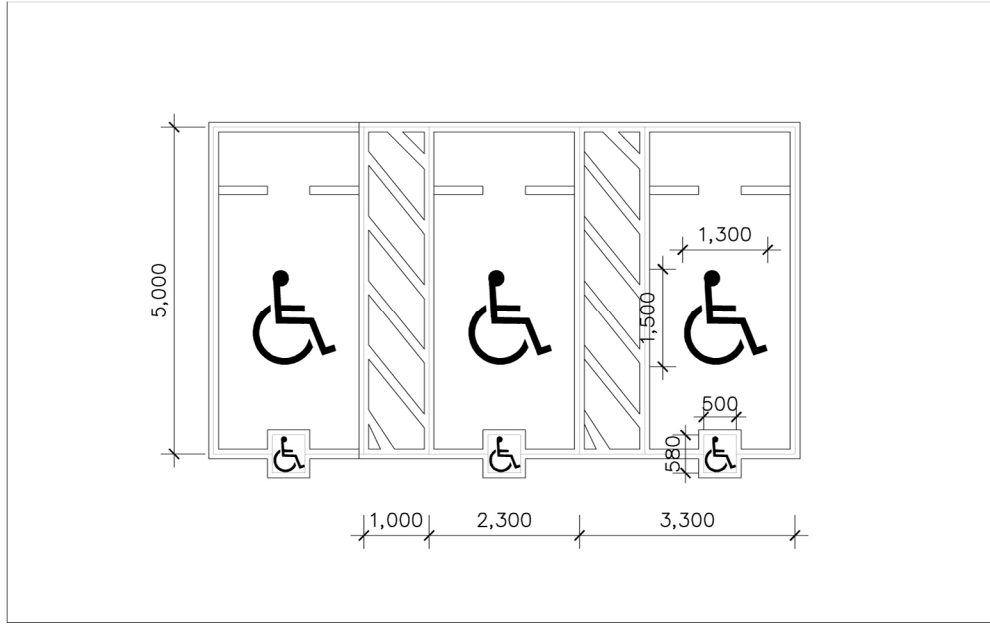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비고 10항, 시행규칙 제4조, 5조 참조
- ②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높이차이는 없어야 한다. 또한, 바닥면 기울기는 1/50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 등이 승차 전과 후에 차로를 거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동선은 보행안전통행로로 보행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림 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 (2) 주차구역 크기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의 경우 가로(폭) 3.3m 이상, 세로(길이) 5m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② 평행주차의 경우 가로(폭) 2.0m 이상, 세로(길이) 6m 이상으로 해야하며 보행통로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 ③ 치수는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 규격으로 하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8cm의 규격으로 한다.



〈그림 2-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 (3) 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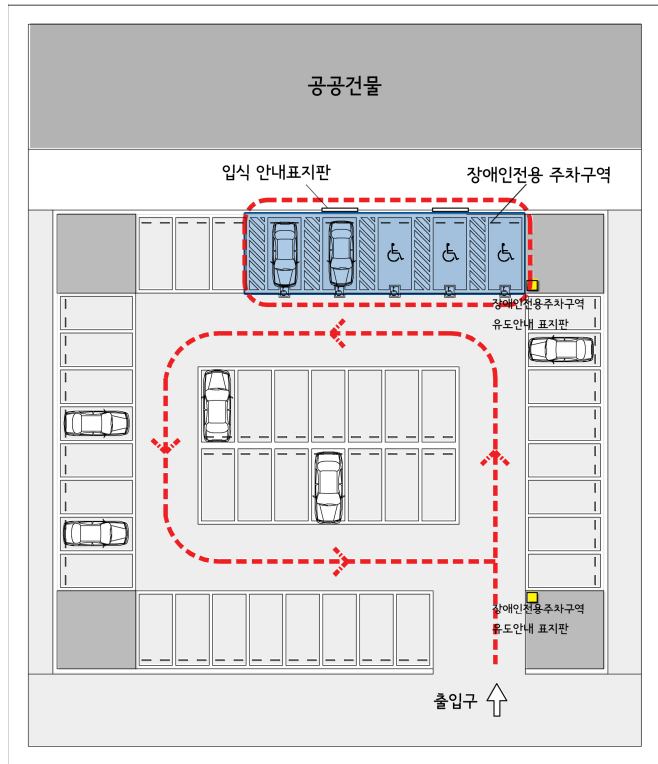
- ① 주차 구역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한다.
- ② 바닥 전용주차장 표시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르는 장애인 안내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이상으로 하여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설치 높이는 표지판 하부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p>장애인전용주차구역</p> <p>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 ○○○○</p>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주차장 입구 부근 및 차량 진입 부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를 유도, 안내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해야한다.



〈그림 2-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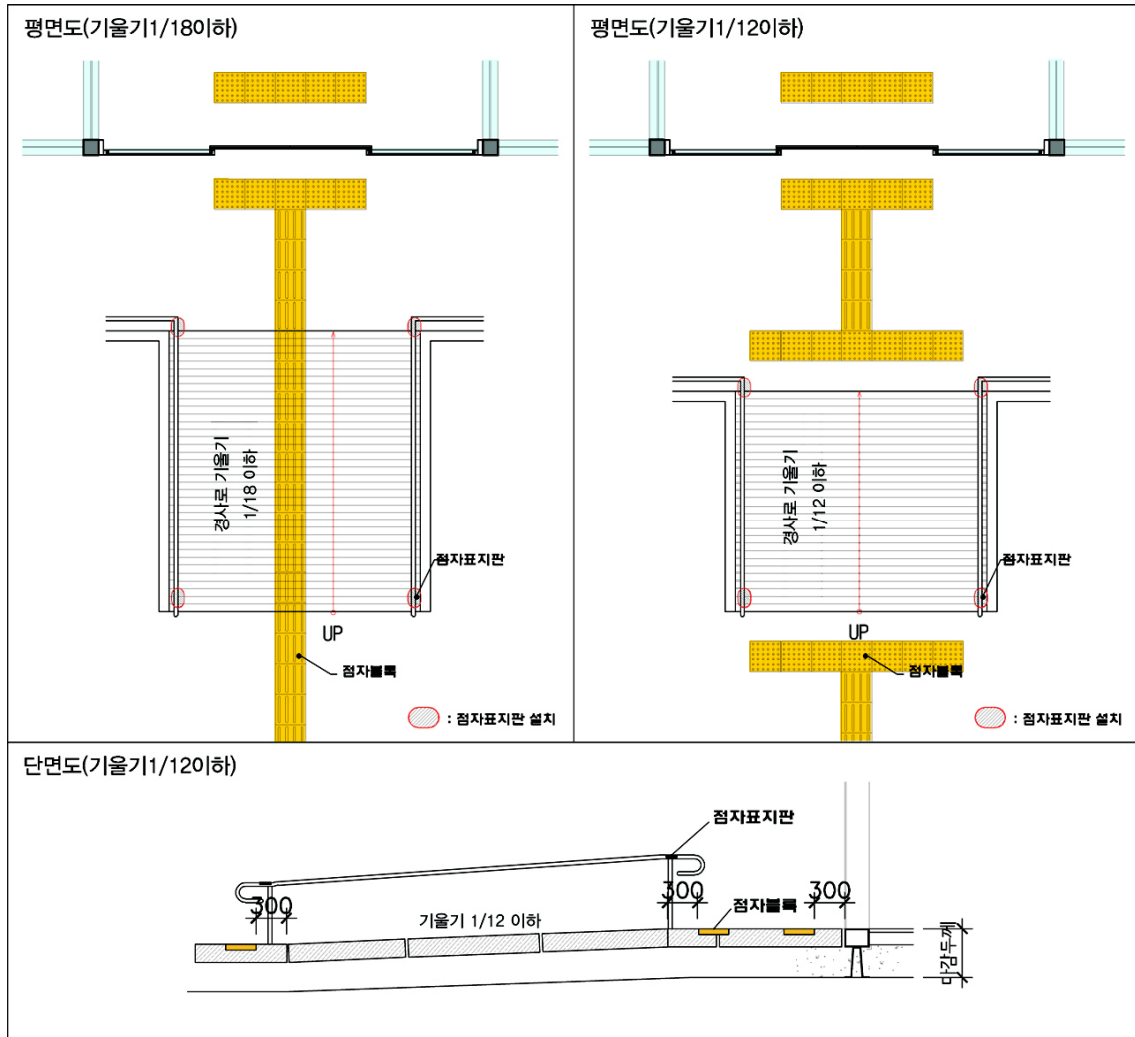
〈그림 2-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 ④ 주출입구에는 2cm 초과 바닥 높이 차이나 턱, 문지방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
- ⑤ 본관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 내에 있는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⑥ 유리문의 경우 사인물(색띠 등)을 부착하여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 (2) 경사로 설치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굴절 및 시작,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참을 설치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한계사항이 있을 시 유효폭은 0.9m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점자문구 예: ‘→ 송파구청 본관 주출입구 방면’, ‘← 좌측 제1별관, 우측 민원봉사실 방면’ 등)
- ⑤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1/18 이하의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단, 기울기가 1/18초과 ~ 1/12이하인 경우 전면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경사로에는 선형블록을 생략한다.
- ⑥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점형블록은 단차전면에 설치한다.)
- ⑦ 추가적으로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기준은 제2장 9호 경사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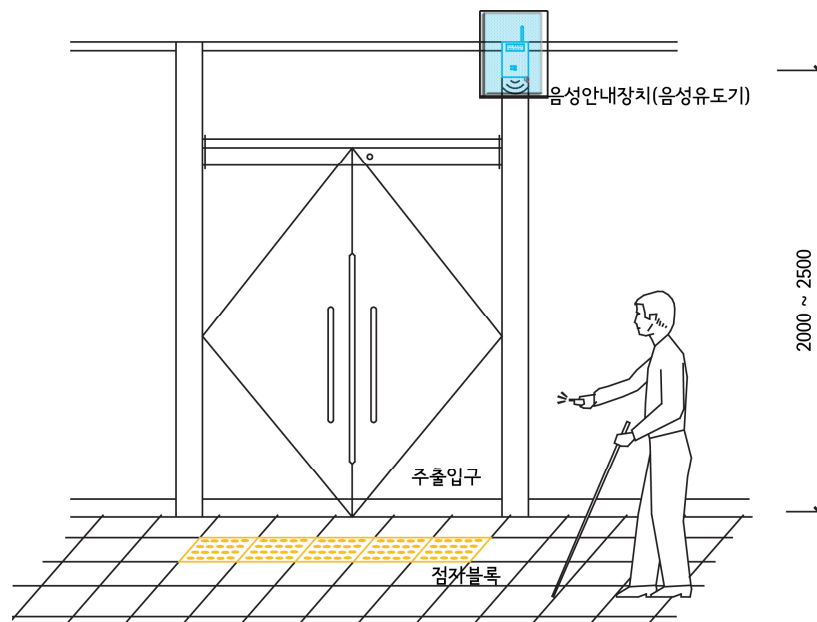


〈그림 2-14〉 주출입구 접근로에 경사로만 있는 경우 평면도, 단면도

### (3)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접근로를 통해 진행하는 시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송신기)을 동작, 공공건물의 주출입구로 진입 유도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한다. 만약 실제로 출입하는 기능으로써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보다 활성화되었다면 부출입구에 설치 가능하다.
- ② 시설관리 상, 상시이용하지 않는 문이나 폐문 등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상시개폐 되는 실제 출입 가능한 문 부근에 설치해야 하며, 점자블록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0~2.5m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안내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해당 시설명(동, 관 포함) 및 1층 로비의 전반적인 안내, 종합안내센터의 위치 등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점자안내 판이 있을 경우 점자안내판 위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예: '정부중앙청사 방문객 안내실입니다. 출입구 진입 후 좌측은 종합안내데스크, 우측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점자안내판을 참고하십시오.' )

- ⑤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에 따라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로 하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⑥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⑦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⑧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⑨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그림 2-15〉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예시

#### (4) 점자안내판(촉지식 안내판, 촉지안내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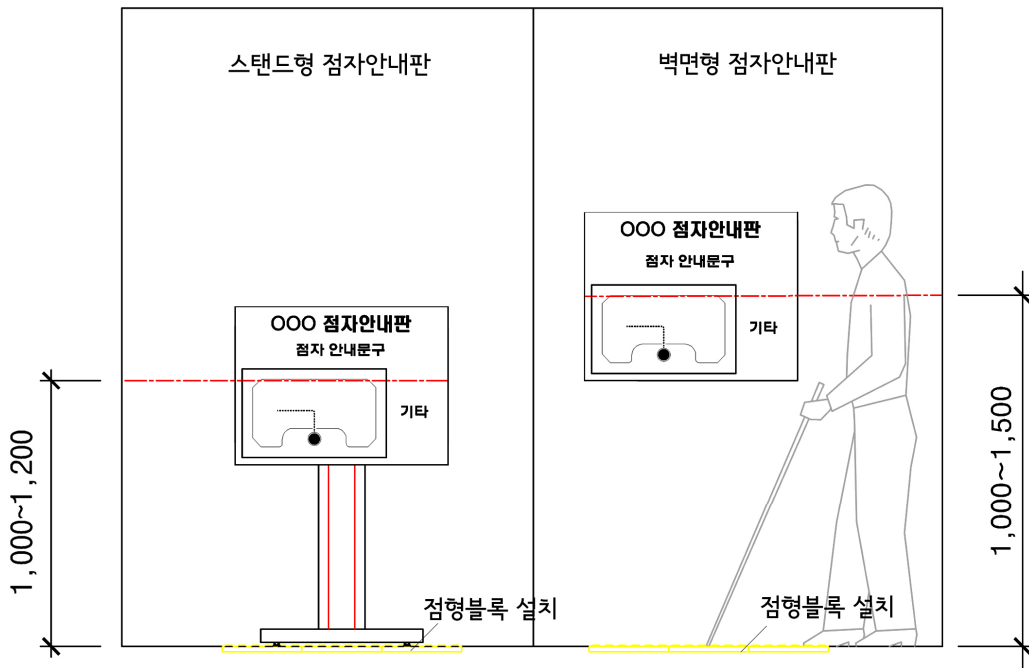


〈그림 2-16〉 점자안내판 예시

- ①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고자하는 목적지 및 전반적인 공원의 구성 파악을 목적으로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단, 출입하는 기능이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면 부출입구에 설치해도 무관하다.



- ②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이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 3장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⑤ 점자안내판에 시각장애이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건물 등의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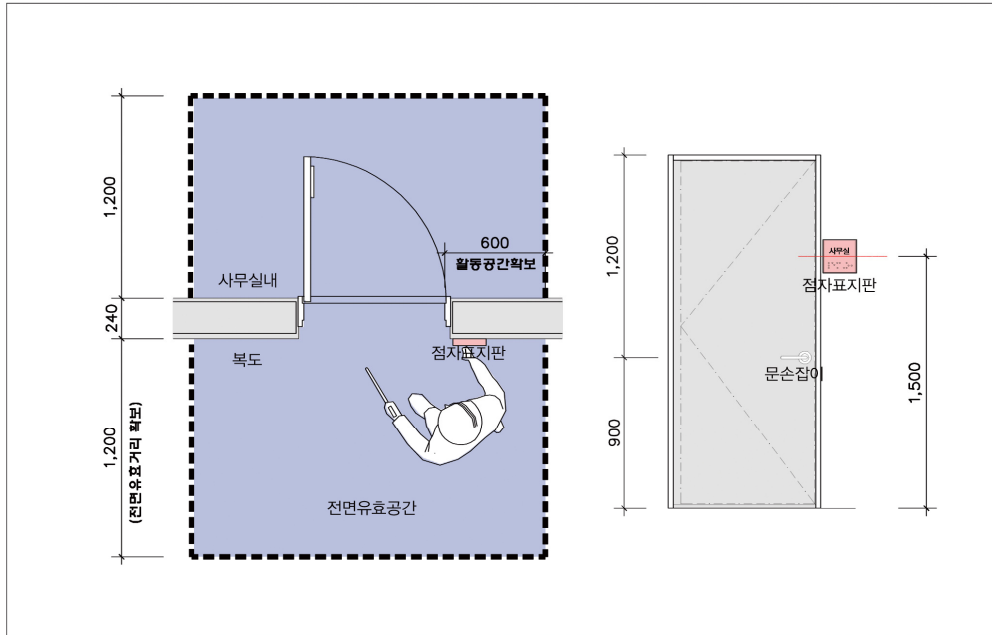
〈그림 2-17〉 스탠드형, 벽면형 점자안내판 예시

### (5) 점자블록 설치

- ①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의 설치는 주출입문 전면, 단차 상하부, 점자안내판 전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접근로에 유도 설치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주출입구, 점자안내판까지 연속 설치되어야한다. 다만 주출입구 공간이 협소하여 점자블록 기본 설계법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실내와 실외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문 폭만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시설의 주출입문 및 실내·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방풍실이 있을 경우 깊이가 3m 미만의 경우 점형블록의 설치는 생략가능하나 3m 이상인 경우 방풍실내에도 점형블록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한다.
- ③ 주출입구 부근에 단차가 있을 경우 단차의 시작과 끝부분 전면 0.3m에 단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단차의 폭이 10m 이상 실제 보행동선과 상관없이 넓은 경우에는 출입문 폭의 1.5배 이상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4. 실내 출입구(문)



〈그림 2-20〉 실내 출입문 예시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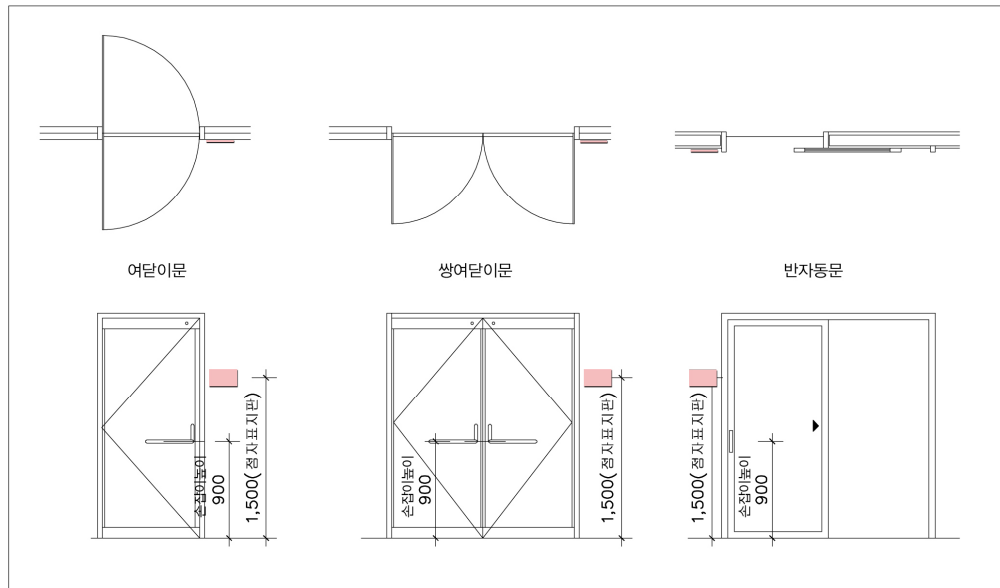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 출입구(문)는 모든 사람들이 각 실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출입 가능해야 하며 사무실명에 대한 정보와 출입문의 위치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실내 출입구(문)는 쾌적한 유효폭 및 구조, 문의 형태 및 손잡이, 문턱제거, 용이한 문의 개폐,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사무실명패 및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유효폭 및 구조, 문의 형태 및 손잡이, 용이한 문의 개폐, 문턱제거,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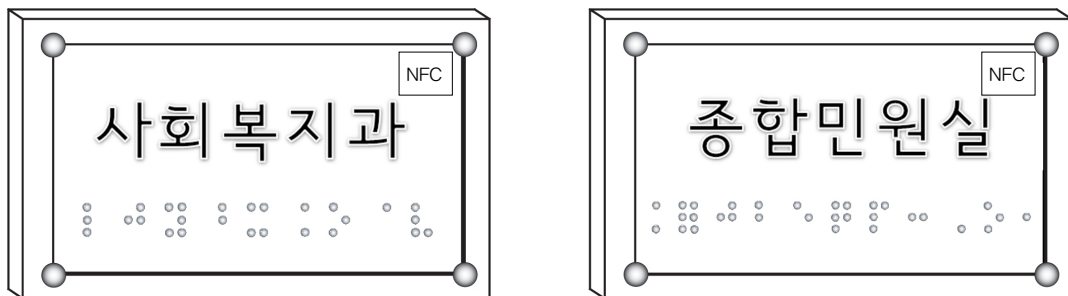
- ① 각 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출입문이 복도 및 통로로 돌출,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문의 개폐방식은 회전문을 제외한 여닫이, 미닫이, 자동문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민원실 등의 출입문은 투시창을 설치하거나 강화유리문로 하여 문의 개폐나 출입시 왕래하는 사람들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문 손잡이 형태는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레버형(lever type)으로 하고, 설치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높이가 되도록 하여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문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유리문의 경우 사인물(색띠 등)을 부착하여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2-21〉 실내출입문 평면도, 입면도

## (2) 명패 및 점자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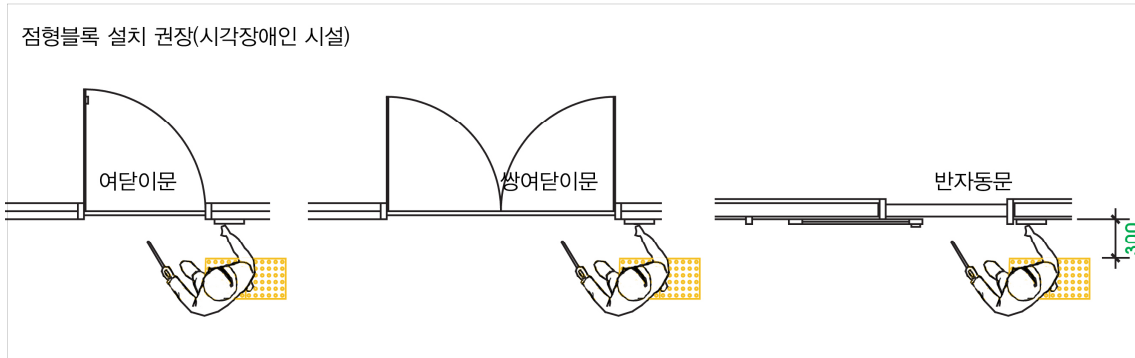
- 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계단실, 화장실 등의 문 손잡이쪽 벽면에 명패와 같은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실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문 손잡이쪽 벽면,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 높이가 1.5m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자의 실제 키를 고려하여 1.2~1.5m 내외로 설치높이를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적용의 완화를 따르도록 함.)
- ③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이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사무실 등의 명패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을 사용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
- ⑥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계단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문)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2. 점자표지판을 참고한다.



〈그림 2-22〉 사무실 점자표지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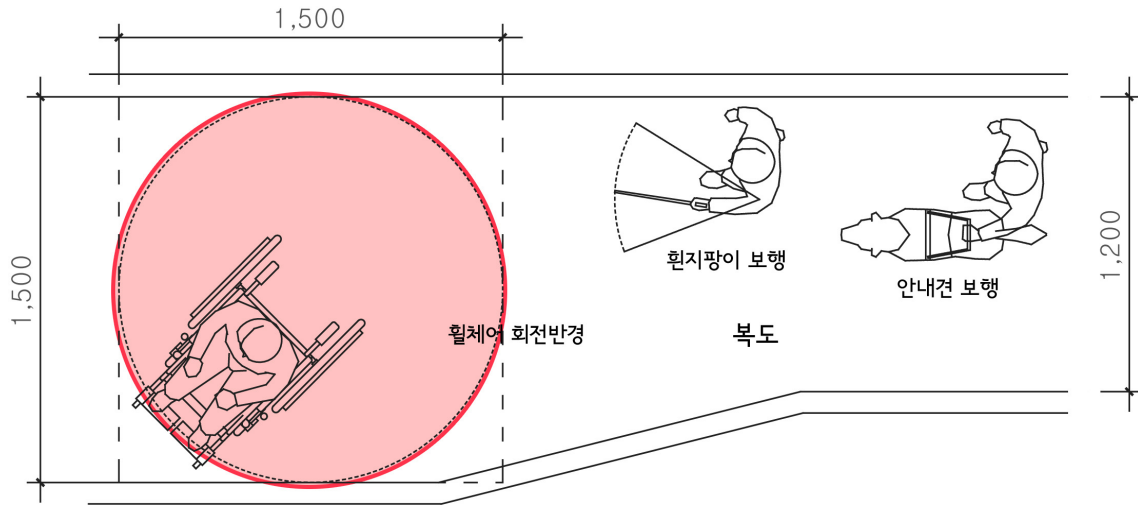
### (3) 점형블록(권장)

- ① 시각장애인 복지관, 단체 등 시각장애인 이용이 빈번한 건물의 경우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출입구 점자표지판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위치 확인 및 출입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점형블록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에서 0.3m 이격하여 2장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2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림 2-23〉 실내출입문 점형블록 설치위치(권장)

## 5. 복도 및 통로



〈그림 2-24〉 복도 및 통로 예시

### 1) 설계 원칙

복도 및 통로는 로비, 사무실과 사무실, 내부시설 간을 연결하는 실내 공간이므로 보행시에 장애물이 없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복도 및 통로는 통행에 쾌적한 바닥마감, 유효폭, 높이차이 및 장애물 제거,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시설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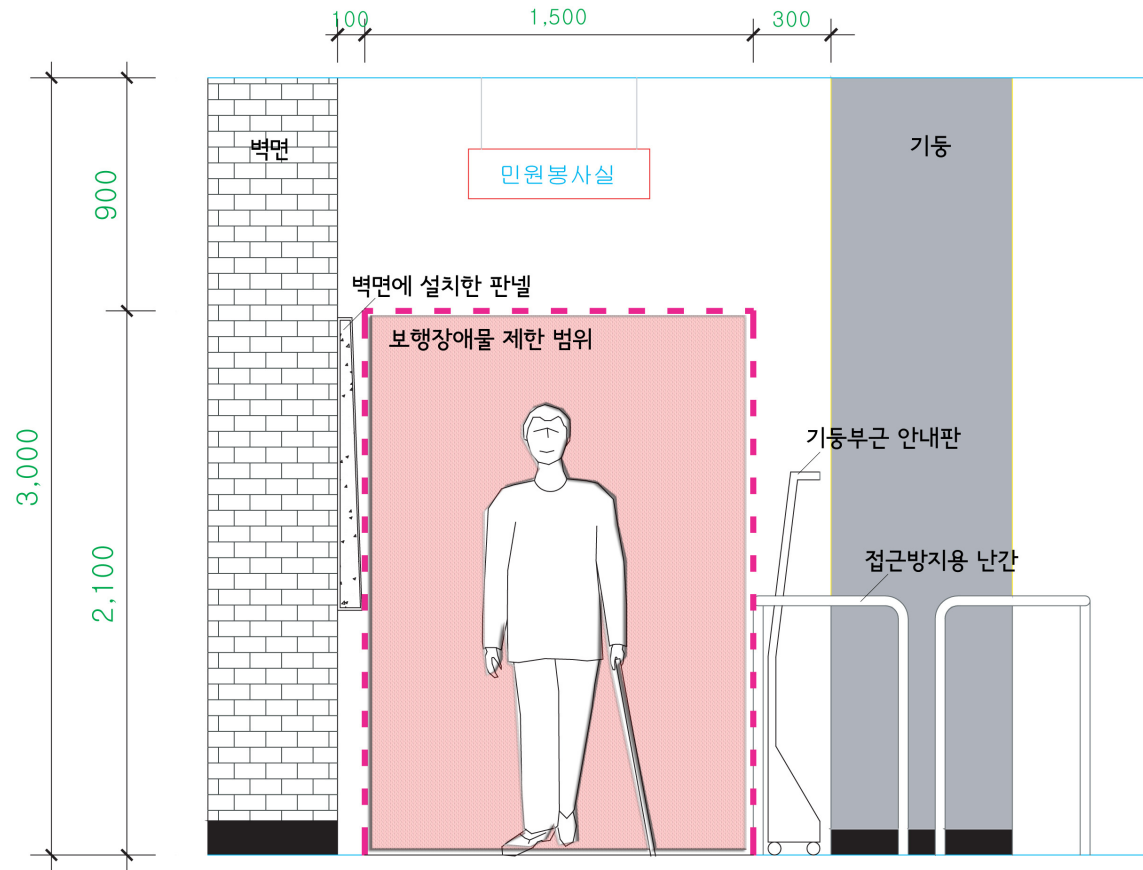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바닥마감, 유효폭 및 구조, 높이차이 제거 등

- ①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으로 해야한다.
- ②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 1.5m의 회전반경을 확보해야한다.
- ③ 실내 복도에는 턱이나 바닥면 단차를 제거해야한다. 별관이나 기타 인근 건물과의 연결로 인해 부득이 단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한다.(기타 세부기준은 제2장 9호 경사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④ 장애인전용시설인 경우, 복도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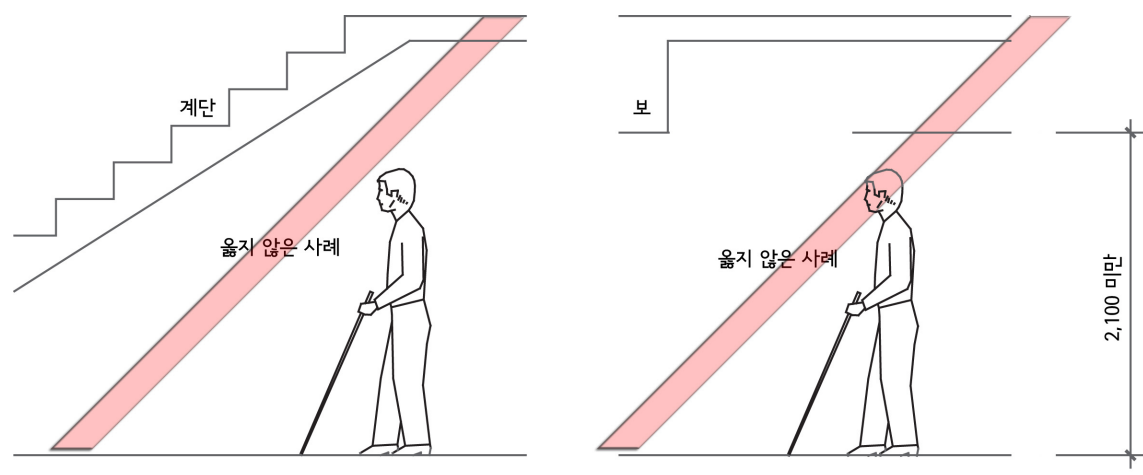
#### (2) 장애물 제거

- ①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을 줄일 수 있는 벽면 부착물, 장식품, 소화전, 화분, 배너 등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상 장애물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해야한다.
- ② 복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2.1m 내외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폭은 10cm 이하로 해야한다. 또한, 독립된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 이하로 해야한다.
- ③ 복도 및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유효높이 2.1m 내외에 장애물이 있는 구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해야한다.

- ④ 복도의 모서리는 모깍기를 하거나 둥글게 마감, 또는 부수적으로 충격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⑤ 의자,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휴게시설은 복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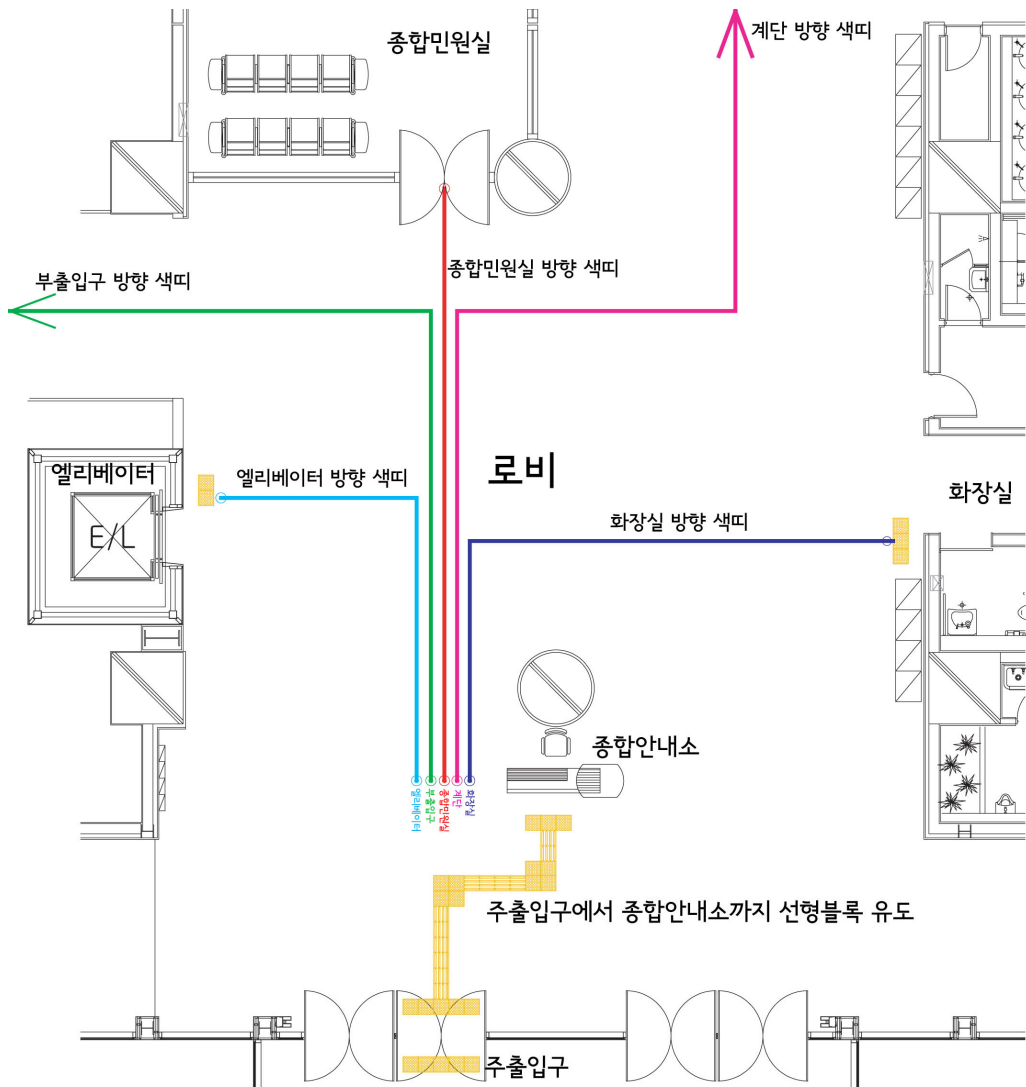
〈그림 2-25〉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1



〈그림 2-26〉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2

### (3) 시각장애인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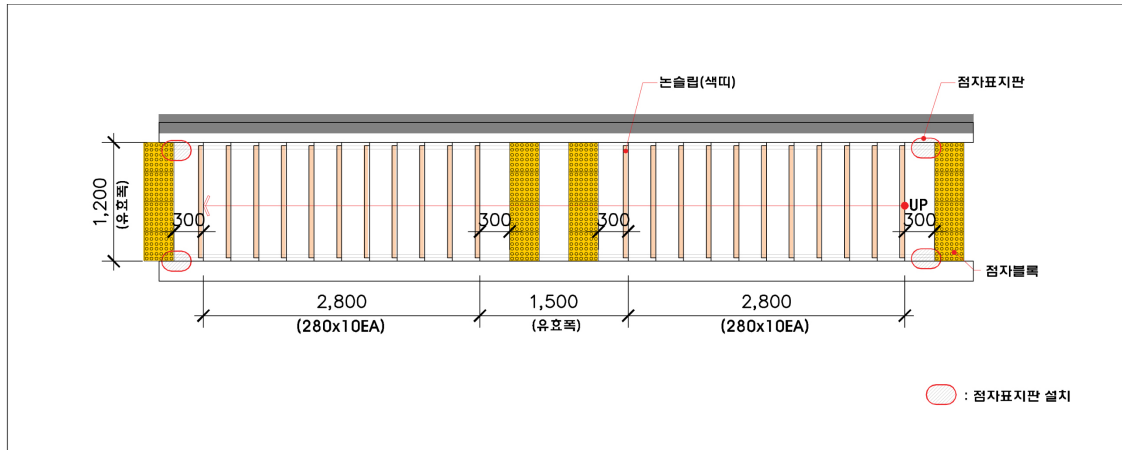
- ① 로비층 주출입구에서 안내데스크까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요 내부시설로 이르는 주동선은 바닥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상 등의 차이로 유도할 수 있다.
- ② 해당 시설 내부가 홀형(hall access type)으로 넓어 시각장애인이 방향감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 건물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보행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선형블록의 설치 또는 바닥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상을 달리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등 내부시설로 유도할 수 있다.
- ③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인근 복도 벽면에는 층별정보, 건물배치정보 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각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를 병기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도 크게하고 색상도 기본벽면 색과 확연히 다르게 하여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복도 분기점 벽면에 실내 공간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안내 문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으로 크게 표기하도록 한다.



〈그림 2-27〉 시각장애인 유도 예시



## 6. 계단



〈그림 2-28〉 계단 예시

### 1) 설계 원칙

계단은 일반적으로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시설로 수직 이동시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며 층별 정보도 제공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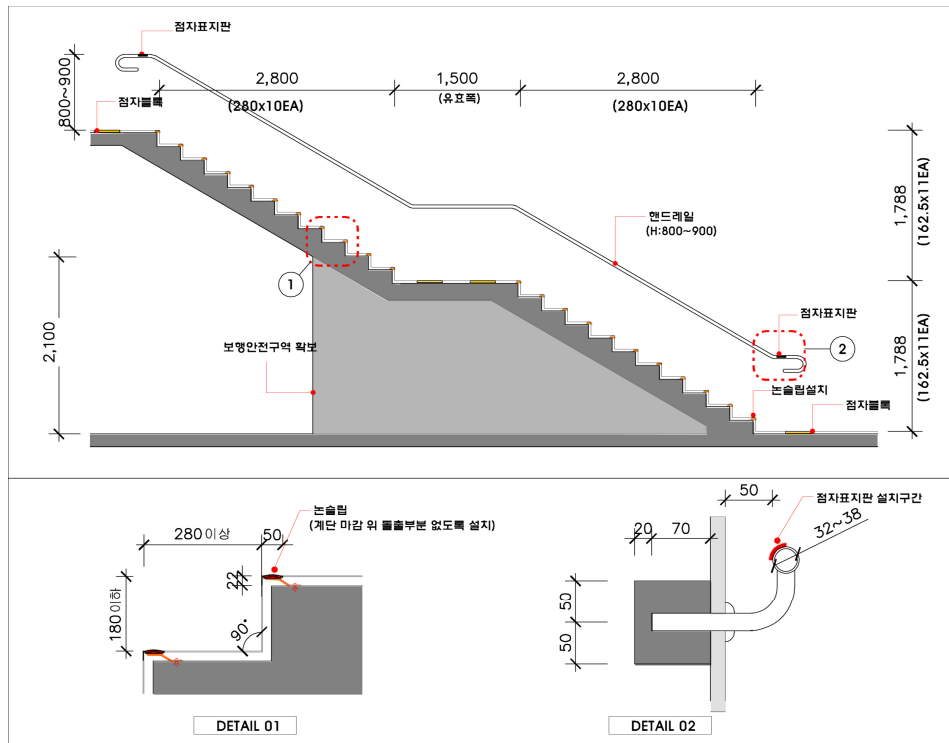
균일한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편 설치, 안정성 확보, 손잡이의 설치, 계단 식별의 용이함,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균일하고 합리적인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편의 설치 안정성 확보 등

- ①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해야한다. 사선, 원형의 형태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실족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한다.
- ②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이때 수평참에는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③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최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한다.(옥외 계단의 경우 0.9m 이상으로 가능하다.)
- ④ 철편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해야한다.(가급적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계단을 균일하게 한다.)
- ⑤ 계단코는 3cm 이하로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⑥ 높이가 1m 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난간하부에 계단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계단참 부분에는 사선, 원형 계단의 설치를 금한다.
- ⑧ 계단 하부에는 보호난간,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 ①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한다. 단, 『소방법』에 의거 방화도어나 셔터, 소화전의 설치 위치에는 부분적으로 끊어 설치 할 수 있다.
- ② 손잡이의 형태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3.8cm으로 한다.
- ③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점자표지판은 계단의 시·종점 수평손잡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만약 현장 구조상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가까운 손잡이 부근에 설치하도록 한다. 계단참부분과 굴절지점에는 설치 생략가능하다.
- ⑤ 점자표지판의 문구는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목적지층의 층수, 실정보 등을 표기한다.(예 : “→ 2층 사회복지과, 건축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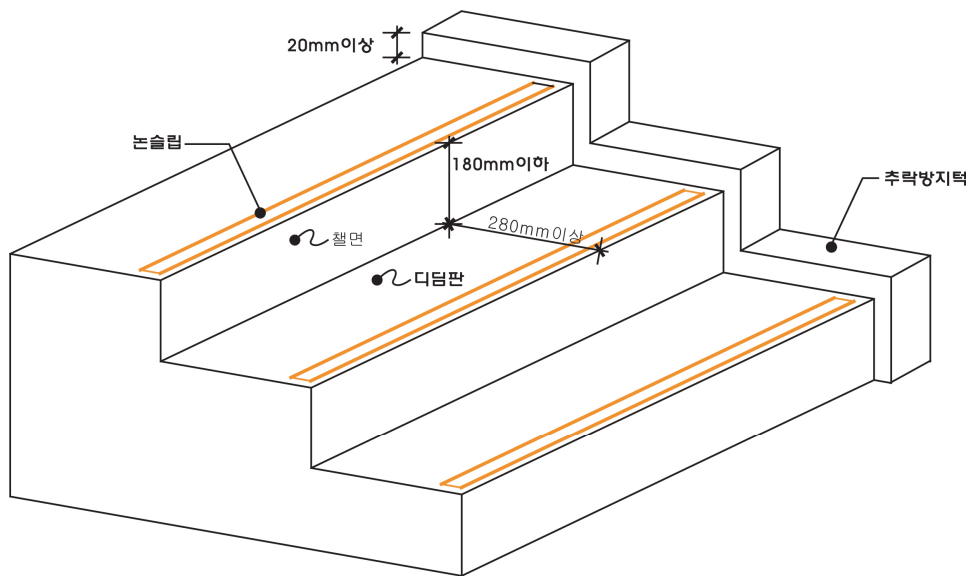
〈그림 2-29〉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그림 2-30〉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 (3) 계단의 단차 확인

- ① 계단의 단차 확인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계단 보행시에 안전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단차의 구별이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② 디딤판은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철편과 구별이 뚜렷해야 하며, 특히 계단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재질, 색상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단 및 참의 시작과 끝의 디딤판은 다른 계단 디딤판과 색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계단실 및 계단의 조명으로 인한 음영이 철편과 디딤판의 구별을 용이하도록 하며 150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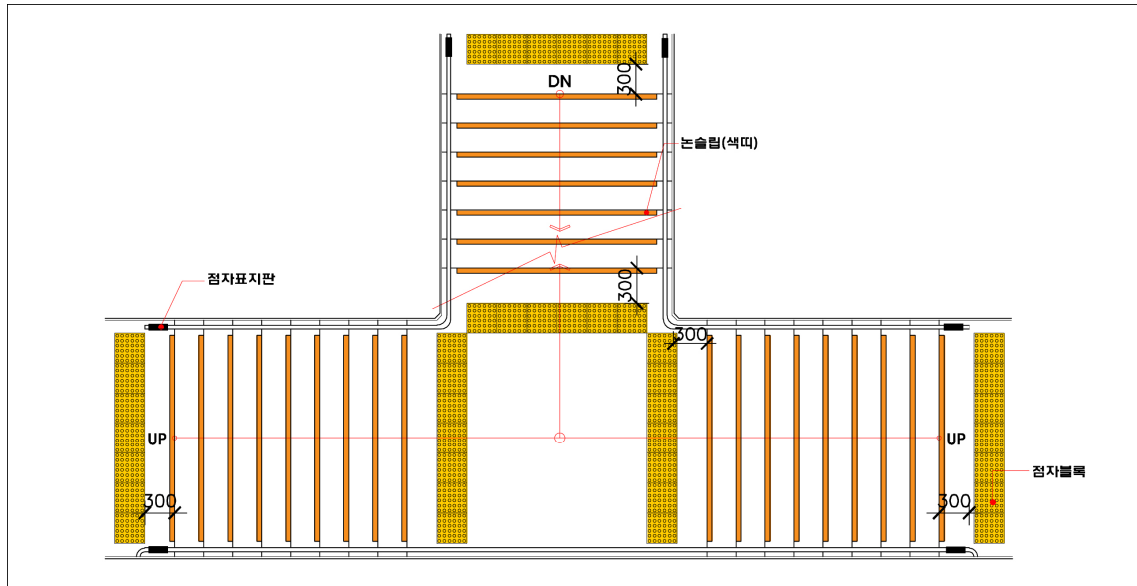
〈그림 2-31〉 계단의 식별



〈그림 2-32〉 계단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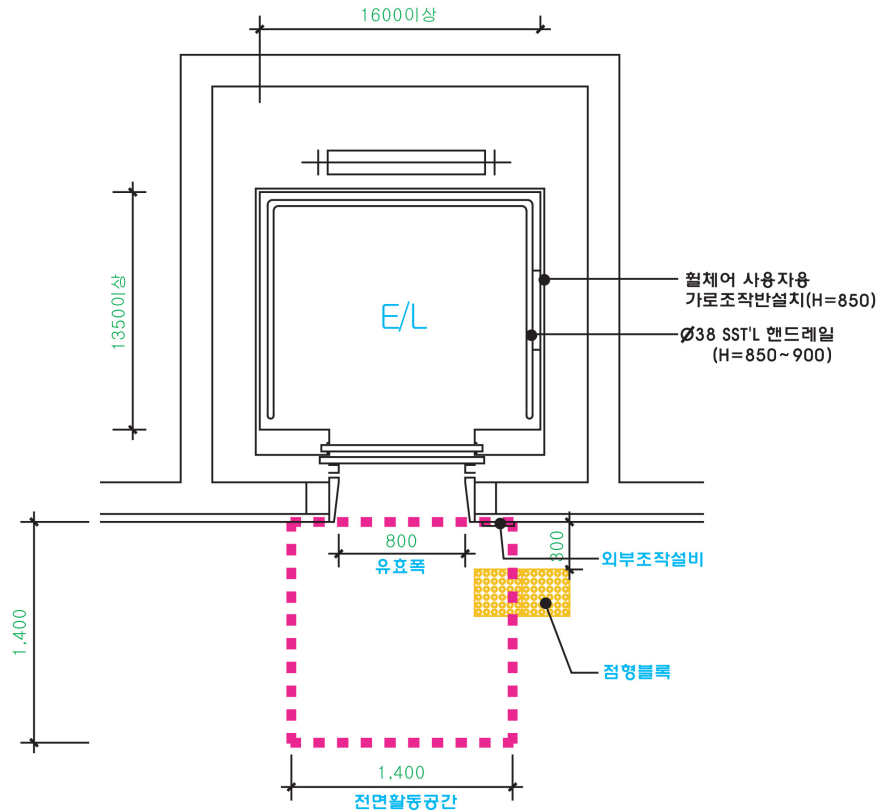
### (4) 점형블록 설치

- ① 계단의 시작과 끝, 계단참 끝부분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② 계단 전면에 차수판이 있는 등 현장 조건상 0.3m 전면 설치가 불가한 경우 가장 인접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단, 이격 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 ③ 계단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지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림 2-33〉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 7. 승강기(엘리베이터)



〈그림 2-34〉 승강기 예시

### 1) 설계 원칙

승강기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수직이동 수단으로 휠체어사용자, 노약자, 유모차 등 계단을 통한 층별 이동이 불가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승강기는 접근의 용이성,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전성,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의 설치,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기타 안내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정성 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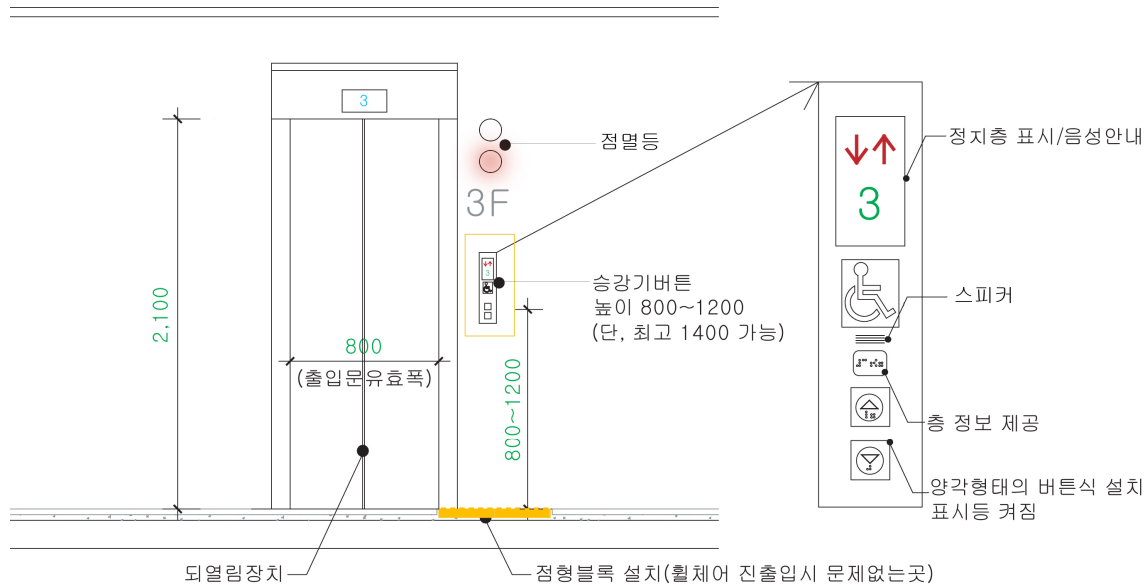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 및 로비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되거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한다.
- ②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최소 폭 1.6m, 깊이 1.35m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측면 조작반, 후면거울을 설치하는 등 대안적으로 승강기를 조작가능하게 해야한다.
- ③ 승강기 외부인 승강장은 누구나 승강기를 승하차할 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닥면적 및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 ④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에 끼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 열림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출입문 유효 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턱의

틈은 3cm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 ⑤ 승강기 내부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측면에 직경 3.2cm~3.8cm의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로 하고 측면과는 5cm의 간격이 되게 하며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2)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 ① 건물의 각층 승강장 부근에는 승강기 조작반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한다.
- ②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과 비상호출버튼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일반조작반 뿐만 아니라 휠체어사용자용 가로 조작반도 해당한다.
- ③ 특히 승강장 조작반 부근에 현재 층 정보는 물론 해당건물의 층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층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버튼의 점자 문구는 KS 규격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에 준하도록 한다. 단, 인천공항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표기 가능하다.
- ⑤ 비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층이 홀수층, 짝수층 또는 고층 및 저층운행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호출버튼 인근에 운행층 정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⑥ 장애인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일반 승강기 버튼 앞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저시력인 등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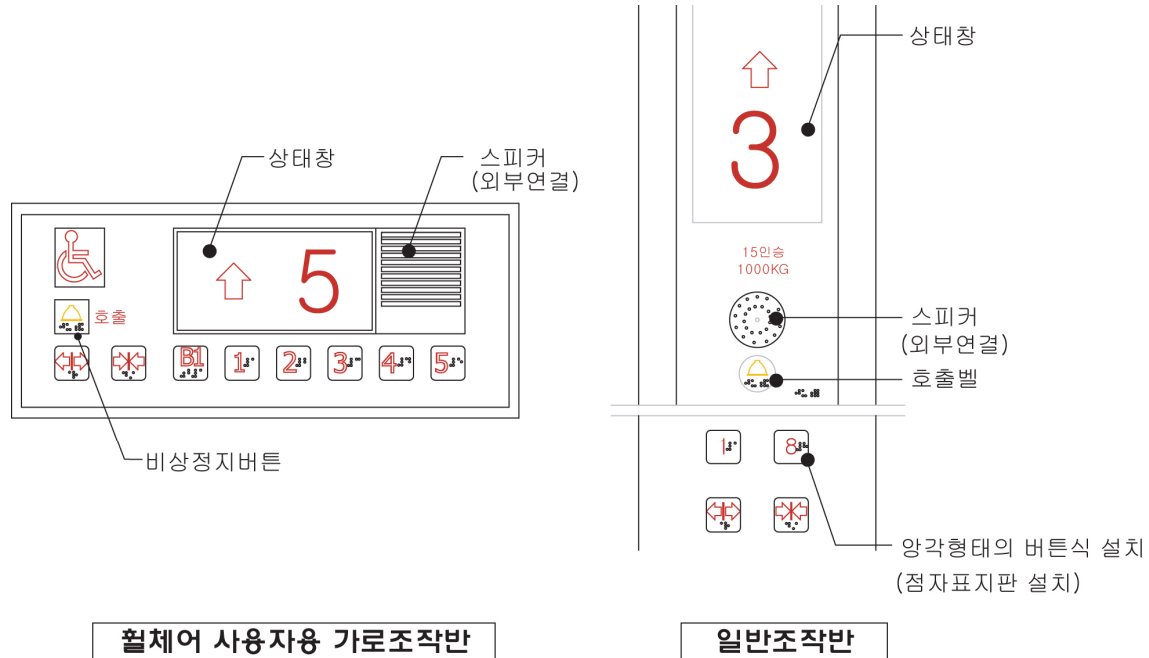


〈그림 2-35〉 엘리베이터 구조, 조작반

**(3)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 ① 승강기 승강장 호출 버튼(외부 상·하버튼) 설치위치는 우측보행을 고려하여 가급적 승강장 출입문 우측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로 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모든 승강기 버튼은 양각 버튼식으로 설치하고 버튼 동작시 점멸등이 켜지게 하여 동작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승강기 내부의 모든 조작 버튼은 취소가 가능한 토글 방식이어야 하며 누르면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 하고 취소할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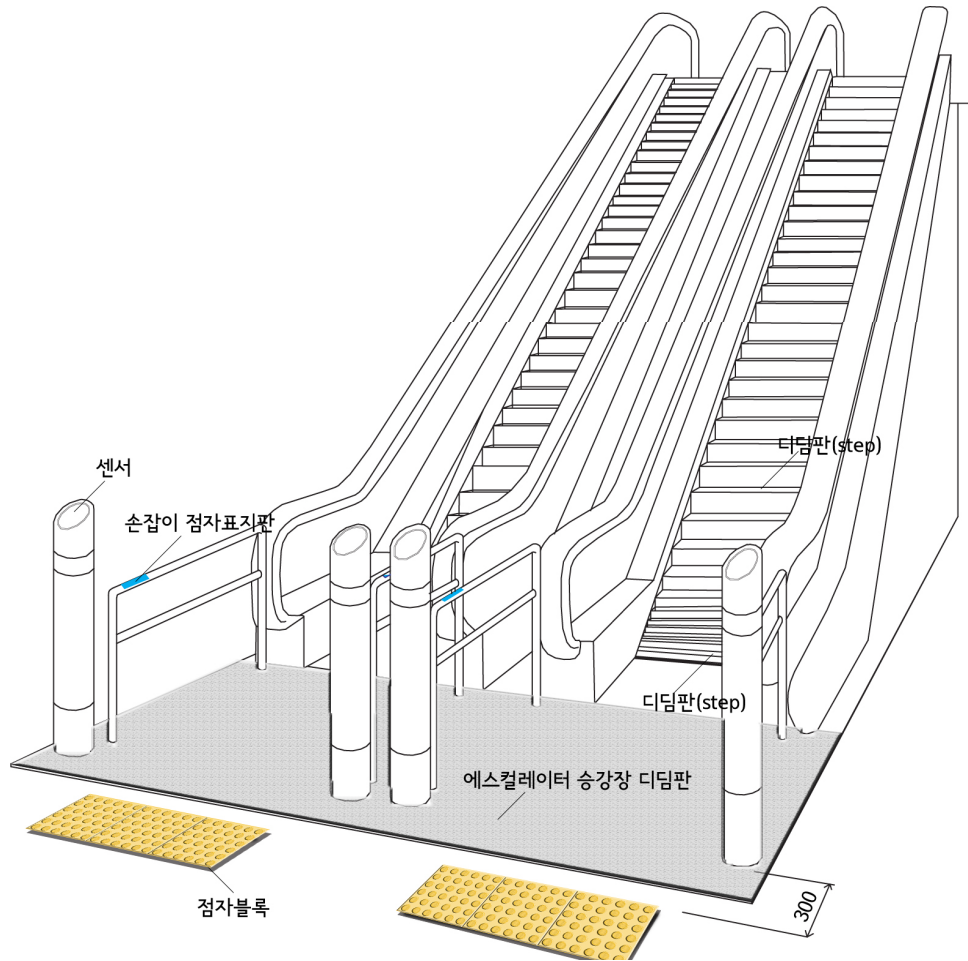


〈그림 2-36〉 엘리베이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예시

#### (4) 안내설비의 설치

- ① 각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상황 및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도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실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도착음향이 외부 승강장에서 들려야 한다.)
- ②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설치되고 음성안내를 제공해야한다.(문의 개폐, 오르내림, 층 정보 등이 포함된다.)
- ③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예 ‘들어오신 뒷면(후면)에서 문이 열립니다.’ )
- ④ 엘리베이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승강장, 엘리베이터내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⑥ 승강장 측벽이나 바닥에 층 표시를 크게 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에게 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관리 승강기 설치시 최소 1대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하고 군관리에서 제외하여 전층 운행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⑧ 승강기 내부 층별안내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다.

## 8. 에스컬레이터



〈그림 2-37〉 에스컬레이터 예시

### 1) 설계 원칙

에스컬레이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사람을 층간에서 연속적으로 승강시키는 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단과 마찬가지로 층별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에스컬레이터는 쾌적한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확보, 운행속도 준수, 안전장치 설치,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쾌적한 승강장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합리적인 운행 속도, 비상정지버튼, 역진 입방지 센서, 진입방지봉 설치 등 안전장치 확보,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등

- ①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부근은 혼잡한 경우 충돌사고 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진입부는 최소 0.6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내외가 되어야 한다.
- ③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 중간부분에 위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해야



하고 역진입시 경고음향이 출력되는 역진입방지 센서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방지봉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마감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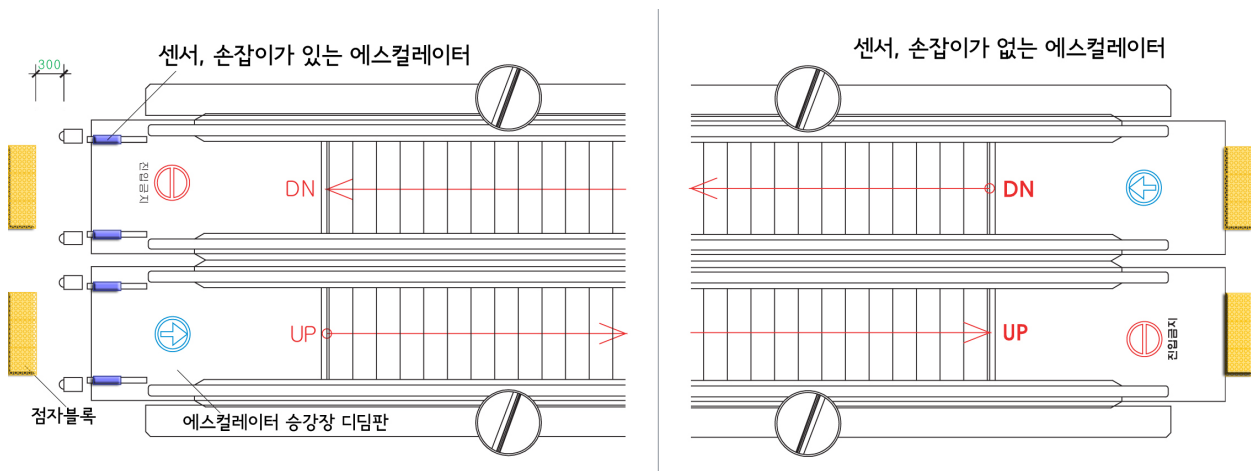
- ④ 디딤판의 가장자리와 끝부분(계단코부근)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황색으로 구분해야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높이 1.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 ② 손잡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해야한다.
- ③ 시작과 끝부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높이, 길이 1m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문구는 화살표방향, 층정보, 목적지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특히 역진입 방향 손잡이에는 진입방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점자를 표기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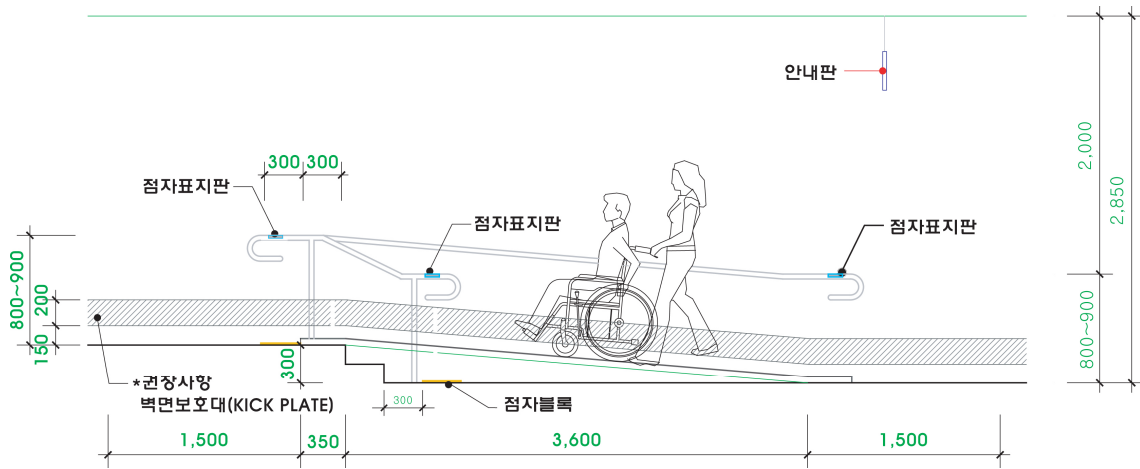
### (3) 점형블록

- ①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은 계단과 마찬가지로 진입 유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이때 에스컬레이터는 시설 특성상 시·종점 부근에 승강장디딤판이 존재하므로 움직이는 디딤판 전면 0.3m에 설치가 불가하다. 때문에 승강장디딤판에 바로 인접해 설치하도록 한다.
- ③ 단, 센서가 있을 경우 센서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2-38〉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 9. 경사로



〈그림 2-39〉 경사로 예시

### 1) 설계 원칙

실내 복도 내에 설치된 경사로는 높이차를 해소하는 시설로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경사로는 쾌적한 통과 유효폭과 공간 확보 경사로 참 설치, 완만한 기울기, 손잡이 설치, 점자 표지판 설치, 올바른 바닥마감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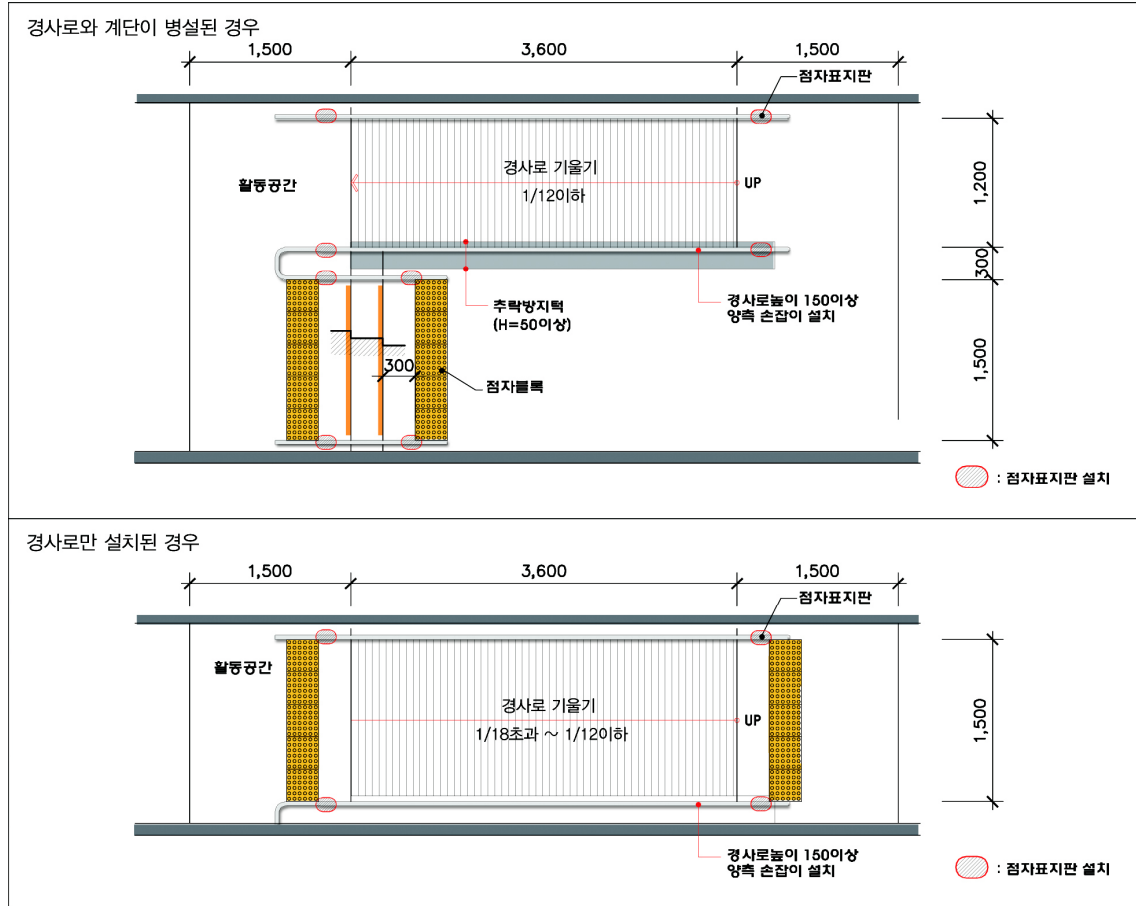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쾌적한 통과 유효폭과 공간 확보, 경사로 참 설치, 완만한 기울기 등

- ① 경사로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굴절 및 시작과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은 한계사항이 있을 시, 0.9m 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하며 공간은 1.5m×1.5m 이상으로 한다.
- ③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0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② 손잡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인 원형을 원칙으로 하며 힘을 줄 수 있도록 직경을 3.2~3.8cm로 한다.
- ③ 손잡이의 높이는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2중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하여 신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쪽 수평손잡이에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점자문구 예: ‘→ 엘리베이터 타는 곳’ , ‘← 종합민원봉사실 방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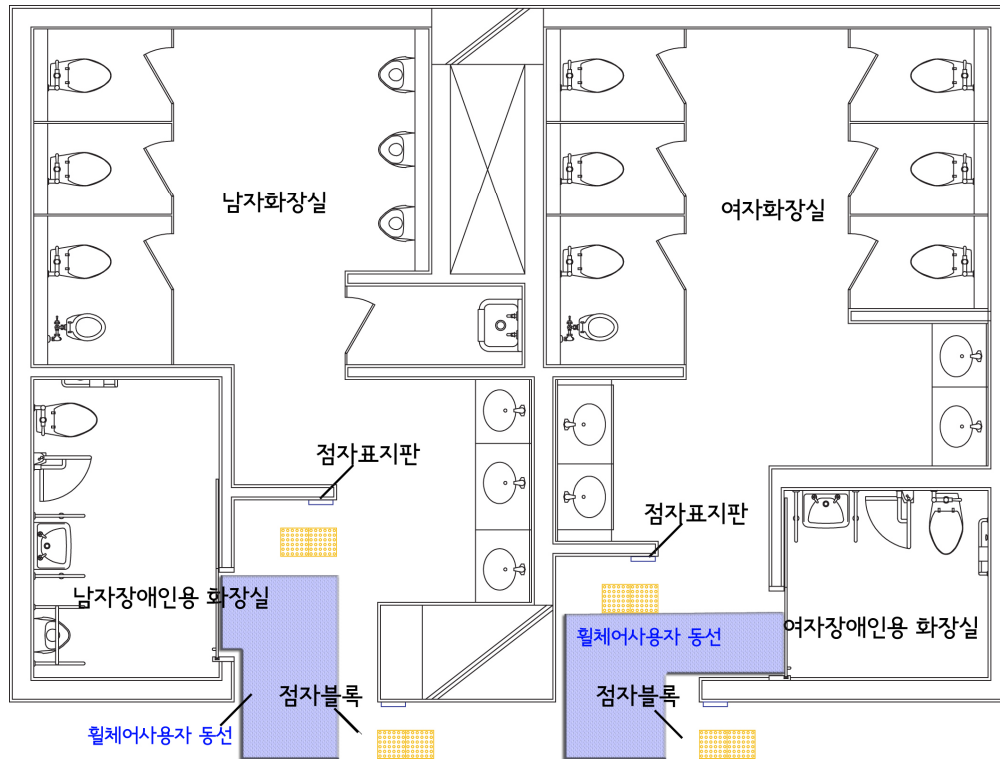


〈그림 2-40〉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 (3) 바닥마감

- ① 경사가 있는 곳은 미끄러질 수 있는 요인이 크므로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마감해야 한다.
- ② 장애특성을 고려했을 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하고 경사로 전면 또는 경사로 바닥재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경사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계단이 같이 설치된 경우 계단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경사로만 설치되어있는 경우 1/18초과 ~ 1/12이하의 경사로 전면에 점형블록을 폭만큼 설치하도록 한다.
- ⑤ 경사로 양측면에는 높이 5cm ~ 10cm의 휠체어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고 벽면에 충돌 완화를 위한 충격 완화 매트를 설치할 수 있다.

## 10. 화장실



〈그림 2-41〉 화장실 예시

### 1) 설계 원칙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인지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진입에서부터 화장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자 표지판, 점형블록의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화장실은 접근성 확보, 장애인용화장실과 구분 설치,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미끄럽지 않는 바닥재질 및 마감, 편리한 화장실 시설,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시각장애인의 일반화장실 이용,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등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복도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공간 구성이 복잡하거나 손잡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사용이 불편하고 일반화장실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일반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오히려 점형블록을 장애인화장실 전면에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 ③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구(문)의 진입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화장실내는 세면대, 소면기,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한다.
- ④ 화장실내 바닥면의 높이차를 제거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한다.
- ⑤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 13호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 ⑥ 스윙도어의 경우 하부구조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접근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⑦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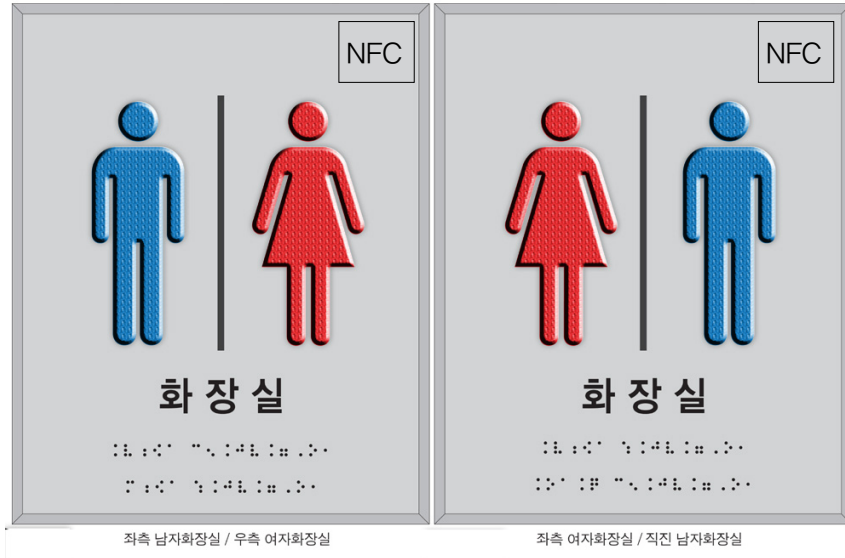
## (2) 편리한 화장실 시설

- ①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싱글레버식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수도꼭지의 왼쪽 방향은 온수, 오른쪽 방향은 냉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냉수를 점자로 표기하여 구분해야한다.
- ② 대변기 출입문의 경우 내부에서 잠금장치 조작이 용이해야 하며, ‘사용중’ 표시등이나 색의 변화로 대변기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변기 이용시 필요한 휴지걸이, 대변기 세정장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한다. 또한, 대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데 조작반에 점자가 표기되거나 동작버튼을 양각화하여 사용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④ 화장실내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자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바닥재질을 달리하여 소변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 (3) 점자표지판 설치

- ① 화장실 점자표지판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한다. 이때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② 픽토그램은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등 색상을 구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구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화장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상세한 설치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의 수평중심선이 오도록 하며 화장실 출입문이 있다면 문손잡이가 있는 벽면으로 한다. 단, 문이 없는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 ④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 ⑤ 일반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경우 점자표지판 문구는 ‘남자(장애인) 화장실’ 또는 ‘여자(장애인) 화장실’ 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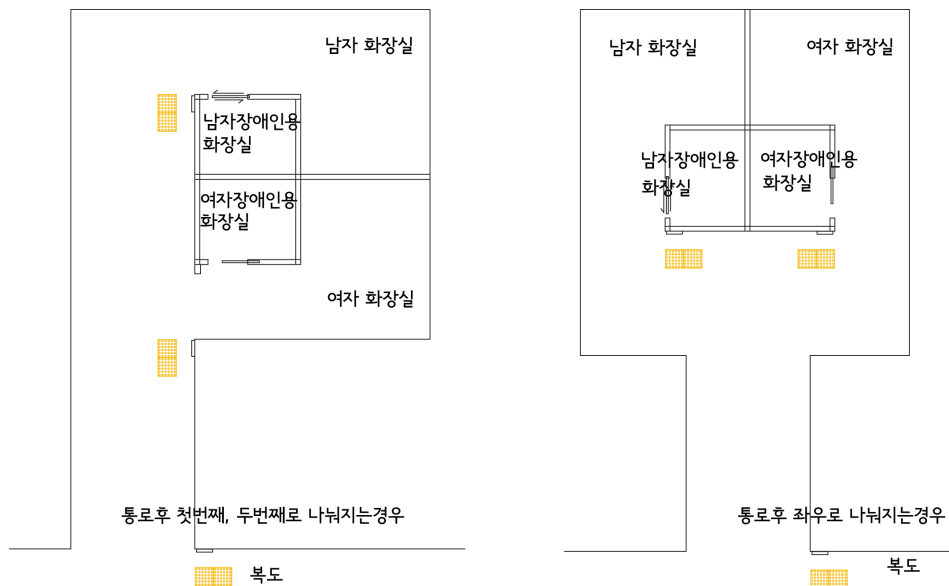
- ⑥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세면대 이용을 위해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기를 해야한다. 레버가 없이 센서로 작동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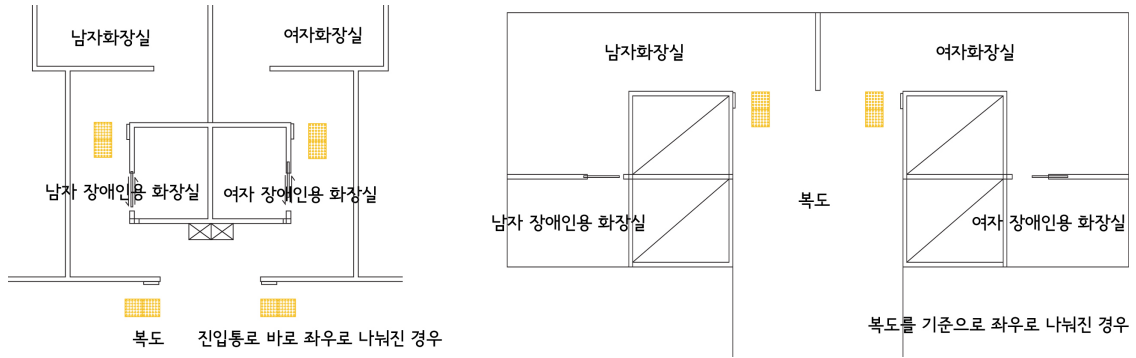
〈그림 2-42〉 화장실 점자표지판

**(4) 점형블록 설치**

- ① 일반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벽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남·녀 구별하여 설치하여 점자표지판의 위치 확인 및 진입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② 점형블록은 2장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전면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2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점형블록의 설치위치는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로 한다.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2-43〉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그림 2-44〉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 11. 민원실 내 편의시설



〈그림 2-45〉 민원실 내 편의시설 사례

### 1) 설계 원칙

관공서 내부에 배치된 모든 민원실은 관공서에서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이 민원처리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민원 사무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접근성 확보, 합리적인 민원실 공간 계획, 쾌적한 접수대(접수창구) 및 작업대(필경대 등) 마련, 의무 비치용품 및 상시 인적서비스의 구비, 기타 편의시설 등이 구비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합리적인 민원실 공간 계획, 쾌적한 접수대 및 작업대 마련 등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지성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민원실을 배치해야한다. 주로 본관 로비층(종합안내소가 마련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인근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건축 대지면적의 특성 및 건물배치 조건상 부득이 별관 또는 다른 층에 민원실이 배치된 경우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표지의 확보가 필요하다.(실외 접근로부터 안내 및 유도 표지가 필요하다.)
- ② 민원실 내 공간은 민원창구 및 접수대, 작업대, 대기 공간을 구분하여 민원 처리 동선을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 특히 장애인 전용 접수대는 따로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장애인 안내창구는 민원실 출입구 부근에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도와야 한다.
- ③ 접수대(접수창구)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음성 및 문자 호출장치가 함께 설치되어야 하고, 작업대(필경대 등) 전면은 휠체어장애인 및 모든 사람의 이용을 위해 유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작업대의 규격은 휠체어사용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와 하부 공간 등이 고려되어야한다.(단, 시각장애인은 일반 작업대를 주로 이용하며 이때 작업대는 의무 비치용품을 구비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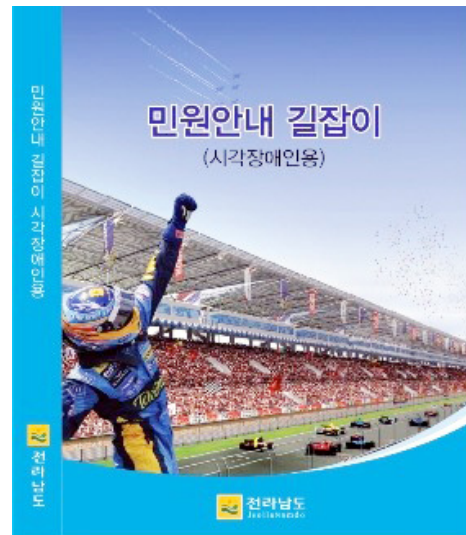


## (2) 의무 비치용품 및 상시 인적서비스의 구비

- ① 주민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공중이 민원을 처리하는 등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이를 도울 수 있는 의무 비치용품 및 상시 인적서비스를 구비해야한다.
-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무 비치용품은 8배율 이상의 확대경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CTV, 독서 확대기 등과 민원 사무 처리를 도울 수 있는 점자업무안내책자를 관내 모든 민원실에 각각 1개 이상씩 구비되어야한다.
- ③ 상시적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인 안내창구는 각 민원실 마다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인적서비스의 수준은 단순위치 안내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위한 대독, 대필 서비스는 물론 사전에 시각장애인 보행안내법 등 기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어야 한다.



〈그림 2-46〉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그림 2-47〉 점자업무안내책자

## (3) 기타 편의시설

- ① 민원실내 대기공간에 음수대 및 모든 휴대폰의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 ② 민원실 포함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는 동전 및 지폐 투입구, 종류, 금액, 반환 버튼 등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에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 ③ 인터넷 정보이용을 위한 컴퓨터에는 적어도 1대 이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
- ④ 이외에 민원인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모든 민원실내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해야한다.



# 공 원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출입구
4. 보도
5. 안내 및 경고시설
6. 계단
7. 승강기(엘리베이터)
8. 에스컬레이터
9. 경사로
10. 화장실
11. 공원시설
12. 매표시설





## 제3장 공원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그림 3-1〉 접근로 사례

#### 1) 설계 원칙

공원 부지 면적 인근 보도 및 부설주차장에서 공원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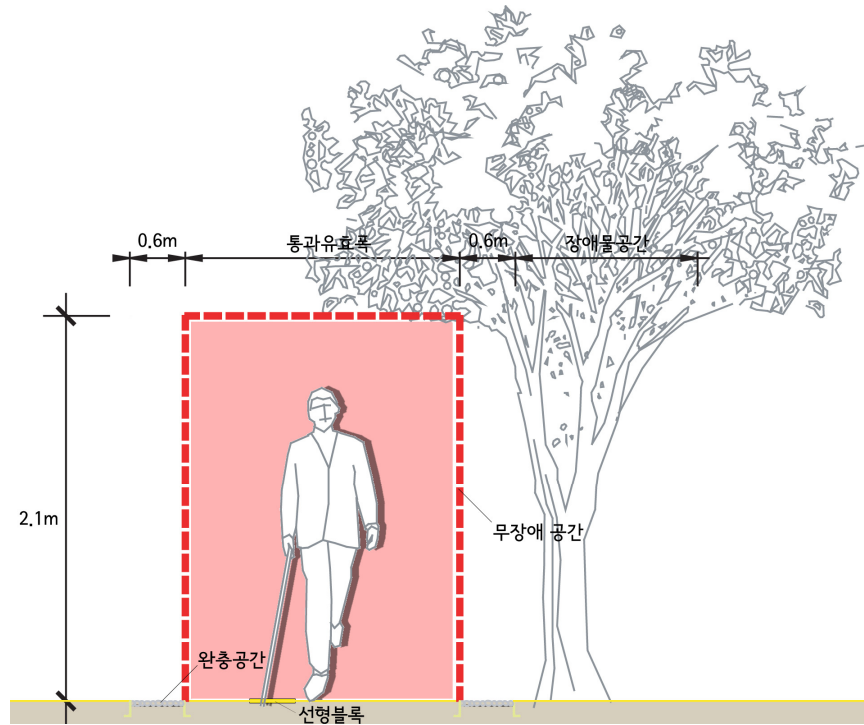
#### 2) 지침 요약

접근로는 충분한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완만한 기울기, 차도와의 경계,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과 평탄한 바닥 마감, 보행 장애물 제거,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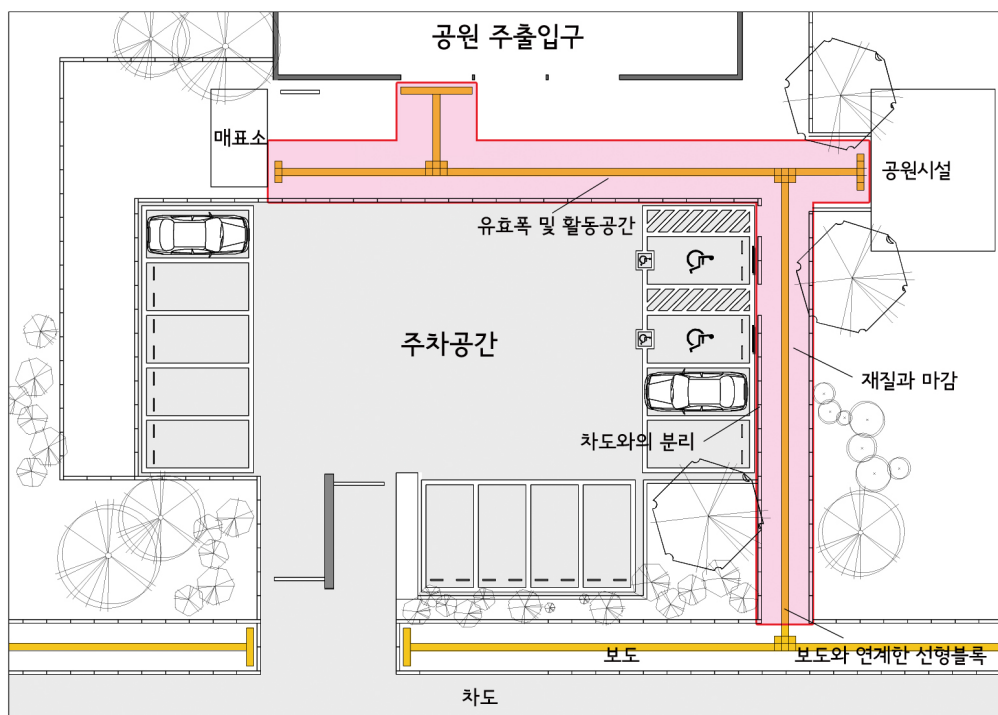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재질 및 바닥마감, 유효폭, 유효높이, 기울기, 점자블록설치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② 통과 유효폭은 가로수, 가로등, 간판 등 보행 장애물을 제외한 1.2m 이상으로 하며 교차부 근은 1.5m 이상으로 한다. 또한, 통과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 ③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해야 하며, 지형 상 곤란한 경우 최소 1/12이하까지 완화 가능하다.(단, 공원 부지가 산, 언덕, 수변 등에 위치하여 접근로 기울기를 1/12이하로 할 수 없는 경우, 최소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는 1/12이하의 기울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바닥에 2cm 초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⑤ 공원 접근로에 있는 외부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은 내부시설의 각 항목별 세부지침을 모두 준수하도록 한다.

- ⑥ 주변 보도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선형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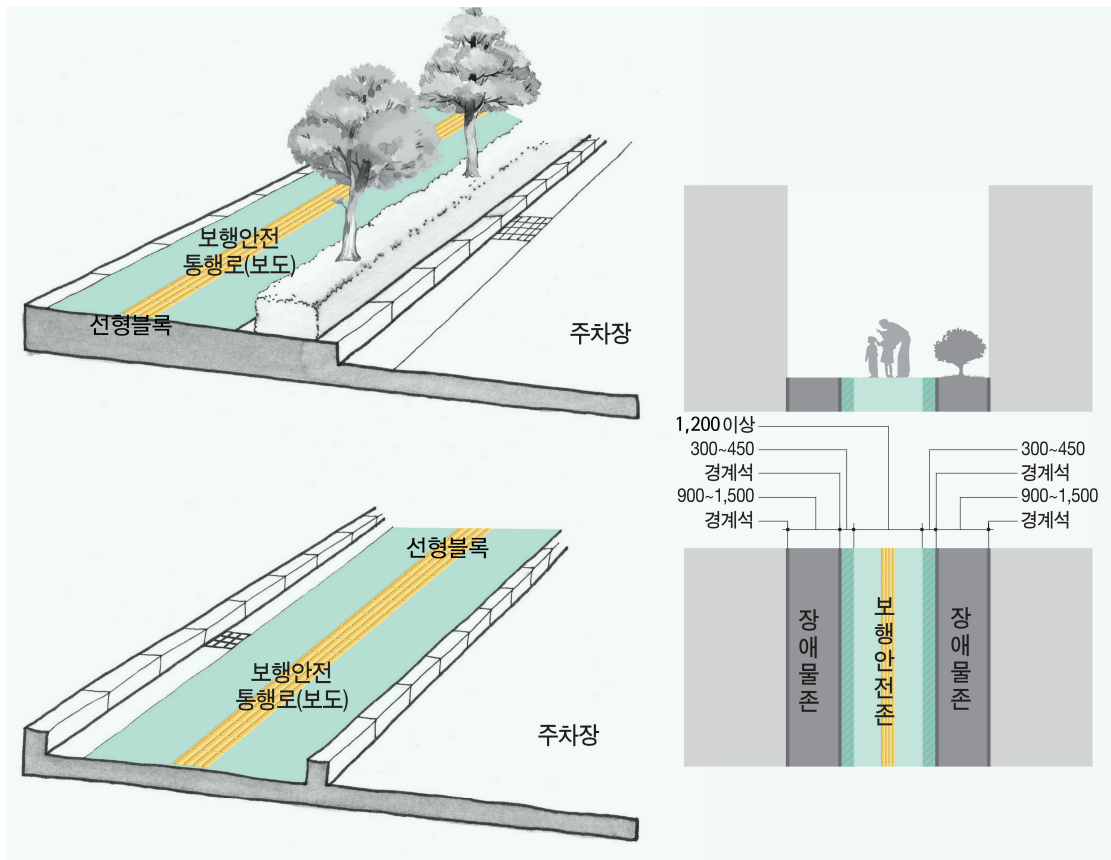
〈그림 3-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그림 3-3〉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 (2) 선형블록 설치

- ① 외부 보도에서 공원 주출입구, 대표시설 등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 ②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연속 설치해야한다.
- ③ 선형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60c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폭이 1.5m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 ④ 단, 접근로에 사감(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점자블록 기능 이상의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었을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및 단체의 검토 하에 선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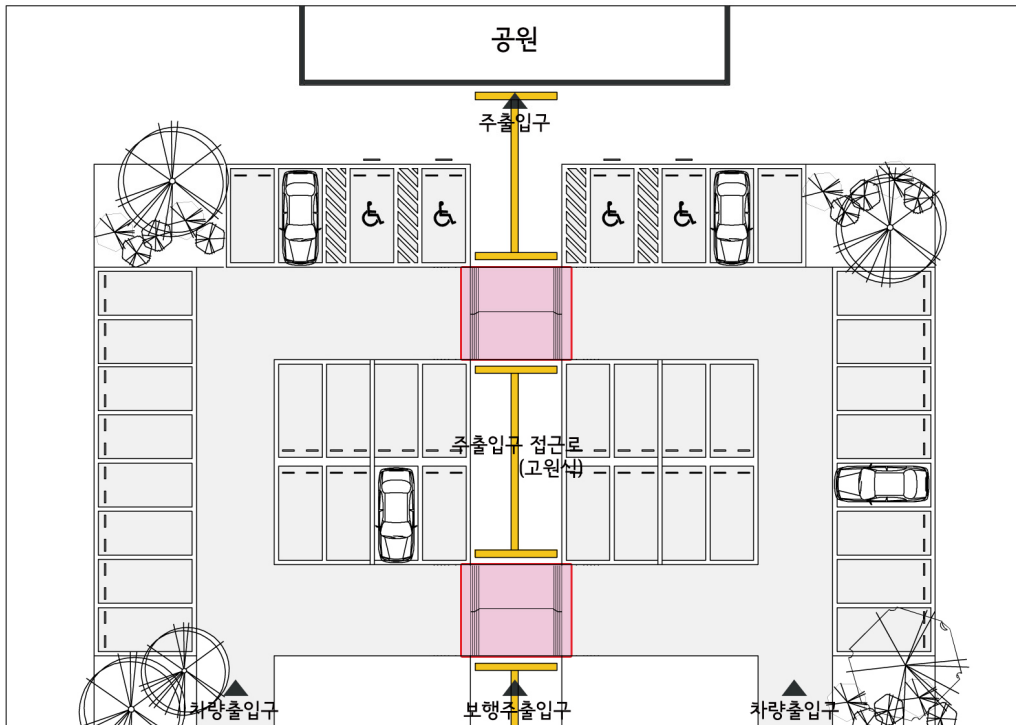
〈그림 3-4〉 보행안전통로

## (3) 차도와 보도 분리, 보행장애물 제거

- ① 접근로와 차도는 가능한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해야한다.
- ② 차도와 접근로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해야한다. 연석의 높이는 6~15cm로 할 수 있으며, 울타리 및 기타 공작물은 고정형으로 해야한다. 다만 연석이나 기타 공작물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을 달리 하거나 보행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높이 차이를 두어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 ③ 차도와 교차되는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동 횡단보도에는 횡단 폭 전면 0.3m위치에는 점형블록을 설

치해야한다.)

- ④ 가로등, 전주, 간판, 벤치, 휴지통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행장애물은 접근로 보행 구간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수직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 ⑤ 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 구멍,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림 3-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그림 3-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4) 외부 계단(공원 접근로에 설치되는 모든 계단)**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한다.
- ②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으로 하고 돌음, 나선형은 금한다. 디딤판의 넓이와 첩면의 높이는 균일해야한다. 조명을 설치하여 계단 디딤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계단 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색상, 재질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 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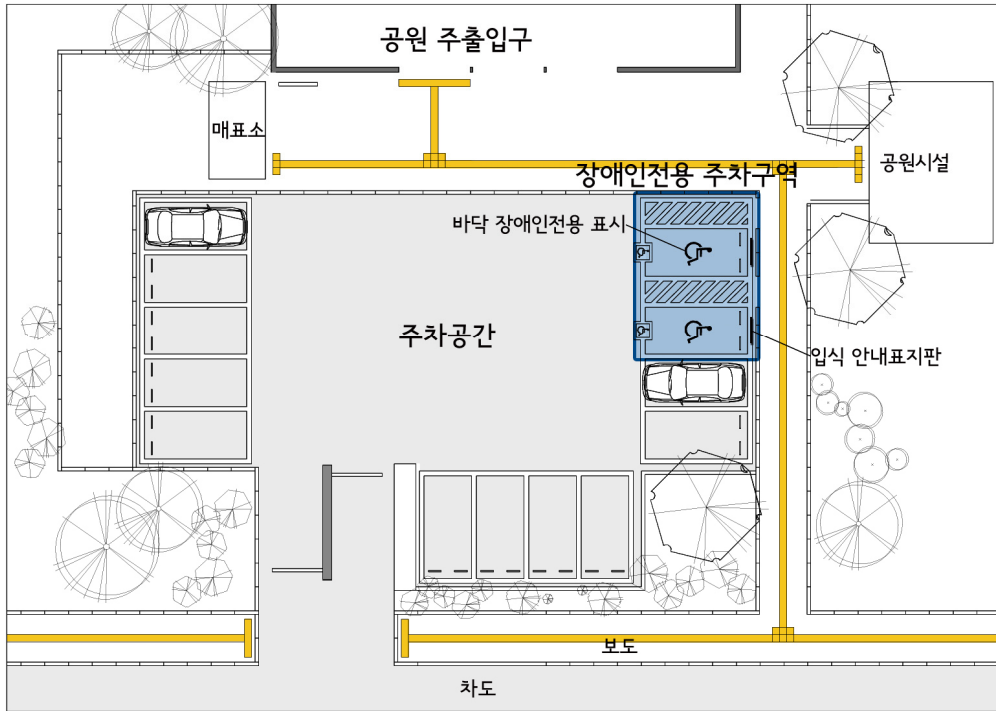
- ③ 계단의 양측면에는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손잡이 직경은 3.2~3.8cm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 계단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 0.85m, 아래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계단의 시·종점 및 참부분은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시·종점 양쪽 수평손잡이에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 ⑤ 기타 세부기준은 제3장 6호 계단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5) 외부 경사로(단차 제거를 위한 경사로, 접근로 내에 있는 경사로)**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굴절 및 시작과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한계사항이 있을 시 유효폭은 0.9m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경사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건축물 조건 및 공간 경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12이하까지도 완화 가능하다.
- ③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점자문구 예: ‘→ 어린이공원 주출입구 방면 경사로’ , ‘← 주차장 방면 경사로’ 등)
- ⑤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1/18 이하의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단, 기울기가 1/18초과 ~ 1/12이하인 경우 전면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경사로는 선형블록을 생략한다.
- ⑥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점형블록은 단차전면에 설치한다.)
- ⑦ 추가적으로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기준은 제3장 제9호 경사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원 부설 주차구역이 설치되는 경우)



〈그림 3-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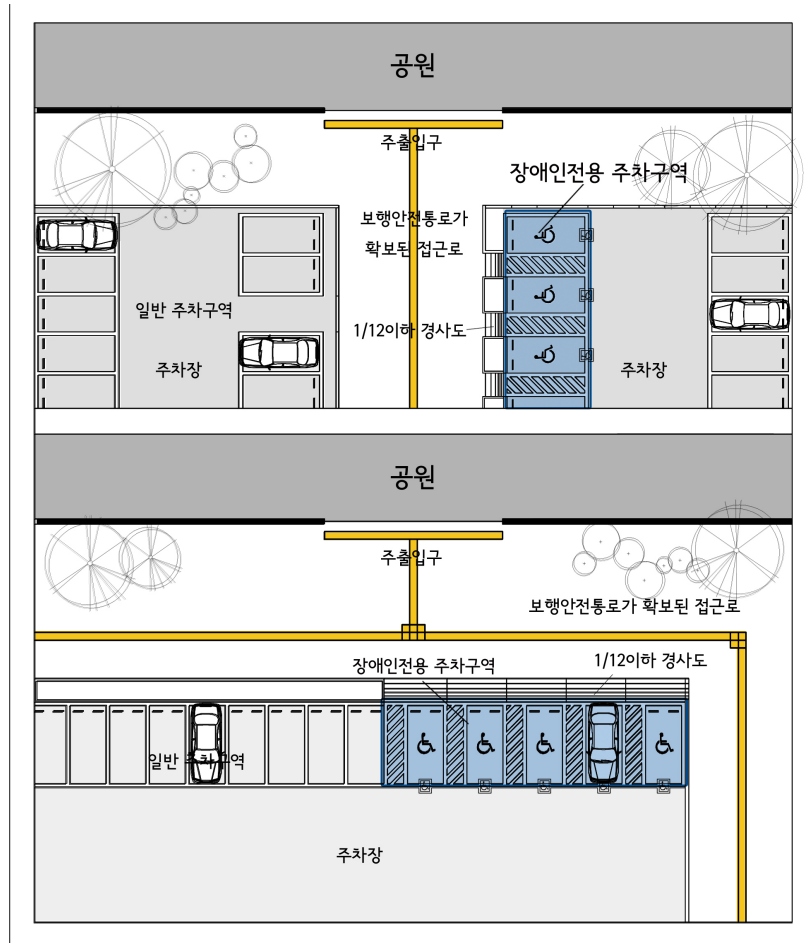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지 및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고려한 설치 위치, 합당한 주차구역의 규격, 주목성 있는 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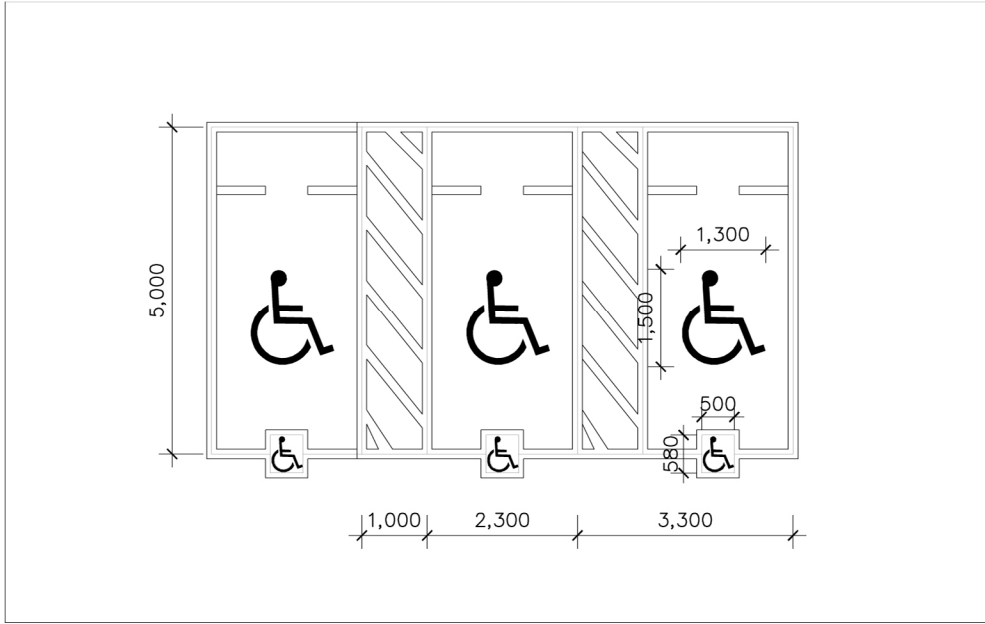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비고 10항, 시행규칙 제4조, 5조 참조
- ②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바닥면 기울기는 1/50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 등이 승차 전과 후에 차로를 거치지 않고 공원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원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동선은 보행안전통로로 보행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림 3-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 (2) 주차구역 크기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의 경우 가로(폭) 3.3m 이상, 세로(길이) 5m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② 평행주차의 경우 가로(폭) 2.0m 이상, 세로(길이) 6m 이상으로 해야하며 보행통로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 ③ 치수는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 규격으로 하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8cm의 규격으로 한다.



〈그림 3-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 (3) 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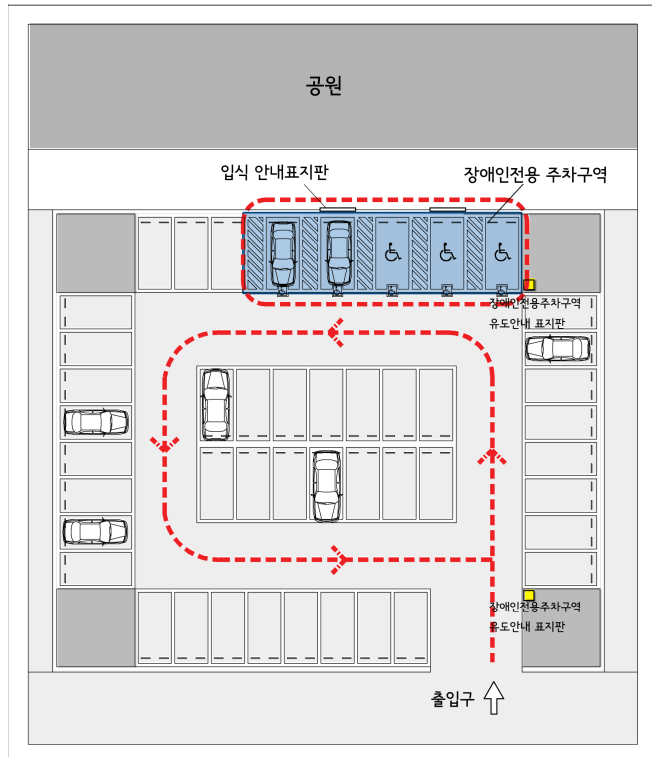
- ① 주차 구역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한다.
- ② 바닥 전용주차장 표시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르는 장애인 안내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이상으로 하여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설치 높이는 표지판 하부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주차장 입구 부근 및 차량 진입 부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를 유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그림 3-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그림 3-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 3. 주출입구(문)



〈그림 3-13〉 주출입구 사례

#### 1) 설계 원칙

주출입구(문)는 공원의 내·외를 구분 짓는 곳으로, 누구나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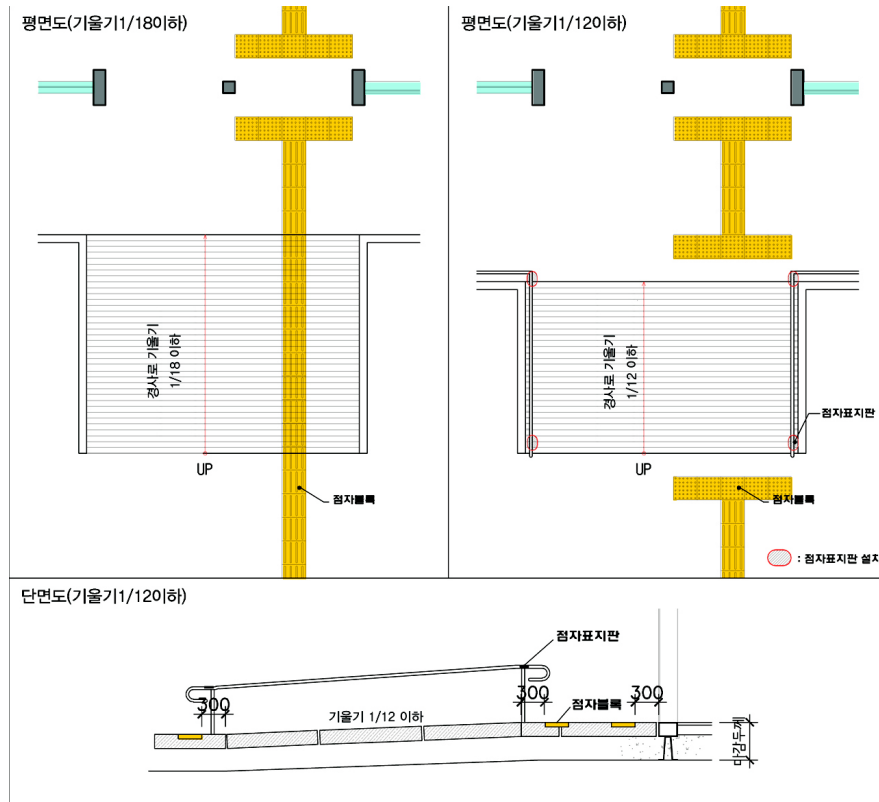
주출입구(문)는 높이차이의 제거 또는 단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사로의 설치, 쾌적한 활동 공간 및 유효폭 확보, 주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 점자안내판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단차 제거, 쾌적한 활동 공간 및 유효폭, 문의 개폐 방법 등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높이 차이는 없어야 한다.
- ② 공원 주출입구 구조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단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③ 공원 출입구 전후의 활동 공간은 시설 이용자들의 원활한 출입 공간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④ 주출입구에는 2cm 초과 의 바닥 높이 차이나 턱, 문지방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⑤ 게이트(개찰구)가 있는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0.8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해당 부지면적 내에 있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안내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경사로 설치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굴절 및 시작,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한계사항이 있을 시 유효폭은 0.9m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점자문구 예: 하부 ‘→ 관리사무소 주출입구 방면 경사로’, 상부 ‘← 좌측 음악분수, 우측 공원후문 방면 경사로’ 등)
- ⑤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1/18 이하의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단, 기울기가 1/18초과 ~ 1/12이하인 경우 전면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경사로는 선형블록을 생략한다.
- ⑥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점형블록은 단차전면에 설치한다.)
- ⑦ 추가적으로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기준은 제3장 9호 경사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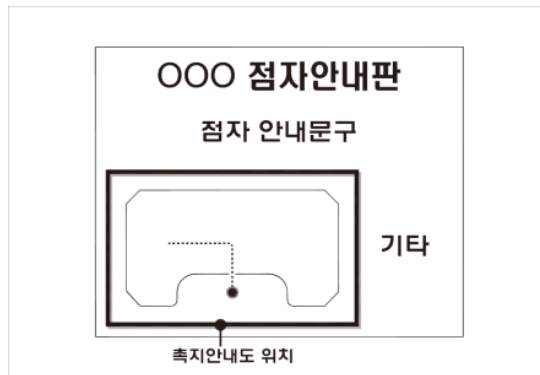
〈그림 3-14〉 주출입구 경사로 평면도, 단면도



### (3) 점자블록 설치

- ① 공원 주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출입구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의 설치는 주출입문 전면, 단차 상하부, 점자안내판 전면 0.3m에 설치한다. 접근로에 유도 설치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주출입구까지 연속 설치되어야 하나 주출입구 공간이 협소하여 점자블록 기본 설계법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주출입구(문)을 기준으로 실내와 실외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문 폭만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원의 주출입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④ 주출입구 부근에 단차가 있을 경우 단차의 시작과 끝부분 전면 0.3m에 단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단차의 폭이 10m 이상 실제 보행동선과 상관없이 넓은 경우에는 출입문 폭의 1.5배 이상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주출입구의 문이 게이트(개찰구)인 경우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게이트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4) 점자안내판(촉지식 안내판, 촉지안내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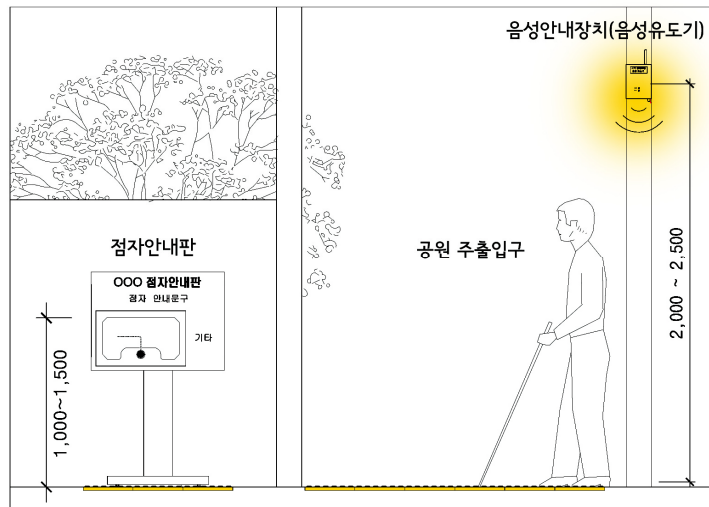


〈그림 3-15〉 점자안내판 예시

- ①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공원 내 가고자하는 목적지 및 전반적인 공원의 구성 파악을 목적으로 공원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단, 출입하는 기능이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면 부출입구에 설치해도 무관하다.
- ②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 3장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점자안내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공원 등 내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5)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접근로를 통해 진행하는 시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송신기)을 동작, 공공건물의 주출입구로 진입 유도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한다. 만약 실제적으로 출입하는 기능으로써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보다 활성화되었다면 부출입구에 설치 가능하다.
- ② 시설관리 상, 상시이용하지 않는 문이나 폐문 등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상시개폐 되는 실제 출입 가능한 문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하며, 점자블록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한다.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0~2.5m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안내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해당 시설 명(동, 관 포함) 및 내부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종합안내센터의 위치 등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점자안내판이 있을 경우 점자안내판 위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한다.(예: ‘어린이대공원 주출입구 입니다. 출입구 진입 후 정면 산책로, 좌측은 종합안내데스크, 우측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측에 점자안내판을 참고하십시오.’ )
- ⑤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을 원칙으로 하나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⑥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⑦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⑧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⑨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그림 3-16〉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4. 보도



〈그림 3-17〉 공원 내 보도 사례

### 1) 설계 원칙

공원 내 보도는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해야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기준선이 마련되어야 하며 공원 시설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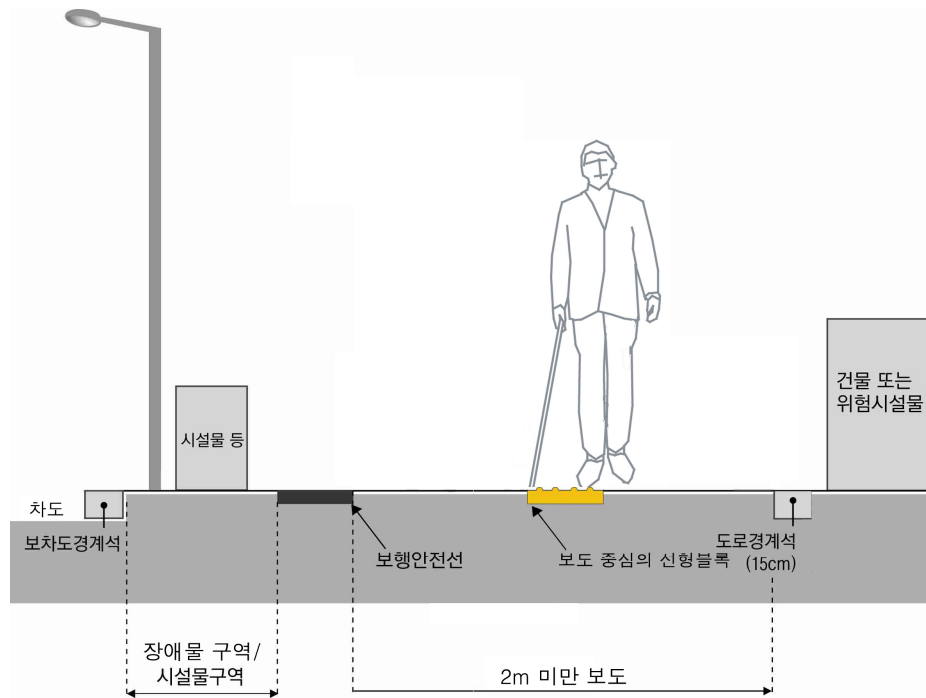
보도의 충분한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완만한 기울기, 평탄한 바닥마감,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확보, 보차의 구분, 장애물 제거, 점자블록 설치, 안전보행로 및 주변과의 연계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재질 및 바닥마감, 유효폭, 유효높이, 기울기, 점자블록 설치, 보행자 공간의 연속성 확보, 안전보행로 확보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② 통과 유효폭은 가로수, 가로등, 간판 등 보행 장애물을 제외한 1.2m 이상으로 하며 교차부 근은 1.5m 이상으로 한다. 또한, 통과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 ③ 보도의 기울기는 1/18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 이하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④ 바닥에 2cm 초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⑤ 공원 내 보도의 외부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은 내부시설의 각 항목별 세부지침을 모두 준수하도록 한다.
- ⑥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연속적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 (2) 장애물 제거

- ① 보도 상 보행자를 위한 공간 안의 가로수, 가로등, 벤치 또는 캐노피(canopy), 노점, 휴지통, 불법 길말뚝, 자전거보관대 등은 연속성과 일관성 있는 보행 경로에 방해가 되므로 제거되어야한다.
- ② 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 구멍,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③ 가로등, 전주, 간판, 벤치, 휴지통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행장애물은 접근로 보행 구간에 서 제거되어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수직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그림 3-18〉 보도 구성 체계

## (3) 보행안전통로(선형블록) 설치

- ①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원의 경우 공원 내 산책로 등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해야한다.
- ② 보행안전통로에는 선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형블록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을 달리 하을 보행기준선을 마련하여야한다.(단, 보행안전통로가 2m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직선 보행이 어려울 경우 선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③ 보행안전통로의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가장 좁은 폭을 기준으로 중앙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④ 선형블록의 재질은 KS규격에 충족해야하며, 실외의 경우 석재, 콘크리트 등 내구성이 강한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특히 고무재질, PVC 등 내구성이 낮거나 철재 등과 같이 미끄럼과 눈부심을 유발하는 재질은 사용을 금해야한다.

- 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cm 공간에는 어떠한 보행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⑥ 공원내 보도에 점자블록을 연속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음성유도기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 ⑦ 선형블록의 설치 원칙은 부록 1. 점자블록을 참고한다.

#### (4) 차도와 보도 분리, 보행장애물 제거

- ① 보도와 차도는 가능한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해야한다.
- ②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해야한다. 연석의 높이는 6~15cm 로 할 수 있으며, 울타리 및 기타 공작물은 고정형으로 해야한다. 다만, 연석이나 기타 공작물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을 달리하거나 보행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높이 차이를 두어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 ③ 차도와 교차되는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동 횡단보도에는 횡단 폭 전면 0.3m위치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④ 가로등, 전주, 간판, 벤치, 휴지통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행장애물은 접근로 보행 구간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수직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 ⑤ 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 구멍,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5) 공원시설과의 연계성

- ① 일반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화장실, 휴게소 등)까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점자블록을 접근로의 선형블록과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 ② 공원의 보도가 보행안전통로인 경우 공원시설에서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9〉 공원시설과의 연계 사례 1



〈그림 3-20〉 공원시설과의 연계 사례 2

## 5. 안내 및 경고 시설



〈그림 3-21〉 공원 내 점자안내판 사례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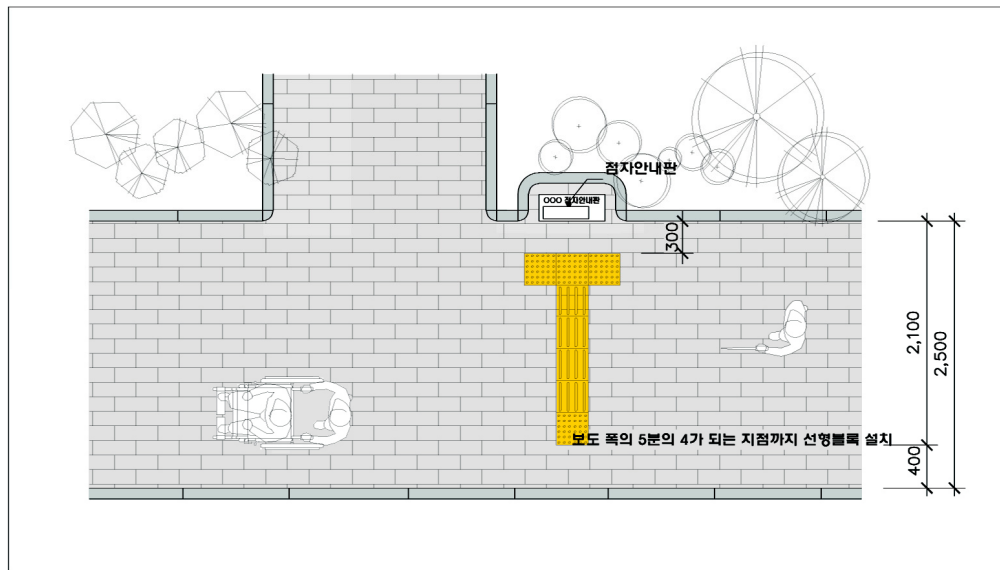
안내 및 경고 시설은 공원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을 위하여 시각,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공원 내의 위치와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정보와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어야한다.

### 2) 지침 요약

점자안내판 및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설치, 점자표기, 경고시설 설치, 주변과의 연계성 등이 확보되어야한다.

#### (1) 점자안내판 및 점자블록 설치

- ①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공원시설(전시관, 화장실 등), 주변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의 주요 분기점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점자안내판은 공원의 주요 교차로와 보행로 구간에 설치하며, 밤에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③ 점자안내판에 포함되는 촉지안내도에는 위치 및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공원 보도의 선형블록과 연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원내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점자안내판까지 유도하기 위해 보도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 설치하여야한다.
- ⑤ 공원의 특성상 점자블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점자안내판에 접근하도록 한다.
- ⑥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안내표지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할 수 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그림 3-22〉 보행안전통로의 경우 안내시설 등(점자안내판) 점형블록 설치 예시

## (2)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음성안내장치는 공원내 교차로, 중요 시설 인근 등 주변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의 주요 분기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안내 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현위치에 대한 정보와 주변시설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해야한다. (예: ‘화장실 앞 교차로 입니다.’ )
- ②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0~2.5m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을 원칙으로 하나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⑤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⑥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⑦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⑧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 (3) 경고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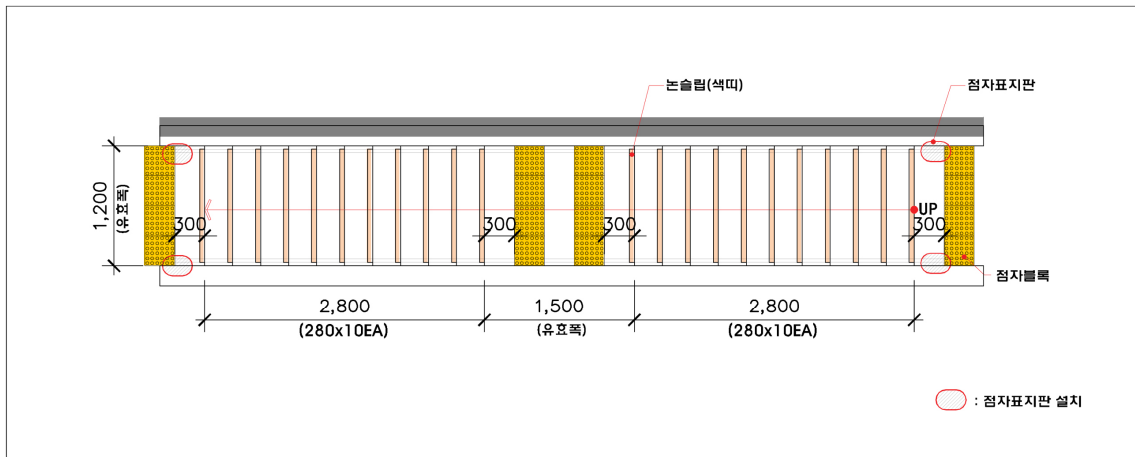
- ① 특히 낙상,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지역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주의·경고하여야한다. 다만, 점형블록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할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을 달리해야한다.
- ② 위험지역에 울타리 및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낙상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한다. 이때 경고시설은 하부 공간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 보행시 접근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3-23〉 위험지역에 바닥재 색상 및 질감, 울타리를 설치한 사례



## 6. 계단



〈그림 3-24〉 계단 예시

### 1) 설계 원칙

계단은 일반적으로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시설로 수직 이동시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어야하며 층별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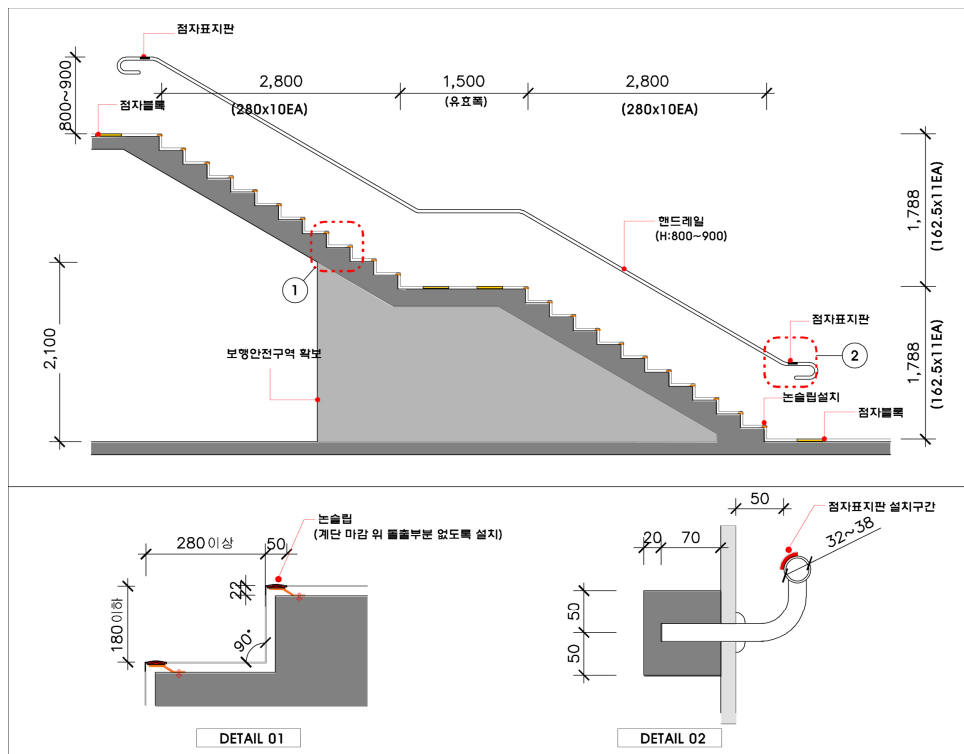
계단은 균일한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편 설치, 안정성 확보, 손잡이의 설치, 계단 단차 확인,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균일하고 합리적인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편의 설치 안정성 확보 등

- ①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해야한다. 사선, 원형 형태의 계단은 시각장애인이 실족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설치를 금하도록 한다.
- ②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 ③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하며, 최소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옥외 계단의 경우 0.9m 이상으로 가능하다.)
- ④ 철편은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해야한다.(가급적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계단을 균일하게 한다.)
- ⑤ 계단코는 3cm 이하로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⑥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난간하부에 계단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계단참 부분에는 사선, 원형 계단의 설치를 금한다.
- ⑧ 계단 하부에는 보호난간,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한다. 단, 『소방법』에 의거 방화도어나 셔터, 소화전의 설치 위치에는 부분적으로 끊어 설치 할 수 있다.
- ② 손잡이의 형태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3.8cm으로 한다.
- ③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점자표지판은 계단의 시·종점 수평손잡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만약 현장 구조상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가까운 손잡이 부근에 설치하도록 한다. 계단참부근과 굴절지점에는 설치 생략가능하다.
- ⑤ 점자표지판의 문구는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목적지층의 층수, 실정보 등을 표기한다.(예 : '→ 1층 공연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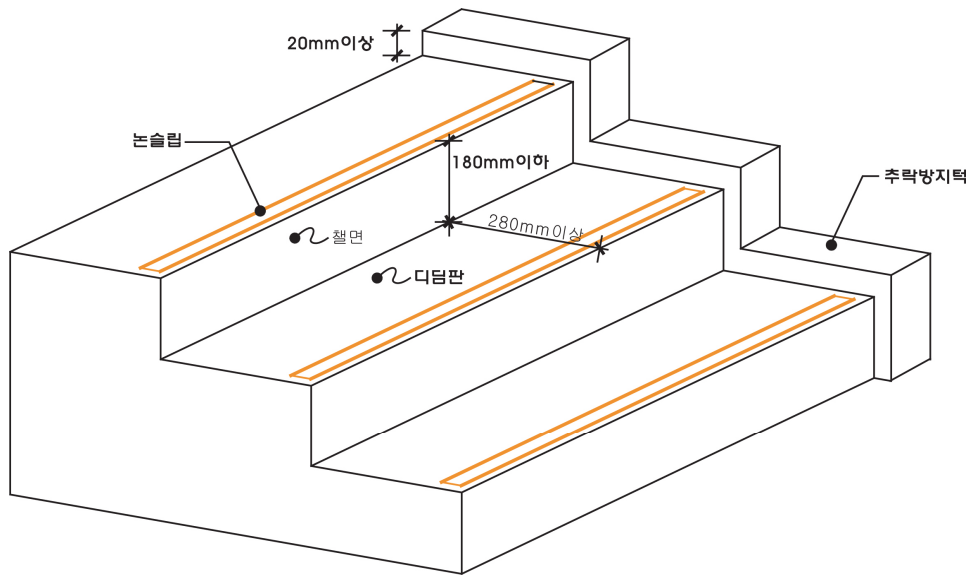
〈그림 3-25〉 계단 점자표지판, 논슬립 상세도



〈그림 3-26〉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 (3) 계단의 단차 확인

- ① 계단의 단차 확인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계단 보행시에 안전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단차의 구별이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② 디딤판은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철편과 구별이 뚜렷해야한다. 특히 계단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재질, 색상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단 및 참의 시작과 끝의 디딤판은 다른 계단 디딤판과 색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계단실 및 계단의 조명으로 인한 음영이 철편과 디딤판의 구별을 용이하도록 하며 150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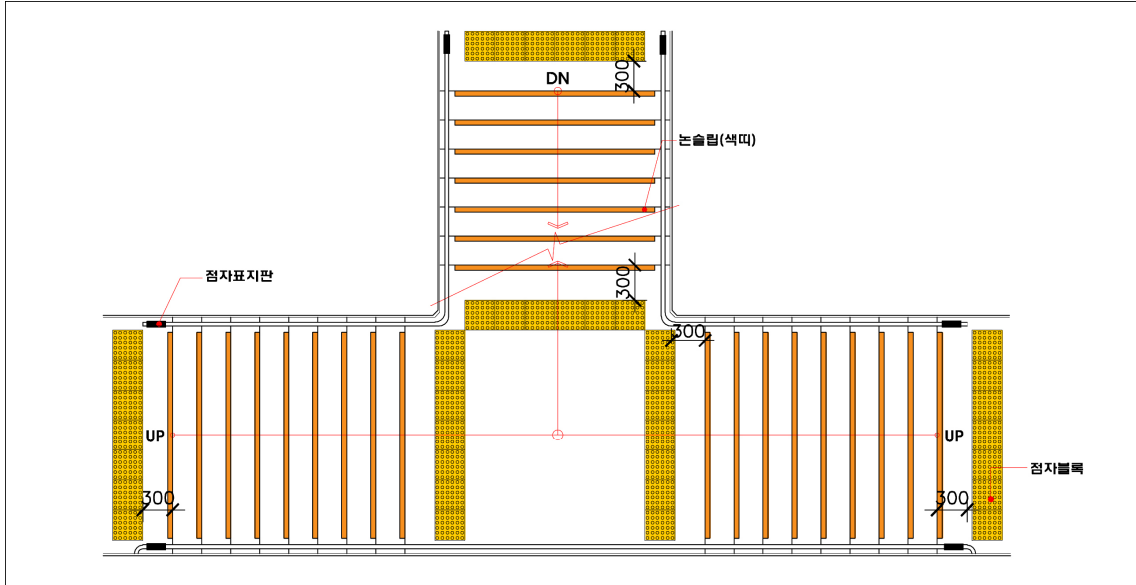
〈그림 3-27〉 계단의 식별



〈그림 3-28〉 계단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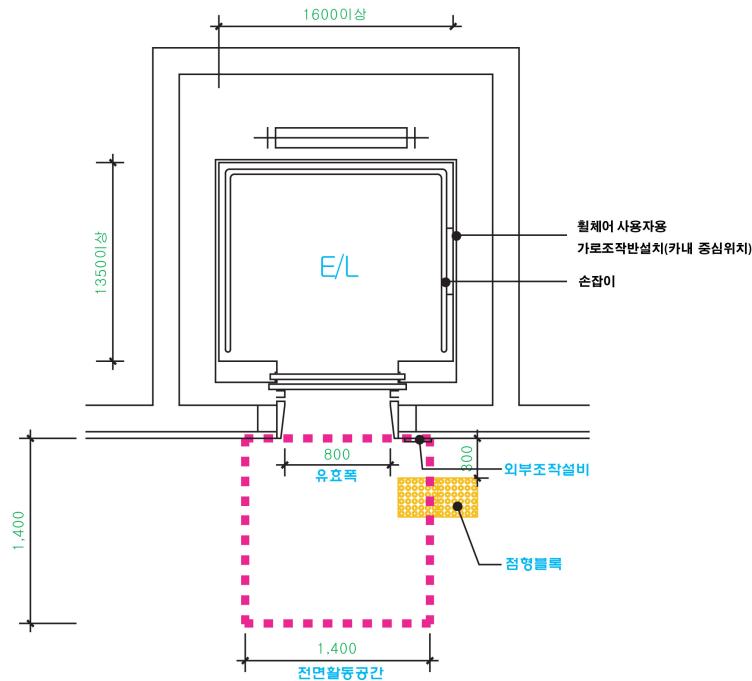
### (4) 점형블록 설치

- ① 계단의 시작과 끝, 계단참 끝부분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② 계단 전면에 차수판이 있는 등 현장 조건상 0.3m 전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인접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단, 이격 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 ③ 계단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지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림 3-29〉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 7. 승강기(엘리베이터)



〈그림 3-30〉 승강기 예시

### 1) 설계 원칙

승강기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수직이동 수단으로 휠체어사용자, 노약자, 유모차 등 계단을 통한 층별 이동이 불가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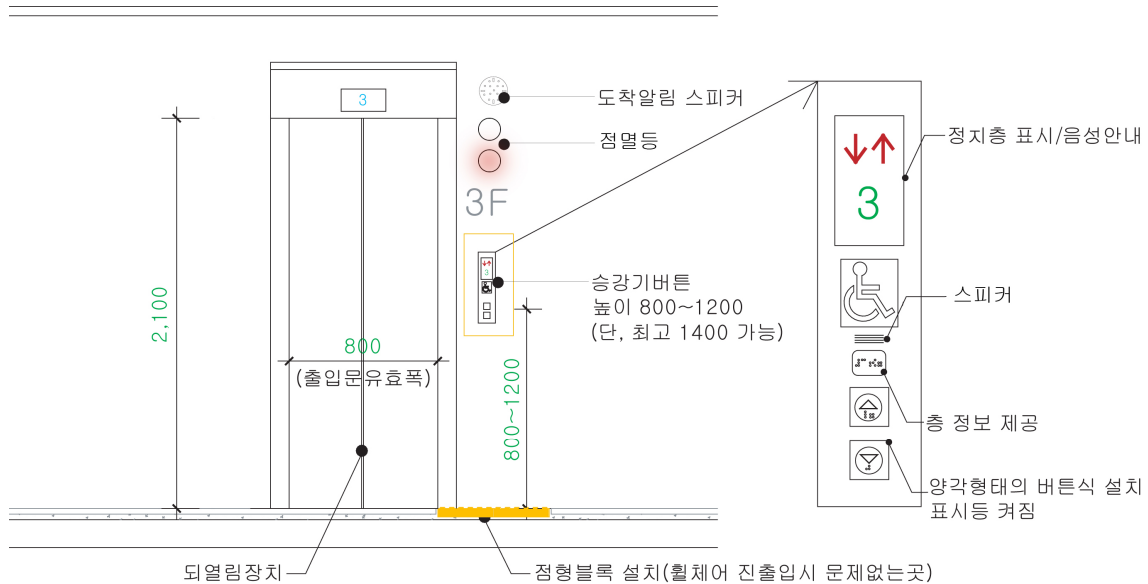
승강기는 접근의 용이성,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전성,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의 설치,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기타 안내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정성 확보 등

- ① 주출입구 및 로비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되거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한다.
- ②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최소 폭 1.6m, 깊이 1.35m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측면 조작반, 후면거울을 설치하는 등 대안적으로 승강기를 조작가능하게 해야한다.
- ③ 승강기 외부인 승강장은 누구나 승강기를 승하차할 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닥면적 및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 ④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에 끼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 열림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턱의 틈은 3cm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 ⑤ 승강기 내부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측면에 직경 3.2cm~3.8cm의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이 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로 하고 측면과는 5cm의 간격이 유지 되게 하며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 (2)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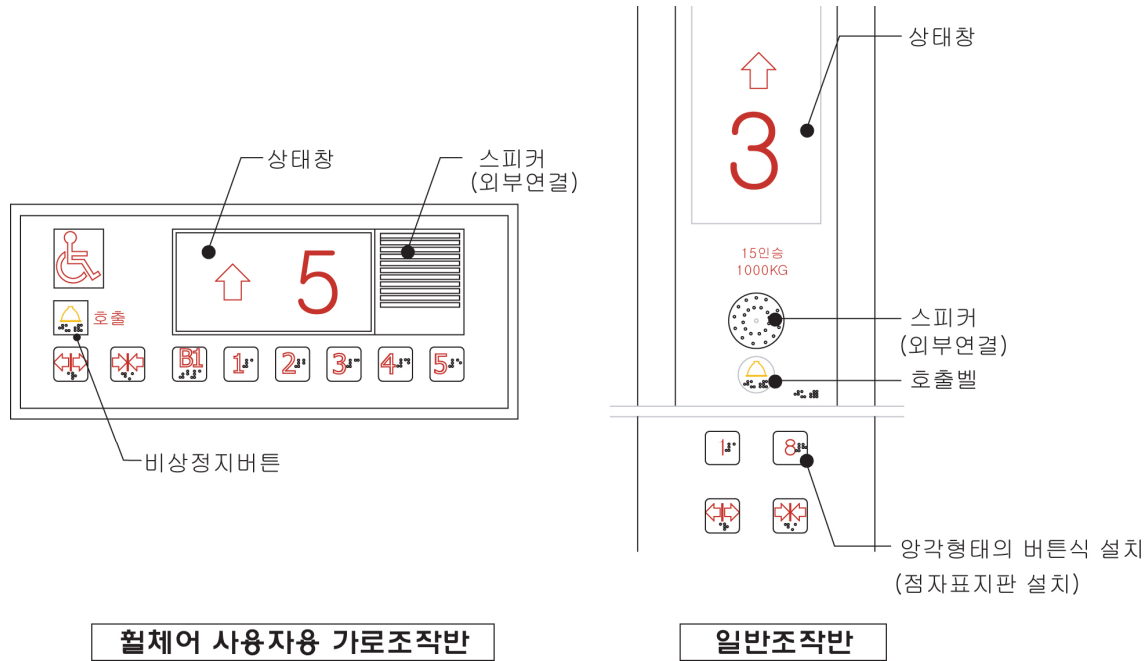
- ① 건물의 각층 승강장 부근에는 승강기 조작반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한다.
- ②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과 비상호출버튼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일반조작반 뿐만 아니라 휠체어사용자용 가로 조작반도 해당한다.
- ③ 특히 승강장 조작반 부근에 현재 층 정보는 물론 해당건물의 층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층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버튼의 점자 문구는 KS 규격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에 준하도록 한다. 단, 인천공항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표기 가능하다.
- ⑤ 비장애이용 승강기의 운행층이 홀수층, 짝수층 또는 고층 및 저층운행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호출버튼 인근에 운행층 정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⑥ 장애인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일반 승강기 버튼 앞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저시력인 등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3-31〉 승강기 구조, 조작반

## (3)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 ① 승강기 승강장 호출 버튼(외부 상·하버튼) 설치위치는 우측보행을 고려하여 가급적 승강장 출입문 우측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로 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모든 승강기 버튼은 양각 버튼식으로 설치하고 버튼 동작시 점멸등이 켜지게 하여 동작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승강기 내부의 모든 조작 버튼은 취소가 가능한 토글 방식이어야 하며 누르면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 하고 취소할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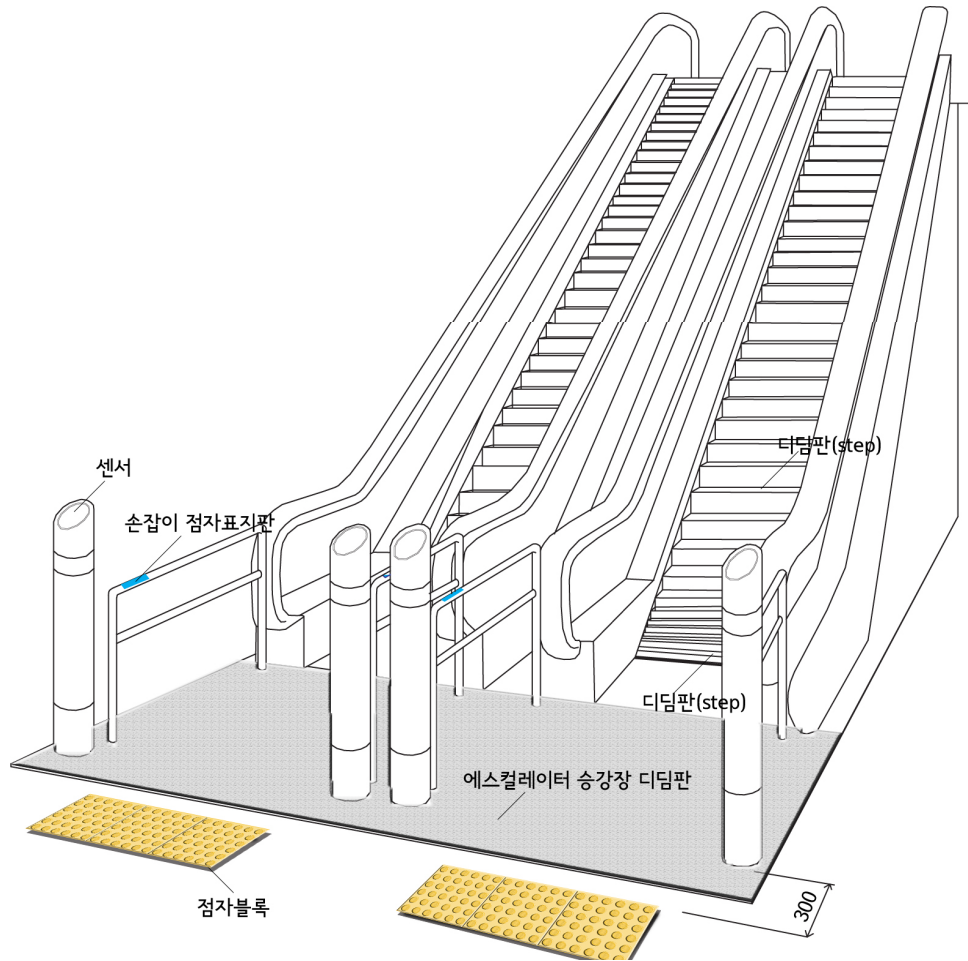


〈그림 3-32〉 승강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 (4) 안내설비의 설치

- ① 각 층의 승강기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및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도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실제 승강기에서 발생한 도착음향이 외부 승강장에서 들려야 한다.)
- ②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설치되고 음성안내를 제공해야한다.(문의 개폐, 오르내림, 층 정보 등이 포함된다.)
- ③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예 ‘들어오신 뒷면(후면)에서 문이 열립니다.’ )
- ④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승강장, 승강기내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⑥ 승강장 측벽이나 바닥에 층 표시를 크게 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에게 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관리 승강기 설치시 최소 1대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하고 군관리에서 제외하여 전층 운행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⑧ 승강기 내부 층별안내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다.

## 8. 에스컬레이터



〈그림 3-33〉 에스컬레이터 예시

### 1) 설계 원칙

에스컬레이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사람을 층간에서 연속적으로 승강시키는 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단과 마찬가지로 층별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에스컬레이터는 쾌적한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확보, 운행속도 준수, 안전장치 설치,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쾌적한 승강장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합리적인 운행 속도, 비상정지버튼, 역진 입방지 센서, 진입방지봉 설치 등 안전장치 확보,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등

- ①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부근은 혼잡한 경우 충돌사고 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진입부는 최소 0.6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내외가 되어야 한다.
- ③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 중간부분에 위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해야



하고 역진입시 경고음향이 출력되는 역진입방지 센서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방지봉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마감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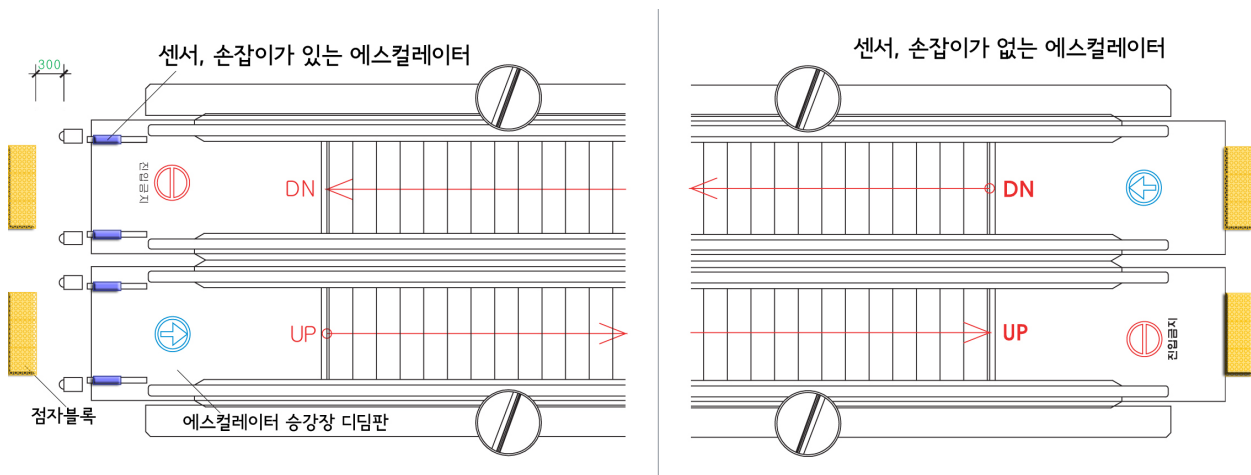
- ④ 디딤판의 가장자리와 끝부분(계단코부근)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황색으로 구분해야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높이 1.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 ② 손잡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해야한다.
- ③ 시작과 끝부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높이, 길이 1m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하며 문구는 화살표방향, 층정보, 목적지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특히 역진입 방향 손잡이에는 진입방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점자를 표기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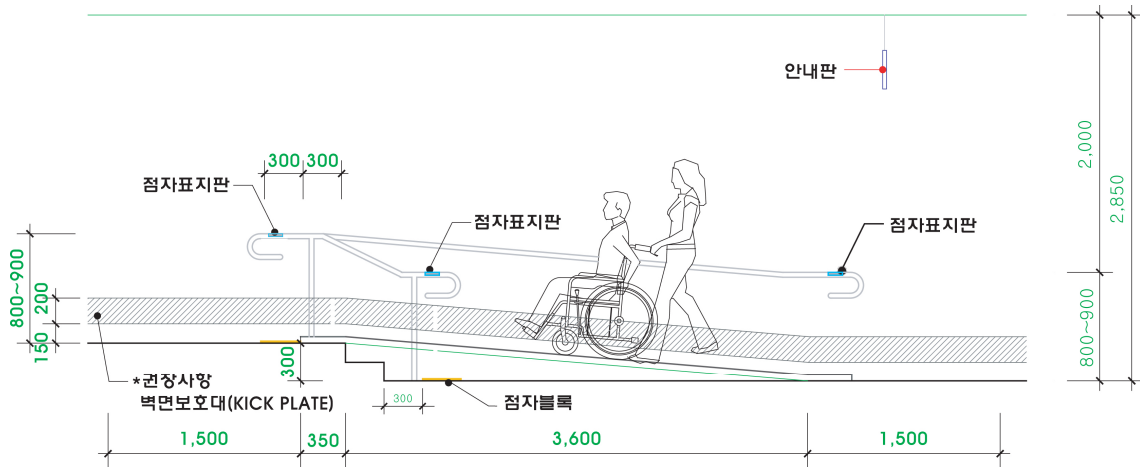
### (3) 점형블록 설치

- ①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은 계단과 마찬가지로 진입 유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이때 에스컬레이터는 시설 특성상 시·종점 부근에 승강장 디딤판이 존재하므로 움직이는 디딤판 전면 0.3m에 설치가 불가하다. 때문에 승강장디딤판에 바로 인접해 설치하도록 한다.
- ③ 단, 센서가 있을 경우 센서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3-34〉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 9. 경사로



〈그림 3-35〉 경사로 예시

### 1) 설계 원칙

실내 복도 내에 설치된 경사로는 높이차를 해소하는 시설로 휠체어사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경사로는 쾌적한 통과 유효폭과 공간 확보 경사로 참 설치, 완만한 기울기, 손잡이 설치, 점자 표지판 설치, 올바른 바닥마감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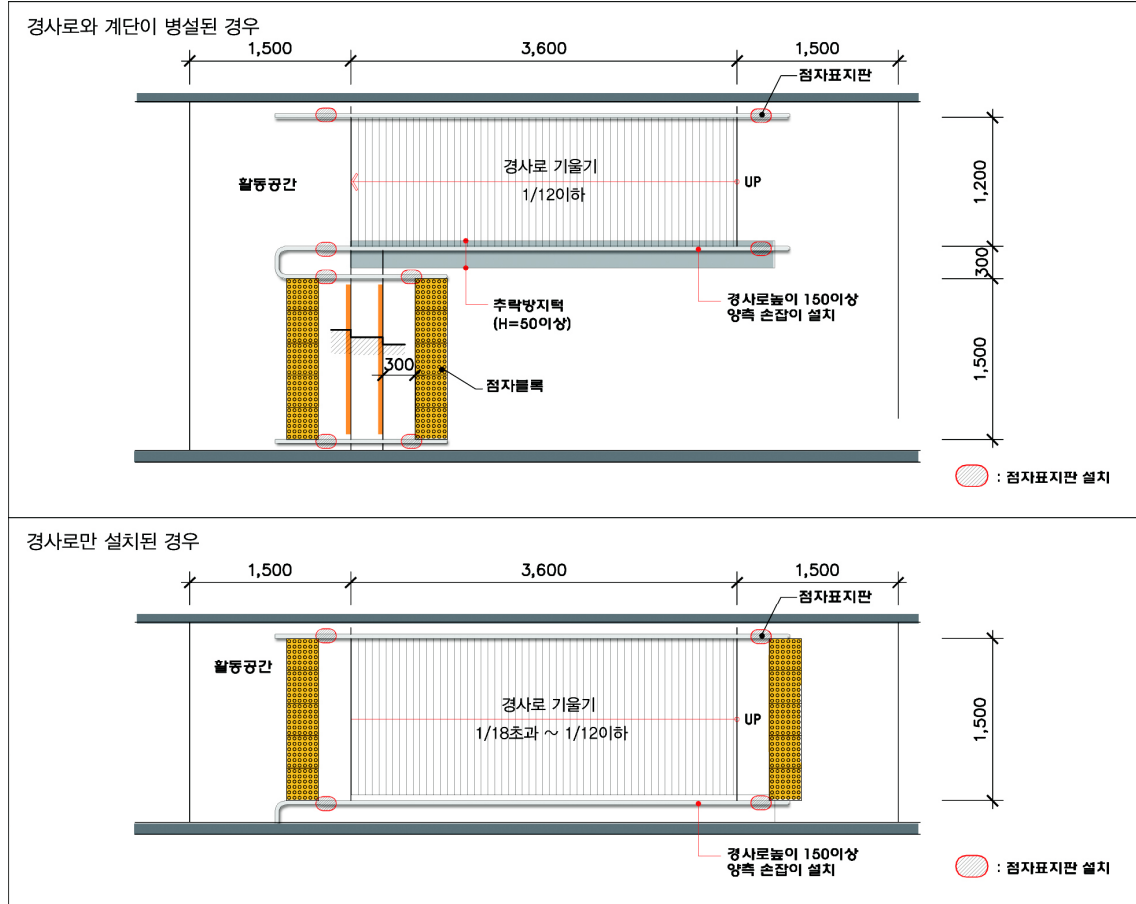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쾌적한 통과 유효폭과 공간 확보, 경사로 참 설치, 완만한 기울기 등

- ① 경사로의 통과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굴절 및 시작과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와 같은 한계사항이 있을 시, 0.9m 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한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하며 공간은 1.5m×1.5m 이상으로 한다.
- ③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 ② 손잡이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하여야 하며 힘을 줄 수 있도록 직경을 3.2~3.8cm으로 한다.
- ③ 손잡이의 높이는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2중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하여 신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점자문구 예: ‘→ 화장실, 후문 방면’, ‘← 공원 관리 사무실, 화장실 방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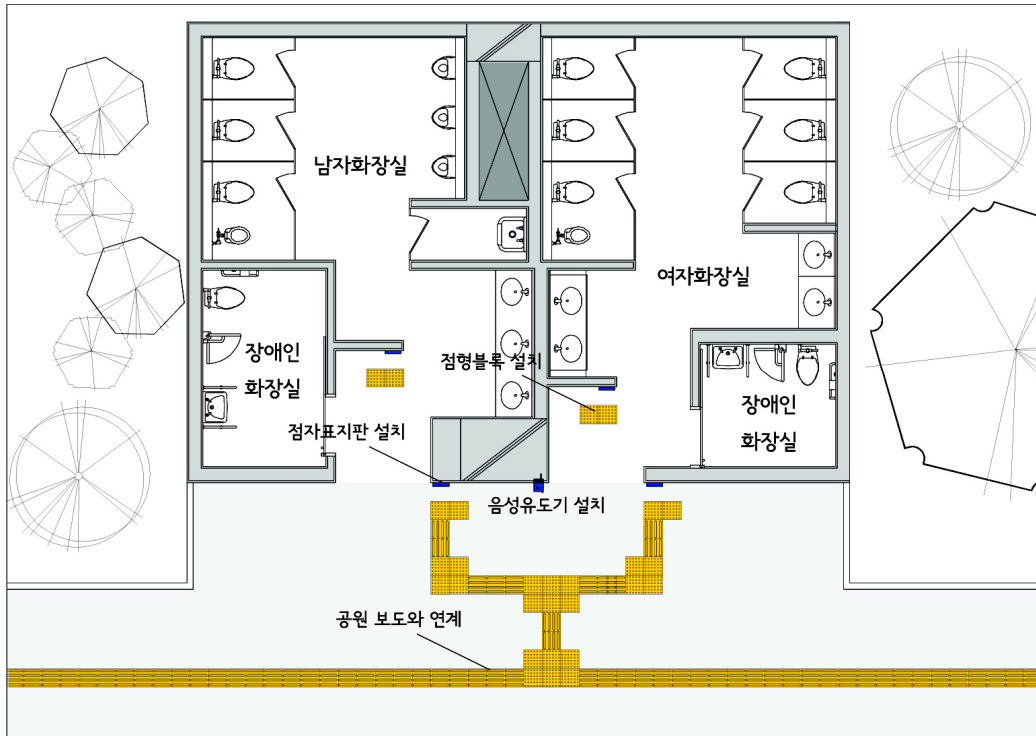


〈그림 3-36〉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 (3) 바닥마감

- ① 경사가 있는 곳은 미끄러질 수 있는 요인이 크므로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마감해야 한다.
- ② 장애특성을 고려했을 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하고 경사로 전면 또는 경사로 바닥재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경사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계단이 같이 설치된 경우 계단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경사로만 설치되어있는 경우 1/18초과 ~ 1/12이하의 경사로 전면에 점형블록을 폭만큼 설치하도록 한다.
- ⑤ 경사로 양측면에는 높이 5cm~10cm의 휠체어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고 벽면에 충돌 완화를 위한 충격 완화 매트를 설치할 수 있다.

## 10. 화장실



〈그림 3-37〉 화장실 예시

### 1) 설계 원칙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인지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진입에서부터 화장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자 표지판, 점형블록, 음성안내장치의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화장실은 접근성 확보, 장애인용화장실과 구분 설치,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미끄럽지 않는 바닥 재질 및 마감, 편리한 화장실 시설,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수도꼭지 냉·온수 점자표기,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장애인용화장실과 구분 설치,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등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외부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공간 구성이 복잡하거나 손잡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일반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은 일반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오히려 점형블록을 장애인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설치

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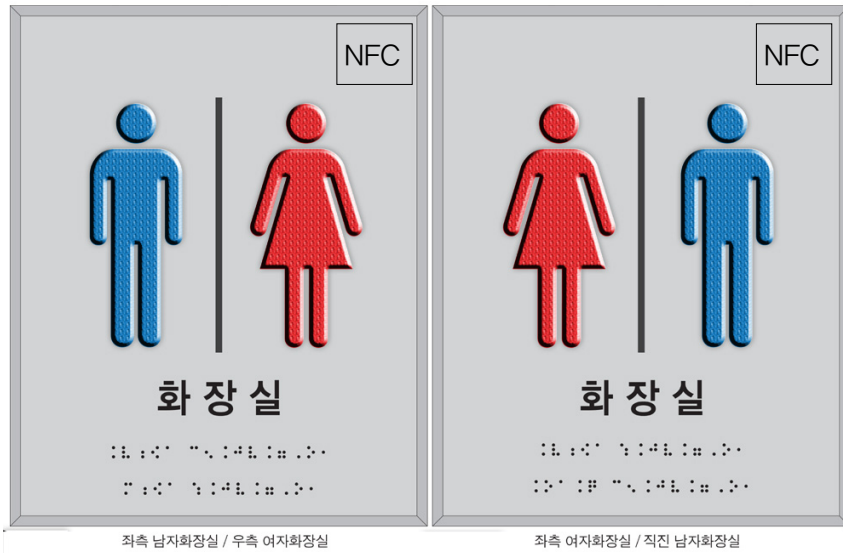
- ③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구(문)의 진입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 소면기,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화장실내 바닥면의 높이차를 제거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한다.
- ⑤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 13호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 ⑥ 스윙도어의 경우 하부구조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접근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2) 편리한 화장실 시설

- ①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고 수도꼭지에는 온·냉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수도꼭지의 형태가 광감지식, 누름버튼식일 경우 동작방법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대변기 출입문의 경우 내부에서 잠금장치 조작이 용이해야 하며, ‘사용중’ 표시등이나 색의 변화로 대변기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변기 이용시 필요한 휴지걸이, 대변기 세정장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데 조작반에 점자가 표기되거나 동작버튼을 양각화하여 사용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④ 화장실 내부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자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바닥재질을 달리하여 소변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 (3) 점자표지판 설치

- ① 화장실 점자표지판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② 픽토그램은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등 색상을 구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구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화장실 정보를 제공 수 있다.
- ③ 상세한 설치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의 수평중심선이 오도록 하며 화장실 출입문이 있다면 문손잡이가 있는 벽면으로 한다. 단, 문이 없는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 ④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 ⑤ 일반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경우 점자표지판 문구는 ‘남자(장애인) 화장실’ 또는 ‘여자(장애인) 화장실’ 로 표현한다.
- ⑥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세면대 이용을 위해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기를 해야 한다. 레버가 없이 센서로 작동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그림 3-38〉 화장실 점자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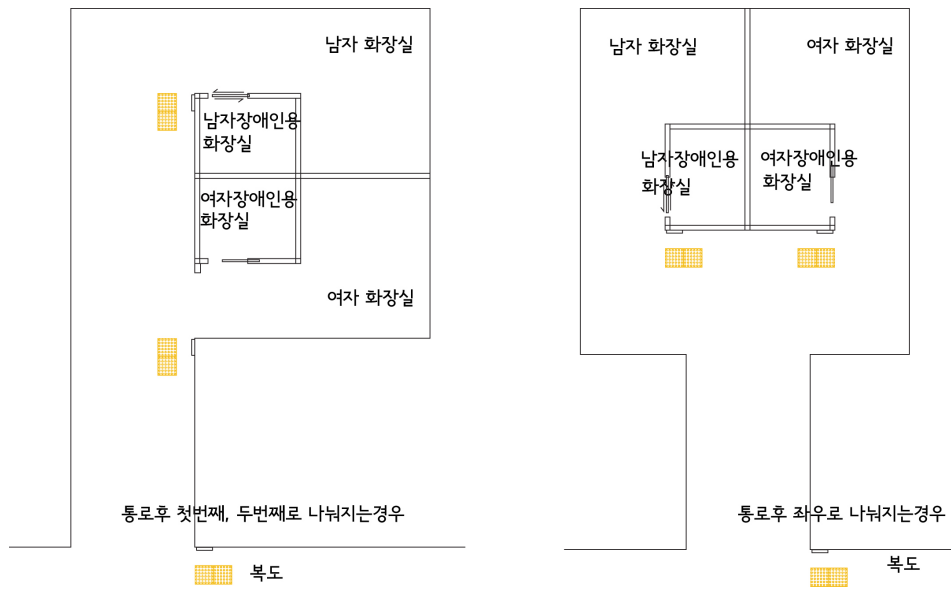
#### (4) 점자블록 설치

- ① 일반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벽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남녀 구별하여 설치하여 점자표지판의 위치 확인 및 진입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② 점형블록은 2장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전면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2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점형블록의 설치위치는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로 한다.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0.3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화장실 주출입구 까지 인근 보도에 설치되어있는 선형블록과 연결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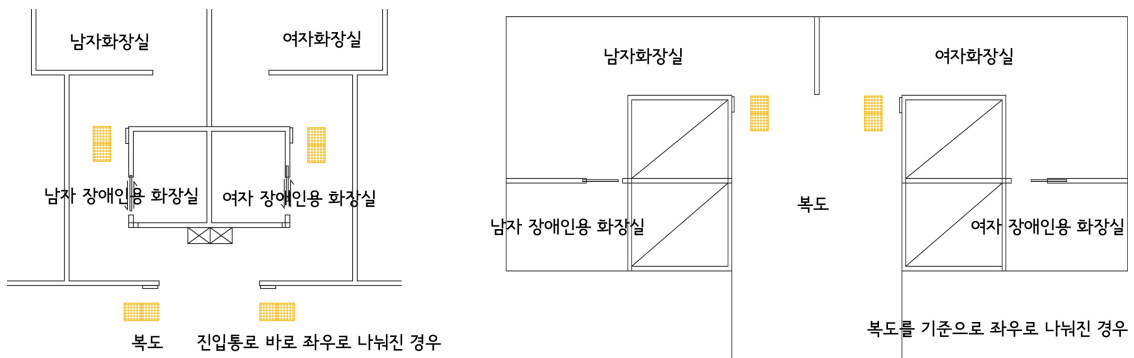
#### (5)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권장)

- ① 접근로를 통해 진행되는 시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송신기)을 동작, 화장실의 주출입구로 진입 유도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외부에 설치한다. 만약 실제로 출입하는 기능으로써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보다 활성화되었다면 부출입구에 설치 가능하다.
- ② 시설관리 상, 상시이용하지 않는 문이나 폐문 등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상시개폐 되는 실제 출입 가능한 문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하며, 점자블록과 연계되어 설치되어야한다.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0~2.5m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화장실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내 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현위치에 대한 정보 화장실 내부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해야한다. (예: ‘화장실입니다. 좌측 남자화장실 우측 여자화장실입니다.’ )
- ⑤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을 원칙으로 하나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⑥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⑦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⑧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⑨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그림 3-39〉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그림 3-40〉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 11. 공원시설



〈그림 3-41〉 공원 시설(점자안내판) 사례

### 1) 설계 원칙

공원시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지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공원시설의 접근성 확보, 휴식공간 설치, 점자안내판,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휴식공간 설치, 편의시설 설치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치 및 유도 안내가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에 연결이 되어있어야 한다.
- ② 적절한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을 설치하여야한다.
- ③ 공원 내 건축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및 제6호에 기준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2) 점자안내판, 점자표지판 및 점자블록 설치

- ① 공원 시설 안내 표지에 점자안내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점자안내판,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공원 보도의 선형블록과 연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공원 내 보도에 선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점자안내판까지 유도하기 위해 보도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 (3)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음성안내장치는 공원 시설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내 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현위치에 대한 정보, 주변시설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해야한다. (예: ‘동물원 주출입구입니다.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
- ②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을 원칙으로 하나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④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⑤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⑥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 12. 매표시설



〈그림 3-42〉 매표 시설 점자블록 사례

### 1) 설계 원칙

매표시설은 공원 입장에 필요한 시설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시설에 대한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매표시설의 접근성 확보,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자동발매기의 점자표기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자동발매기의 점자표기,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설치

- ① 매표시설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위치 및 유도 안내가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 ② 매표소, 자동발매기의 경우 적어도 한 곳 이상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③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를 설치하여 매표소, 자동발매기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줄 수 있다.

#### (2) 자동발매기의 점자표기

- ①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점자가 표기되어 있어야한다.
- ②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기는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한다.

## (2) 점자블록 설치

- ①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매표소나 자동발매기중 적어도 한 곳은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접근로에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선형블록과 연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 ②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 하여야한다.

## (3)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음성안내장치는 매표소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며, 안내 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현위치에 대한 정보와 주변시설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해야한다. (예: '동물원 매표소입니다. 주변에 자동발매기가 있습니다.' )
- ②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을 원칙으로 하나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④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⑤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⑥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 공동주택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출입구
4. 실내출입문
5. 복도 및 통로
6. 계단
7. 승강기(엘리베이터)
8. 에스컬레이터
9. 경사로
10. 화장실
11. 객실 및 침실
12. 경비실
13.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제4장 공동주택

###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그림 4-1〉 접근로 사례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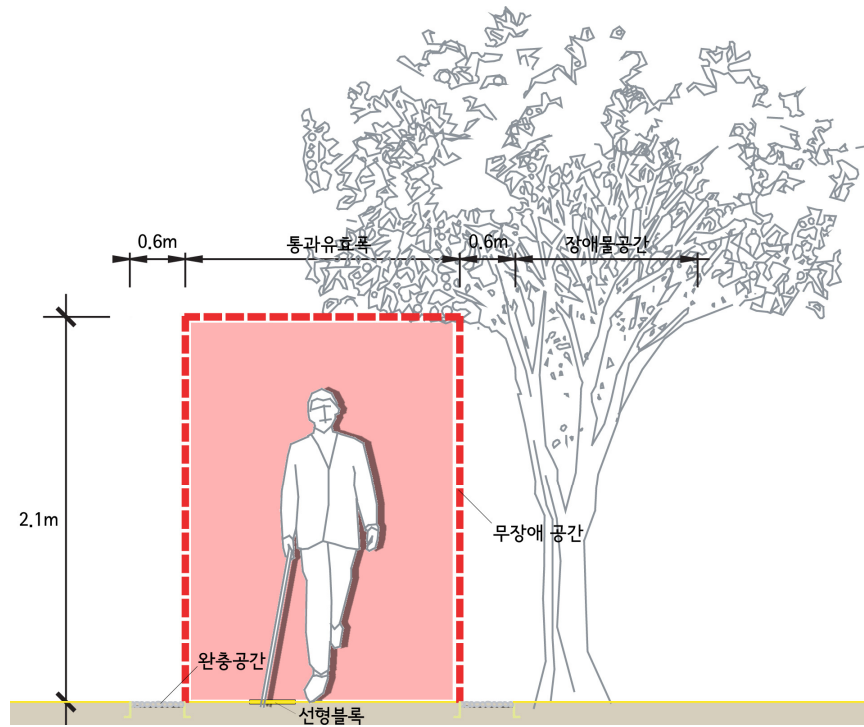
건축물 대지면적 인근 보도 및 부설주차장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접근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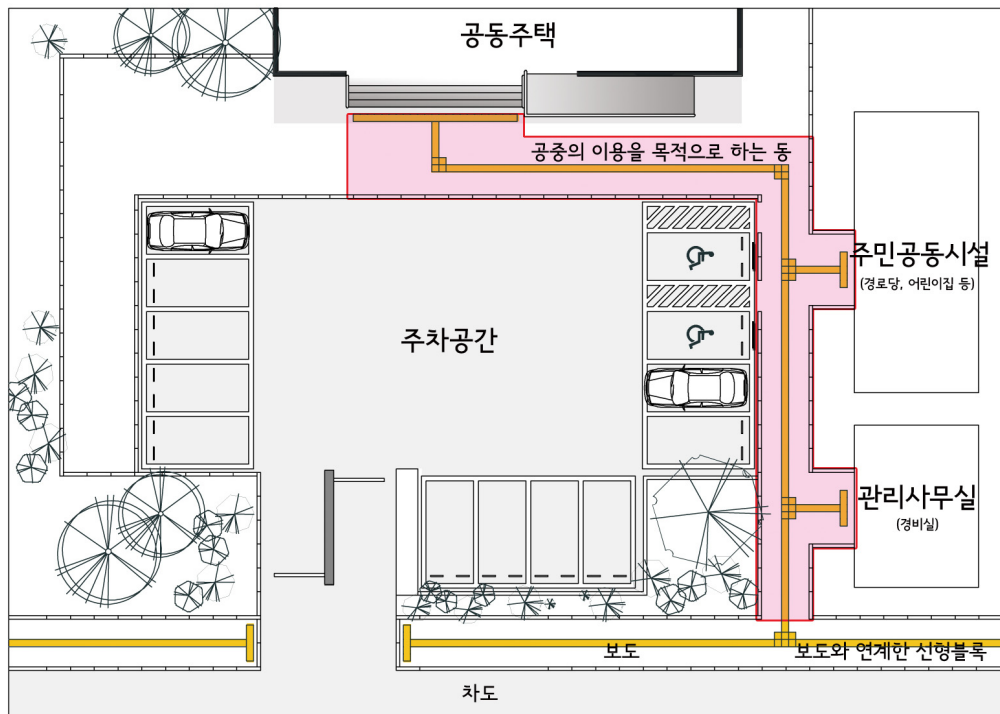
접근로는 충분한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완만한 기울기, 차도와의 경계,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과 평탄한 바닥 마감, 보행장애물 제거,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재질 및 바닥마감, 유효폭, 유효높이, 기울기, 점자블록설치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 ② 통과 유효폭은 가로수, 가로등, 간판 등 보행장애물을 제외한 1.2m 이상으로 하며 교차부 근은 1.5m 이상으로 한다. 또한, 통과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한다.
- ③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해야 하며, 지형상 곤란한 경우 최소 1/120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④ 바닥에 2cm 초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⑤ 대지면적 내·외부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은 내부시설의 각 항목별 세부지침을 모두 준수하도록 한다.
- ⑥ 주변 보도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부터 접근로에 이르기까지 선형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2〉 접근로 보행안전구역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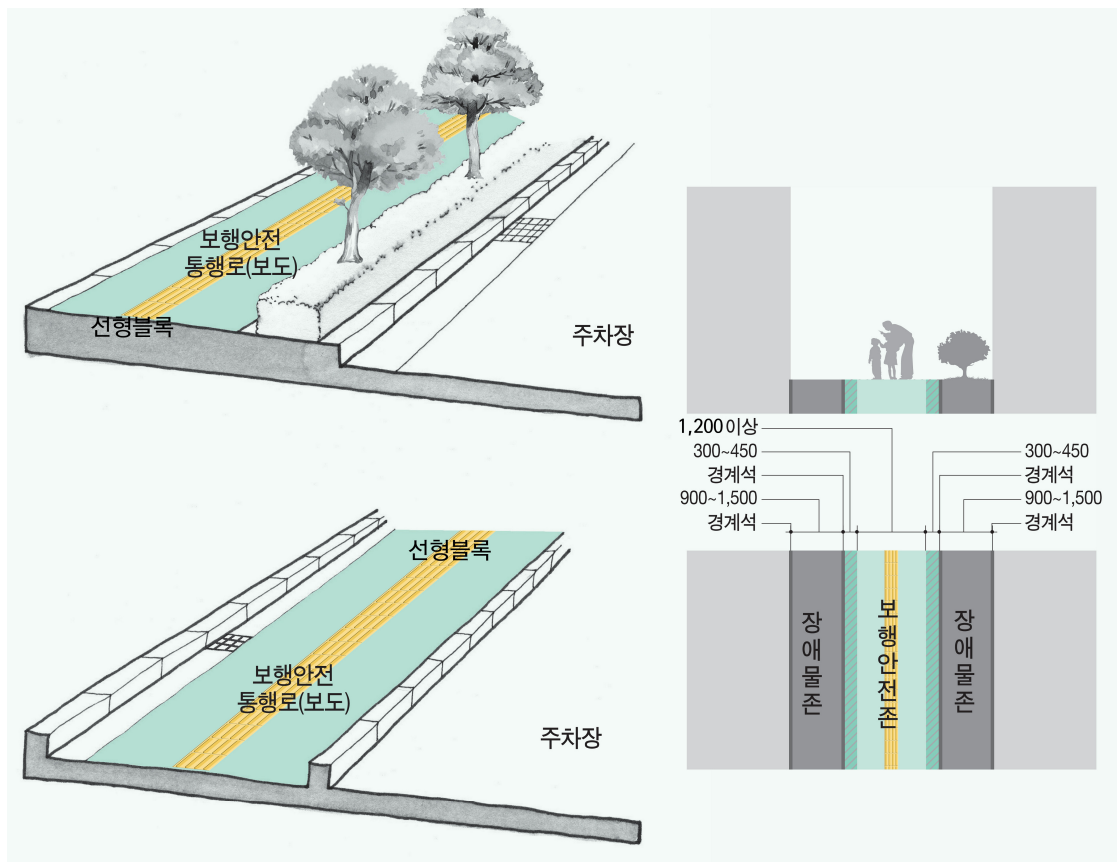
〈그림 4-3〉 주출입구까지 유도설치

## (2) 선형블록 설치

- ① 외부 보도에서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 상시안내가 가능한곳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 ②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건물에 접근하기 위해 접근로에 선형블록을 연속 설치해야한다.
- ③ 선형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60c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폭이 1.5m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 ④ 단, 접근로에 사감(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통해 점자블록 기능 이상의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되었을 경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및 단체의 검토 하에 선형블록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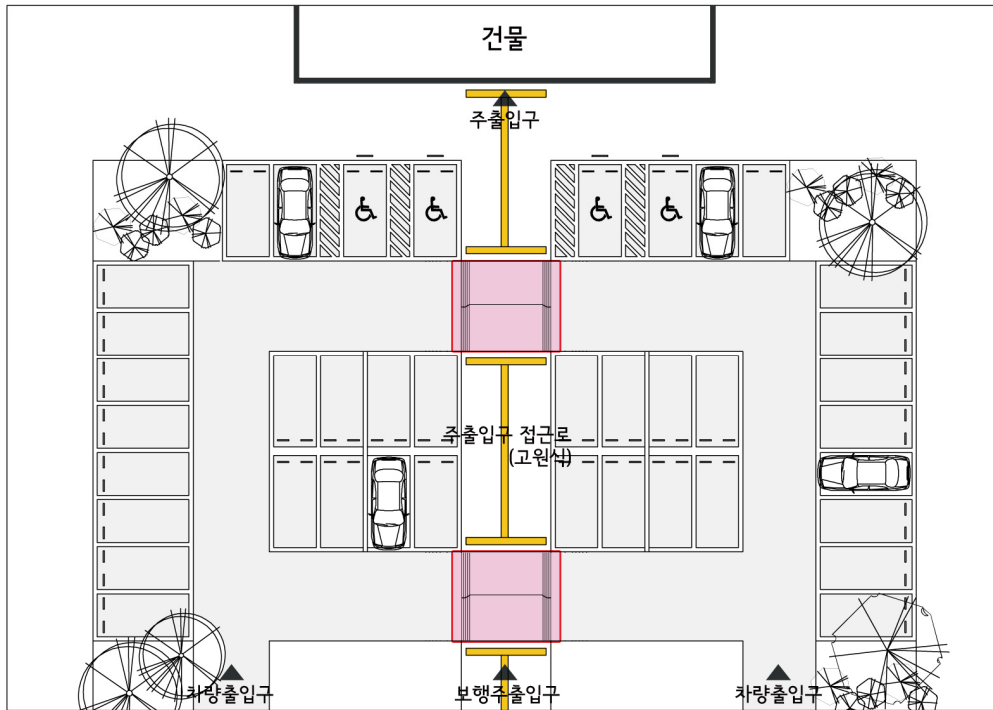


〈그림 4-4〉 보행안전통로

### (3) 차도와 보도 분리, 보행장애물 제거

- ① 접근로와 차도는 가능한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해야한다.
- ② 차도와 접근로의 경계부분에는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해야한다. 연석의 높이는 6~15cm 로 할 수 있으며, 울타리 및 기타 공작물은 고정형으로 해야한다. 다만 연석이나 기타 공작물 설치가 현장 조건상 불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및 색상을 달리 하거나 보행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높이 차이를 두어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야한다.
- ③ 차도와 교차되는 부분은 고원식 횡단보도로 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동 횡단보도에는 횡단 폭 전면 0.3m위치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④ 가로등, 전주, 간판, 벤치, 휴지통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보행장애물은 접근로 보행 구간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수직높이 2.1m까지 가지치기를 해야한다.

- ⑤ 휠체어바퀴나 흰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 구멍,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1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림 4-5>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평면도



<그림 4-6> 교행부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단면도

#### (4) 외부 계단(대지면적 내 설치되는 모든 계단)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한다.
- ②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으로 하고 돌음, 나선형은 금한다. 디딤판의 넓이와 첩면의 높이는 균일해야한다. 조명을 설치하여 계단 디딤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계단 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색상, 재질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 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계단의 양측면에는 연속하여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손잡이 직경은 3.2~3.8cm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 계단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계단의 시·종점 및 참부분은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시·종점 양쪽 수평손잡이에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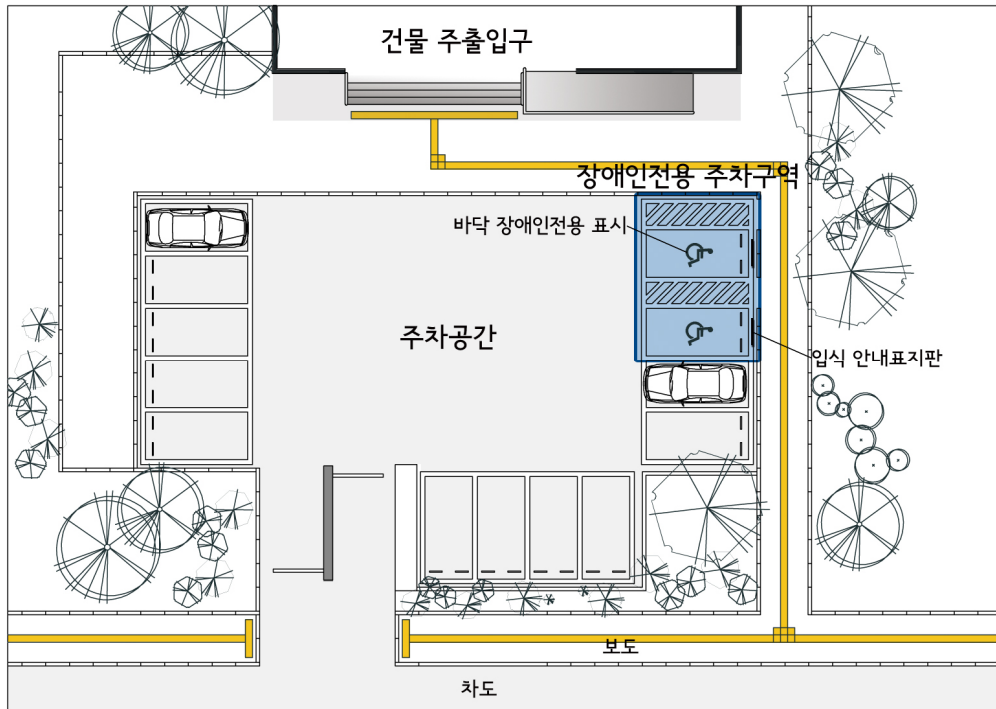
(6) 점자안내판(촉지식 안내판, 촉지안내도) 설치



〈그림 4-8〉 점자안내판 예시

- ①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공원 내 가고자하는 목적지 및 전반적인 공원의 구성 파악을 목적으로 단지의 주진입로 또는 경비실 인근에 설치한다.
- ②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 3장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을 연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⑤ 점자안내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단지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⑥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그림 4-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예시

### 1) 설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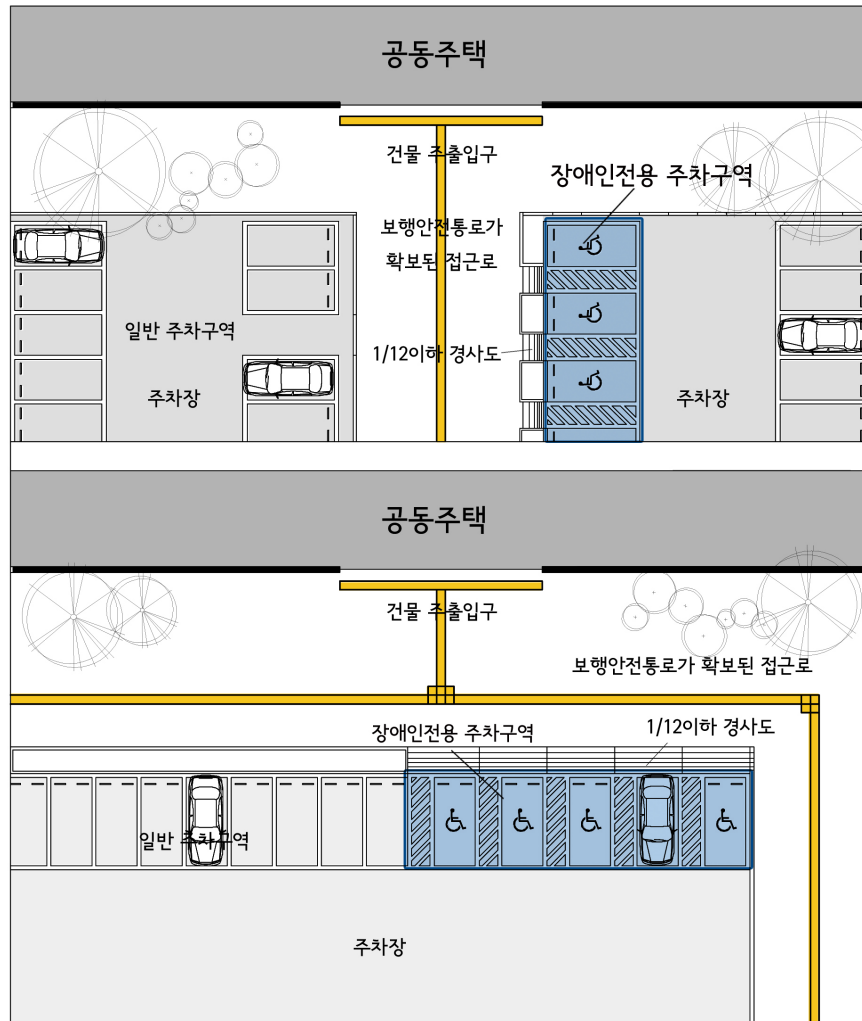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설치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명시할 수 있는 표지 및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고려한 설치 위치, 합당한 주차구역의 규격, 주목성 있는 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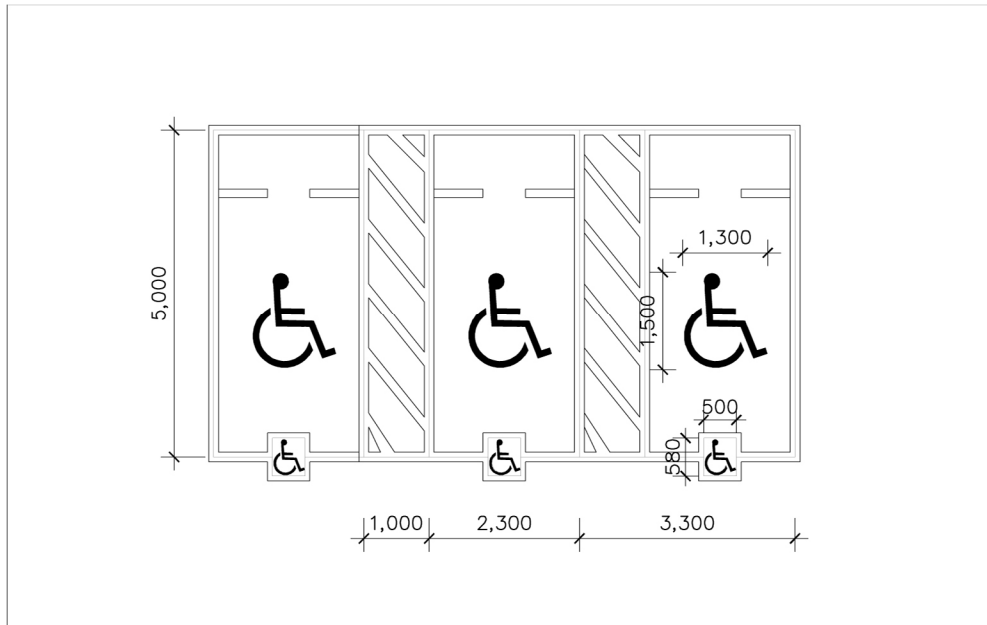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비고 10항, 시행규칙 제4조, 5조 참조
- ②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하며 높이 차이를 제거해야한다. 또한, 바닥면 기울기는 1/50이하로 할 수 있다.
- ③ 장애인 등이 승차 전과 후에 차로를 거치지 않고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한다. 이때 동선은 보행안전통로로 보행상 장애물이 제거되어야한다.



〈그림 4-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위치

## (2) 주차구역 크기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직각주차의 경우 가로(폭) 3.3m 이상, 세로(길이) 5m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② 평행주차의 경우 가로(폭) 2.0m 이상, 세로(길이) 6m 이상으로 해야하며 보행통로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 ③ 치수는 선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1.3m, 세로 1.5m 규격으로 하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8cm의 규격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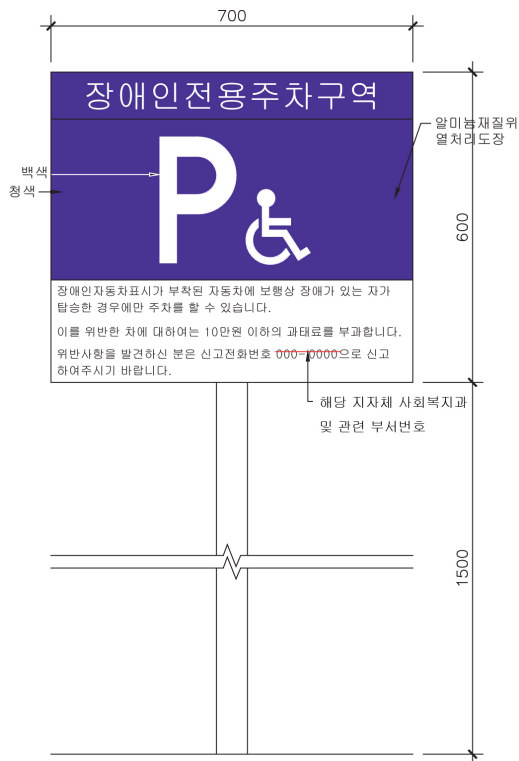
〈그림 4-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 (3) 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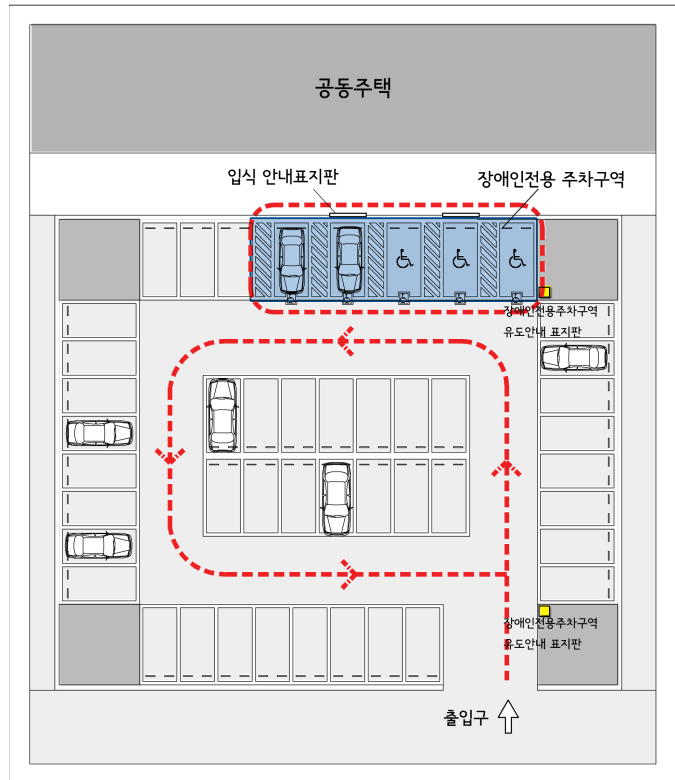
- ① 주차 구역 바닥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를 해야한다.
- ② 바닥 전용주차장 표시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서식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르는 장애인 안내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각 주차구역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이상으로 하여 멀리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설치 높이는 표지판 하부가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 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주차장 입구 부근 및 차량 진입 부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를 유도, 안내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해야한다.



〈그림 4-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



〈그림 4-1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위치



### 3. 주출입구(문)(지하주차장 연결 포함)



〈그림 4-14〉 주출입구 사례

#### 1) 설계 원칙

주출입구(문)는 실내와 실외를 구분 짓는 곳으로, 누구나 건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주출입구(문)는 높이차이의 제거 또는 단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사로의 설치, 쾌적한 활동 공간 및 유효폭 확보,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주출입구 부근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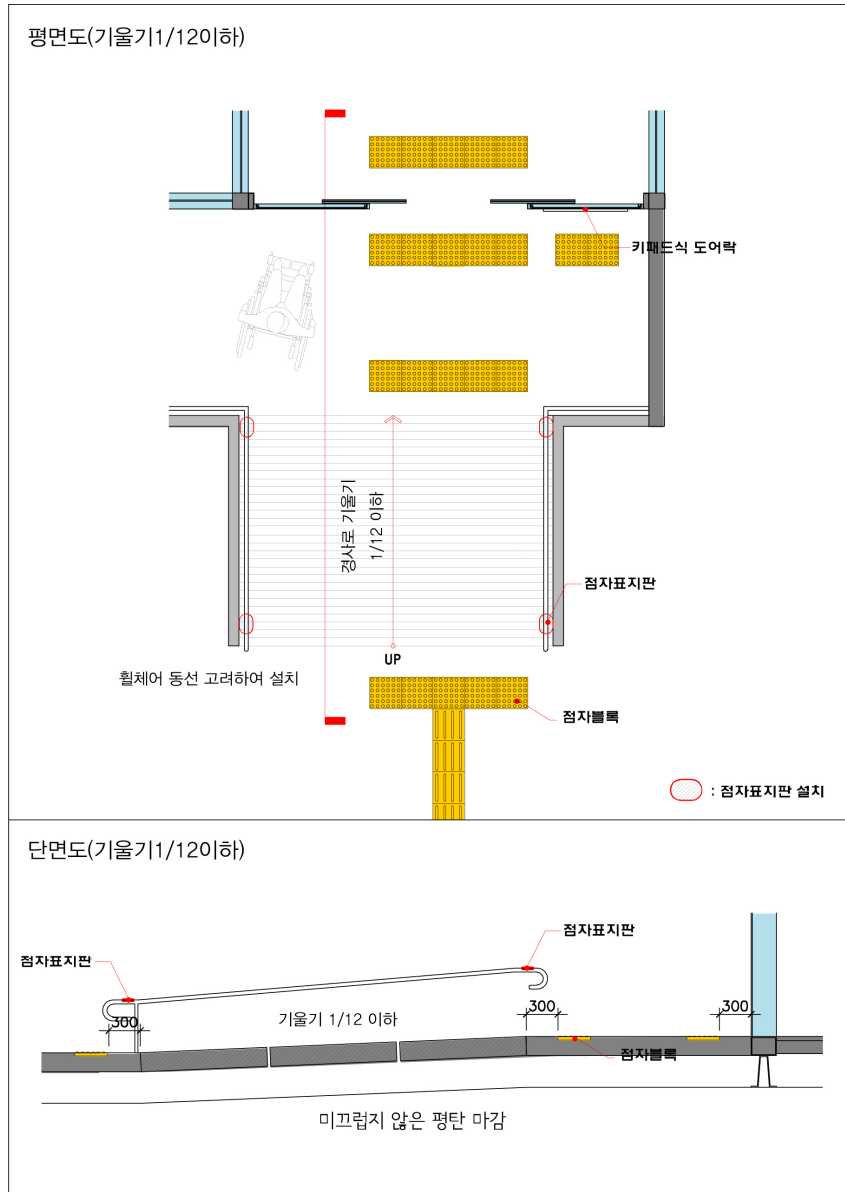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단차 제거, 쾌적한 활동 공간 및 유효폭, 문의 개폐 방법,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 ①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높이 차이는 없어야 한다.
- ② 건물 구조는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단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③ 출입구 전후의 활동 공간은 시설 이용자들의 원활한 출입 공간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④ 주출입구에는 2cm 초과 바닥 높이 차이나 턱, 문지방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유리문의 경우 사인물(색띠 등)을 부착하여 시인성을 높이도록 한다.
- ⑥ 주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문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바닥감지방식, 공간감지방식, 선감지방식 등)

- ⑦ 주거동 주출입문과 키패드식 현관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출입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⑧ 주출입문 및 지하주차장 출입문 키패드식 현관기는 터치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하고 동작음이 지원되어야한다. 또한, 카드키 사용 등 대체방식이 겸용되어야한다.
- ⑨ 해당 대지면적 내에 있는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음성안내장치 등 안내 및 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 (2) 경사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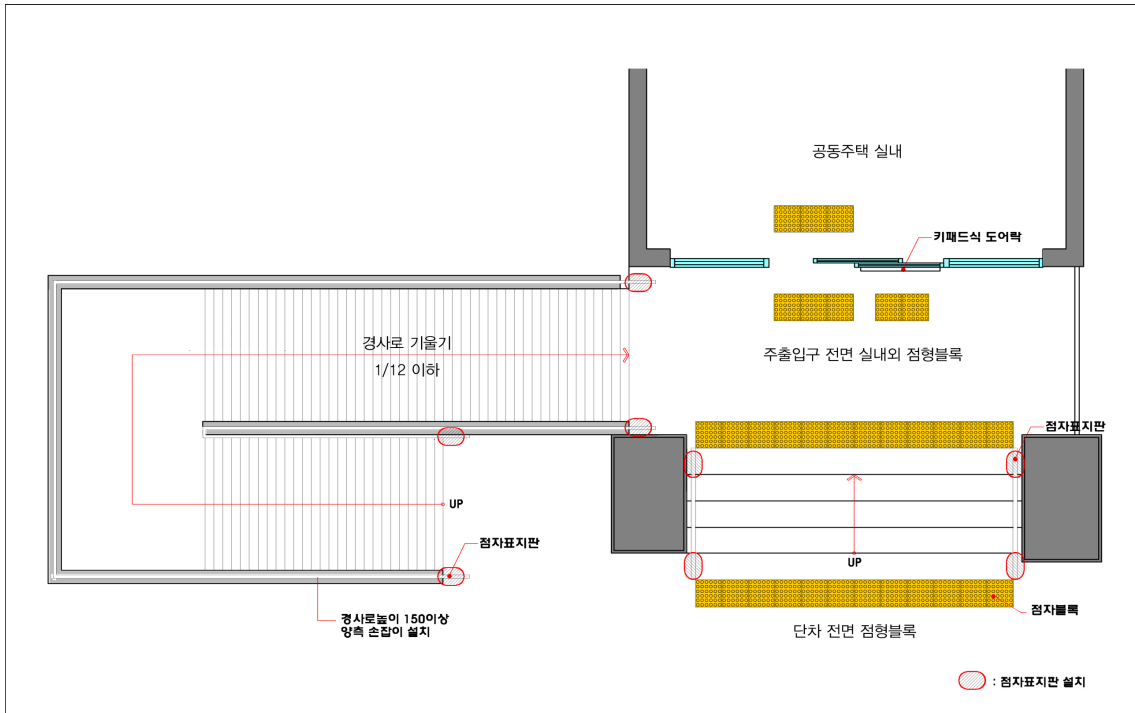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굴절 및 시작과 끝 부분은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단,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등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등 한계사항이 있을 시 유효폭은 0.9m까지 완화 가능하다.)
- ②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수직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때 손잡이의 직경은 3.2~3.8cm, 손잡이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0.9m로 하며 경사로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점자문구 예: 하부 '→ 101동 주출입구 방면 경사로', 상부 '← 좌측 102동, 우측 103동 방면' 등)
- ⑤ 경사로만 설치되어 있고 기울기가 1/18 이하의 경우 선형블록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단, 기울기가 1/18초과 ~ 1/12이하인 경우 전면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경사로는 선형블록을 생략한다.
- ⑥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 설치한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점형블록은 단차전면에 설치한다.)
- ⑦ 추가적으로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가 가능하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기준은 제2장 9호 경사도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그림 4-15〉 주출입구 경사로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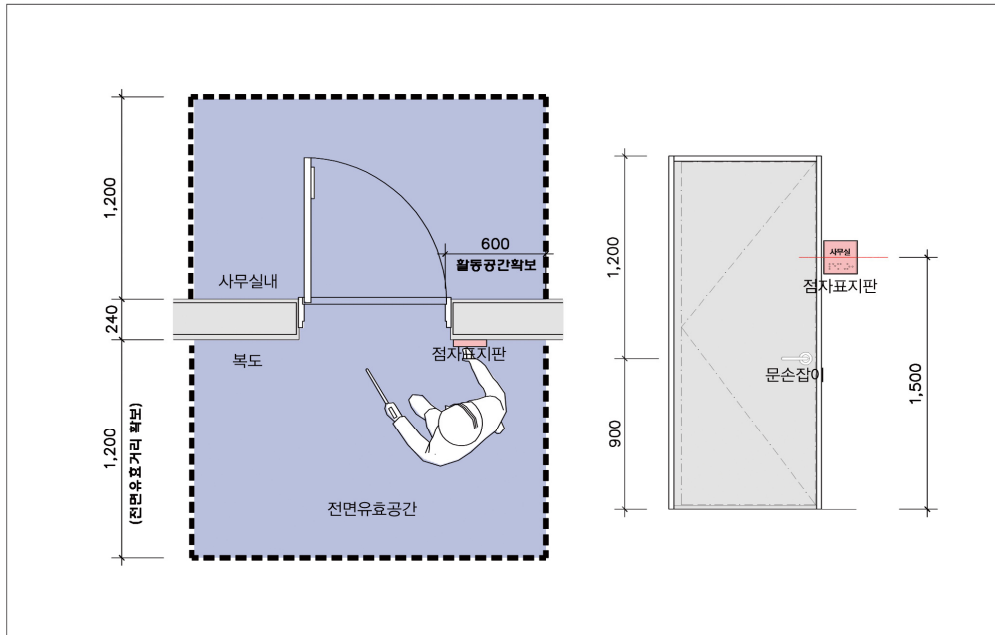
### (3) 점자블록 설치

- ① 주출입구 부근 점형블록의 설치는 주출입문 전면, 단차 상하부, 키패드식 현관기 전면 0.3m에 설치한다. 접근로에 유도 설치된 선형블록과 연계하여 주출입구까지 연속 설치되어야 하나 주출입구 공간이 협소하여 점자블록 기본 설계법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간소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출입문을 기준으로 실내와 실외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문 폭만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시설의 주출입문 및 실내·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방풍실이 있을 경우 깊이가 3m미만의 경우, 점형블록의 설치는 생략가능하나 3m 이상인 경우 방풍실내에도 점형블록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한다.
- ③ 주출입구 부근에 단차가 있을 경우 단차의 시작과 끝부분 전면 0.3m에 단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다만 단차의 폭이 10m 이상 실제 보행동선과 상관없이 넓은 경우에는 출입문 폭의 1.5배 이상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4-16〉 주출입구 점자블록 평면도

## 4. 실내 출입구(문)



〈그림 4-17〉 실내 출입문 예시

### 1) 설계 원칙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실내 출입구(문)은 모든 사람들이 각 실에 출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하며, 호실에 대한 정보와 출입문의 위치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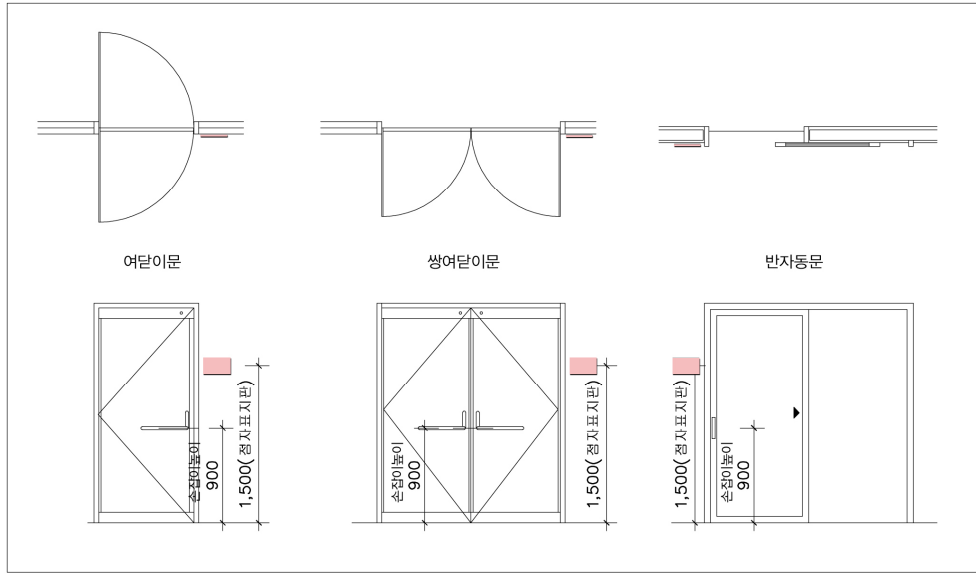
### 2) 지침 요약

실내 출입구(문)은 출입에 쾌적한 유효폭 및 구조, 문의 형태 및 손잡이, 문턱제거, 용이한 문의 개폐,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호실판 및 점자표지판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유효폭 및 구조, 문의 형태 및 손잡이, 용이한 문의 개폐, 문턱제거, 유리문의 경우 인지 가능한 사인물(색띠 등) 부착

- ① 각 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출입문이 복도 및 통로로 돌출,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문의 개폐방식은 회전문을 제외한 여닫이, 미닫이, 자동문 등의 방식으로 해야하며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민원실 등의 출입문은 투시창을 설치하거나 강화유리문로 하여 문의 개폐나 출입시 왕래하는 사람들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문 손잡이 형태는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 레버형(lever type)으로 하고, 설치하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높이가 되도록 하여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문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유리문의 경우 사인물(색띠 등)을 부착하여 인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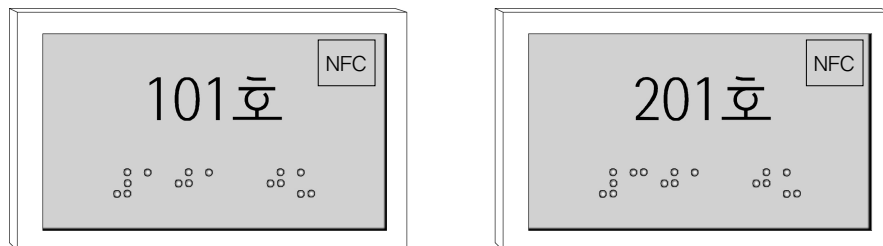
- ⑥ 키패드식 현관기는 터치패드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하고 동작음이 지원되어야한다. 터치식인 경우 카드키 사용 등 대체방식이 겸용되어야한다.



〈그림 4-18〉 실내출입문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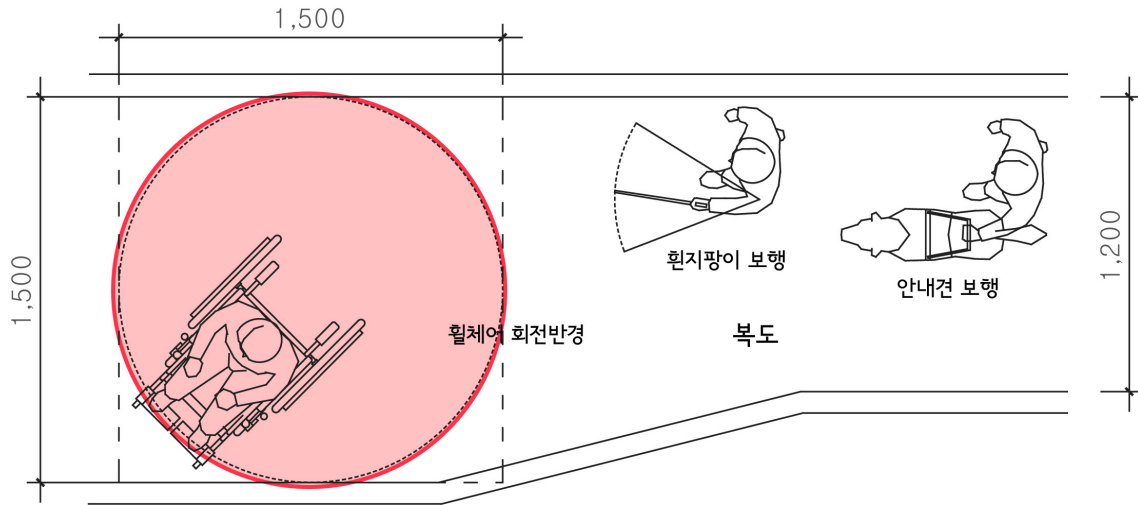
**(2) 명패 및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실, 계단실, 화장실 등의 문 손잡이쪽 벽면에 명패와 같은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실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 ②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문 손잡이쪽 벽면,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 높이가 1.5m가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다만 노유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자의 실제 키를 고려하여 1.2~1.5m 내외로 설치높이를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적용의 완화를 따르도록 함.)
- ③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이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호실 등의 명패는 눈에 잘 띄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을 사용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한다.
- ⑥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호실, 계단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문)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2. 점자표지판을 참고한다.



〈그림 4-19〉 벽면형 점자표지판 예시

## 5. 복도 및 통로



〈그림 4-20〉 복도 및 통로 예시

### 1) 설계 원칙

복도 및 통로는 실(방), 승강기, 계단 등 내부시설을 연결하는 실내 공간이므로 보행시에 장애물이 없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복도 및 통로는 통행에 쾌적한 바닥마감, 유효폭, 높이차이 및 장애물 제거,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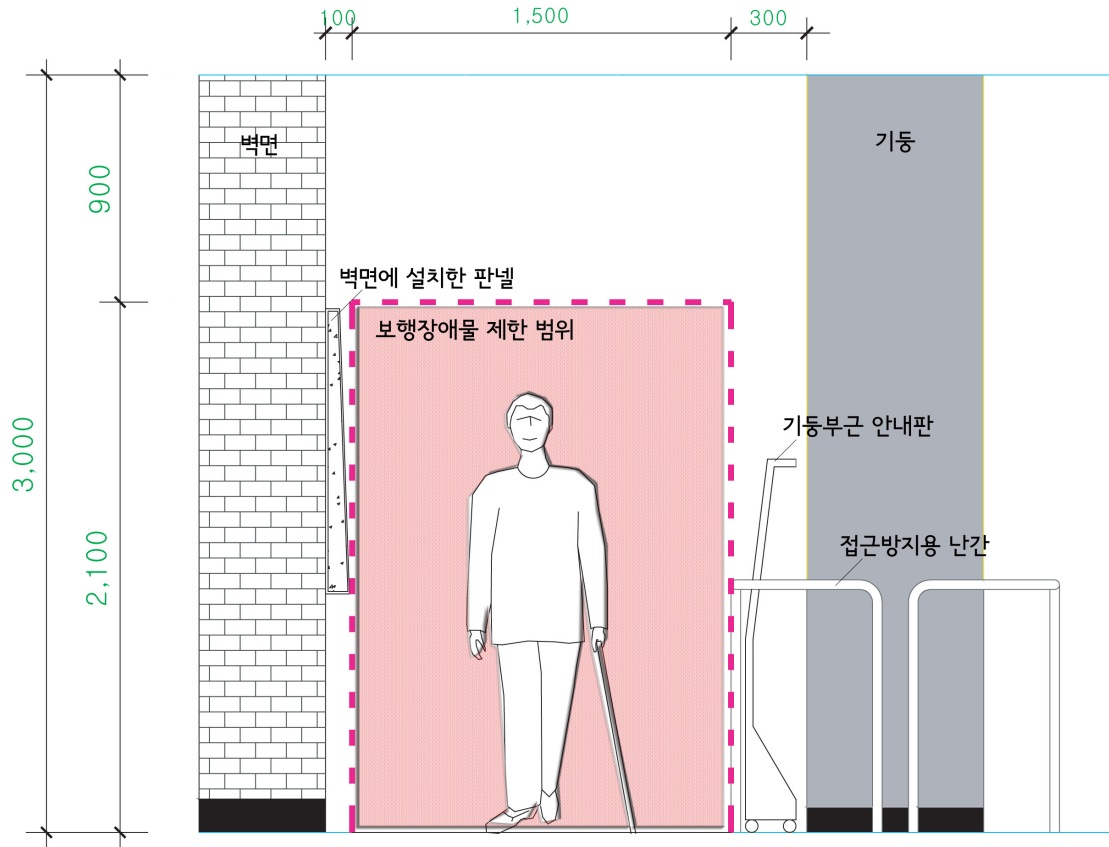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바닥마감, 유효폭 및 구조, 높이차이 제거 등

- ①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으로 해야 한다.
- ② 복도의 유효폭은 최소 1.2m 이상으로 하여 사람들이 원활히 교행할 수 있도록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 × 1.5m의 회전반경을 확보해야 한다.
- ③ 실내 복도에는 턱이나 바닥면 단차를 제거해야 한다. 인근 건물과의 연결로 인해 부득이 단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세부기준은 제4장 9호 경사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 ④ 장애인전용시설인 경우 복도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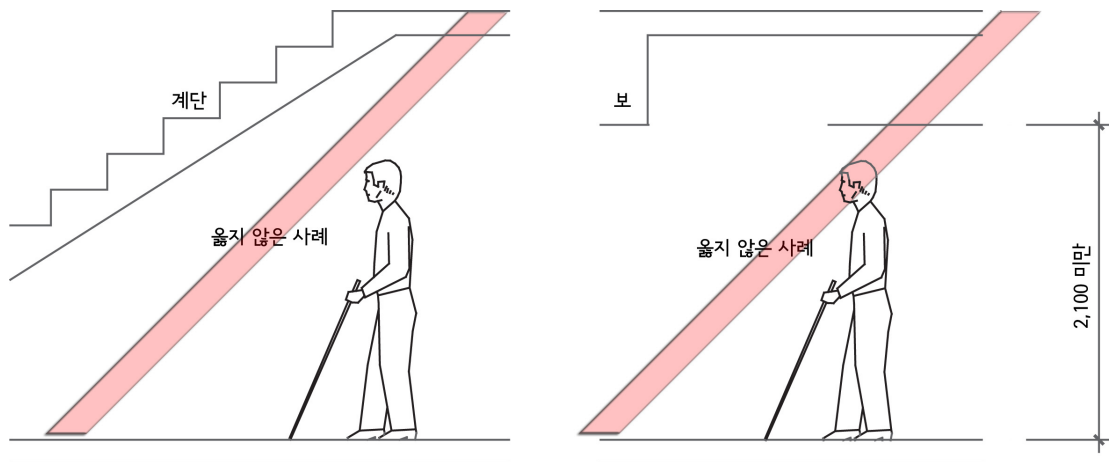
#### (2) 장애물 제거

- ① 복도 및 통로의 장식품, 화분, 배너 등은 시각장애인 보행 상 장애가 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 ② 복도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내외의 벽면 돌출물의 돌출폭은 10cm 이하로 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 이하로 해야 한다.
- ③ 복도 및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고 유효높이 내·외에는 장애물이 있는 구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④ 복도의 모서리는 모깍기를 하거나 둥글게 마감, 또는 부수적으로 충격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⑤ 의자,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휴게시설은 복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해야한다.



〈그림 4-21〉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1



〈그림 4-22〉 복도 및 통로 보행안전구역 확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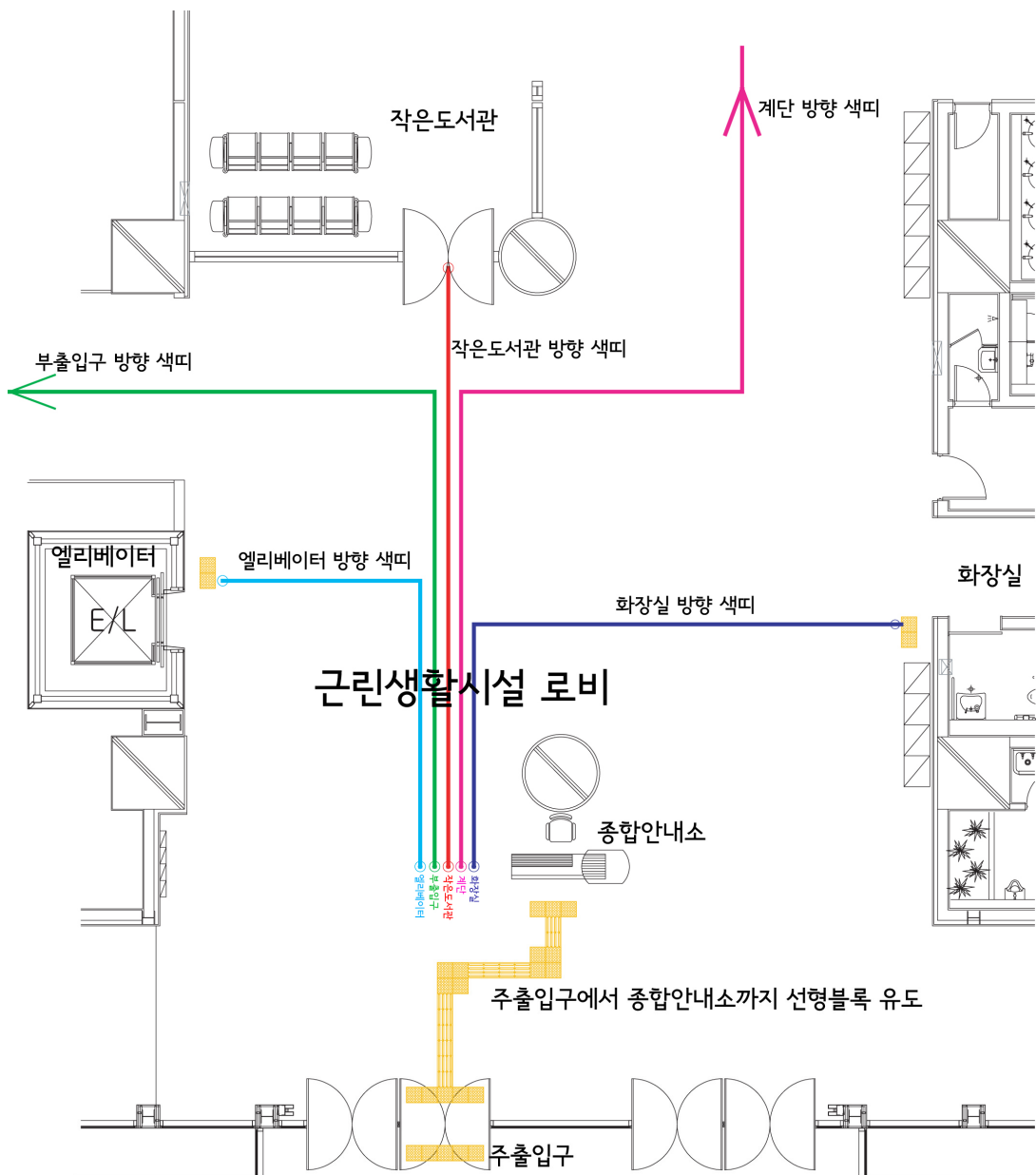
### (3) 시각장애인 유도

- ① 로비층 주출입구에서 안내데스크까지는 시각장애인에게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접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 승강기 등 주요 내부시설로 이르는 주동선은 바닥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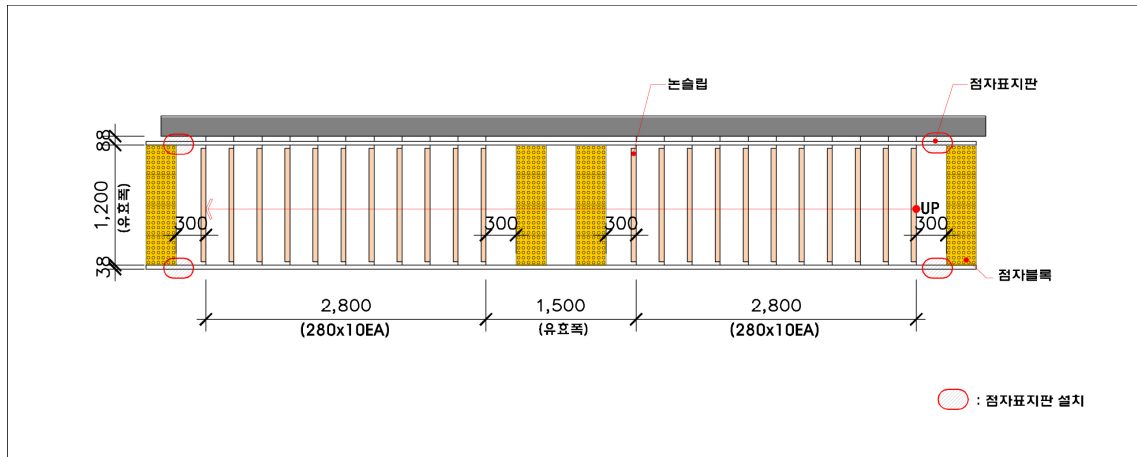
료의 질감과 색상 등의 차이로 유도할 수 있다.

- ② 해당 시설 내부가 홀형(hall access type)으로 넓어 시각장애인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염려가 있는 경우, 건물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보행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선형블록의 설치 또는 바닥마감재료의 질감과 색상을 달리하여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로 유도할 수 있다.
- ③ 계단, 승강기 등 내부시설 인근 복도 벽면에는 층별정보, 건물배치정보 게시판 등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시각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를 병기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크게 하고 색상도 기본벽면 색과 확연히 다르게 하여 쉽게 눈에 띄어 줄 수 있도록 한다.
- ④ 복도 분기점 벽면에 실내 공간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안내 문구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으로 크게 표기하도록 한다.



〈그림 4-23〉 시각장애인 유도 예시

## 6. 계단



〈그림 4-24〉 계단 예시

### 1) 설계 원칙

계단은 일반적으로 층과 층을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시설로 수직 이동시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어야 하며 층별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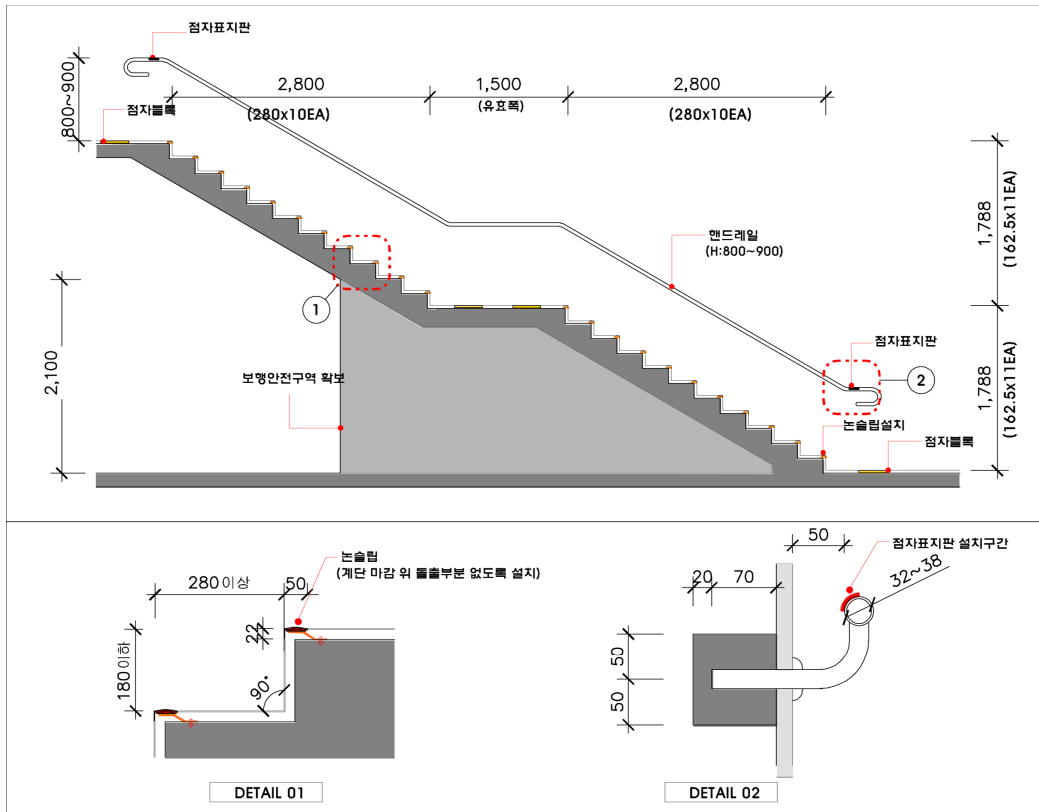
계단은 균일한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탈면 설치, 안정성 확보, 손잡이의 설치, 계단 단차 확인,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균일하고 합리적인 형태,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마감, 디딤판과 철탈면의 설치 안정성 확보 등

- ① 계단의 형태는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해야한다. 사선, 원형 형태의 계단은 시각장애인이 실족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설치를 금하도록 한다.
- ②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참을 설치해야한다.
- ③ 바닥 재질은 미끄러지지 않고 평탄하게 마감해야하며, 최소 1.2m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옥외 계단의 경우 0.9m 이상으로 가능하다.)
- ④ 철탈면은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탈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고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탈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해야한다.(가급적 해당 시설에 있는 모든 계단을 균일하게 한다.)
- ⑤ 계단코는 3cm 이하로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해야한다.
- ⑥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난간하부에 계단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계단참 부분에는 사선, 원형 계단의 설치를 금한다.
- ⑧ 계단 하부에는 보호난간,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한다. 단, 『소방법』에 의거 방화도어나 셔터, 소화전의 설치 위치에는 부분적으로 끊어 설치 할 수 있다.
- ② 손잡이의 형태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하고 직경은 3.2~3.8cm으로 한다.
- ③ 손잡이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2단 손잡이의 경우, 높이는 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로 설치한다.)
- ④ 점자표지판은 계단의 시·종점 수평손잡이에 설치하도록 한다. 만약 현장 구조상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가까운 손잡이 부근에 설치하도록 한다. 계단참부근과 굴절지점에는 설치 생략가능하다.
- ⑤ 점자표지판의 문구는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목적지층의 층수, 실정보 등을 표기한다.(예 : '→ 2층 201호~208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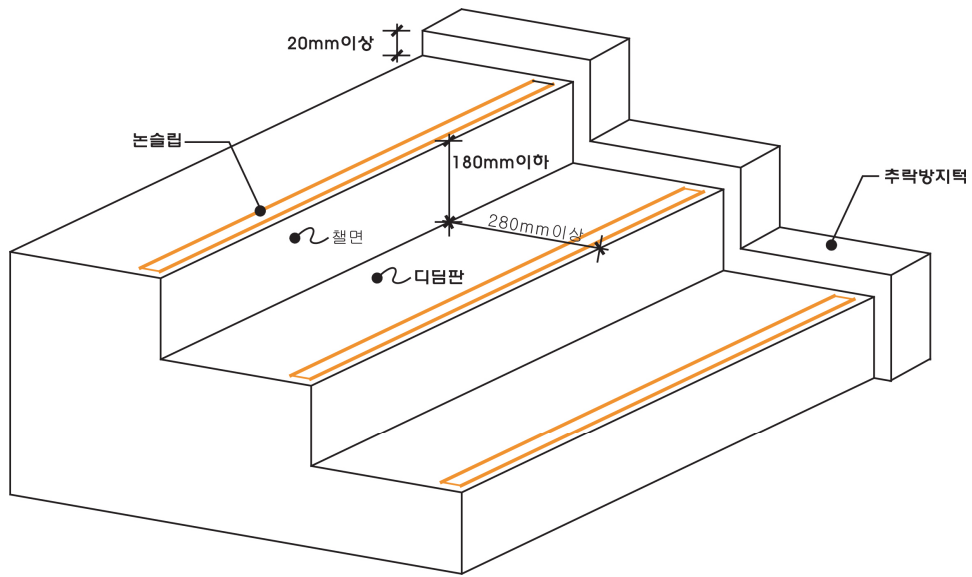
〈그림 4-25〉 계단 점자표지판, 손잡이 상세도



〈그림 4-26〉 계단 손잡이형 점자표지판 예시

### (3) 계단의 단차 확인

- ① 계단의 단차 확인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계단 보행시에 안전과 직접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단차의 구별이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 ② 디딤판은 식별이 용이해야 하고 철편과 구별이 뚜렷해야한다. 특히 계단코부근에 디딤판과 구별되는 재질, 색상의 논슬립(nonslip)을 설치하여 미끄럼방지 및 계단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단 및 참의 시작과 끝의 디딤판은 다른 계단 디딤판과 색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계단실 및 계단의 조명으로 인한 음영이 철편과 디딤판의 구별을 용이하도록 하며 150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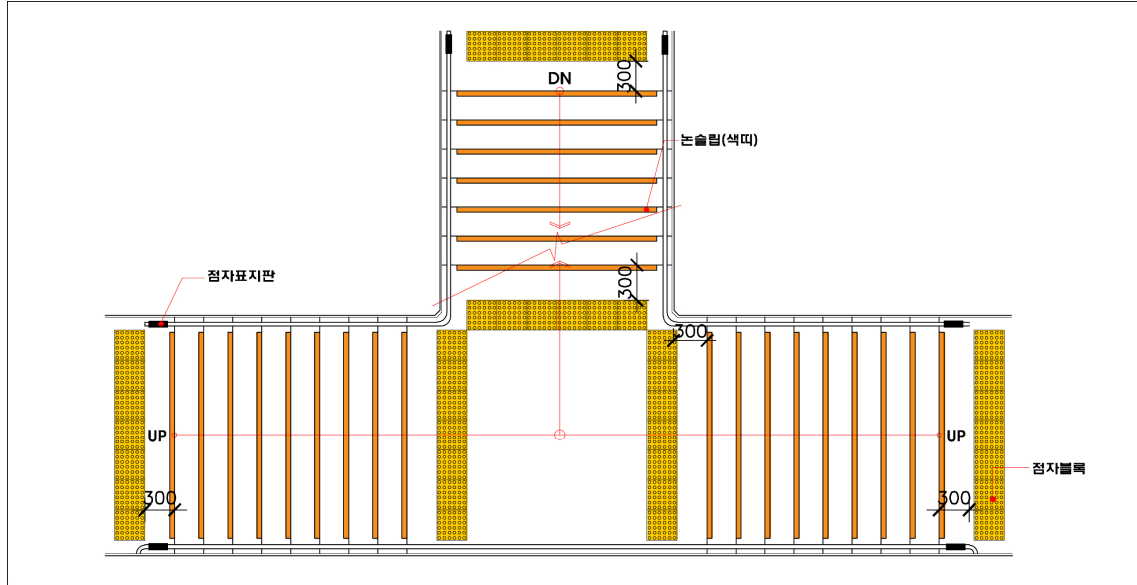
〈그림 4-27〉 계단의 식별



〈그림 4-28〉 계단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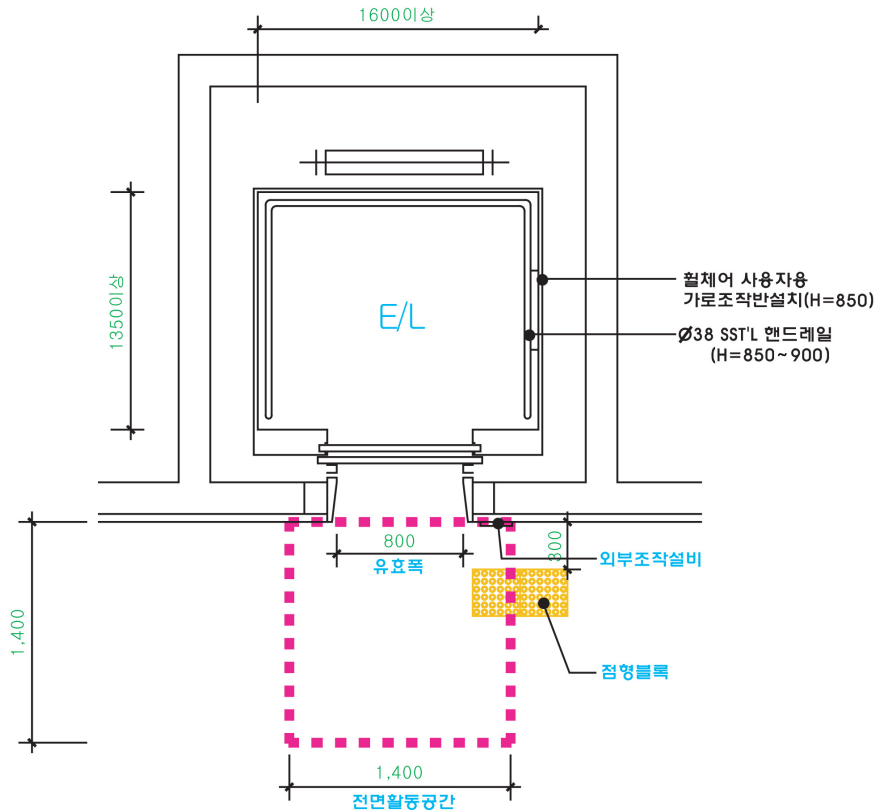
### (4) 점형블록 설치

- ① 계단의 시작과 끝, 계단참 끝부분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② 계단 전면에 차수판이 있는 등 현장 조건상 0.3m 전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인접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단, 이격 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 ③ 계단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지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으로 설치해야한다.



〈그림 4-29〉 계단 점형블록 설치예시

## 7. 승강기(엘리베이터)



〈그림 4-30〉 승강기 예시

### 1) 설계 원칙

승강기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수직이동 수단으로 휠체어사용자, 노약자, 유모차 등 계단을 통한 층별 이동이 불가하거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승강기는 접근의 용이성,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정성,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의 설치,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기타 안내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 쾌적한 유효폭 및 바닥면적, 승강기의 안정성 확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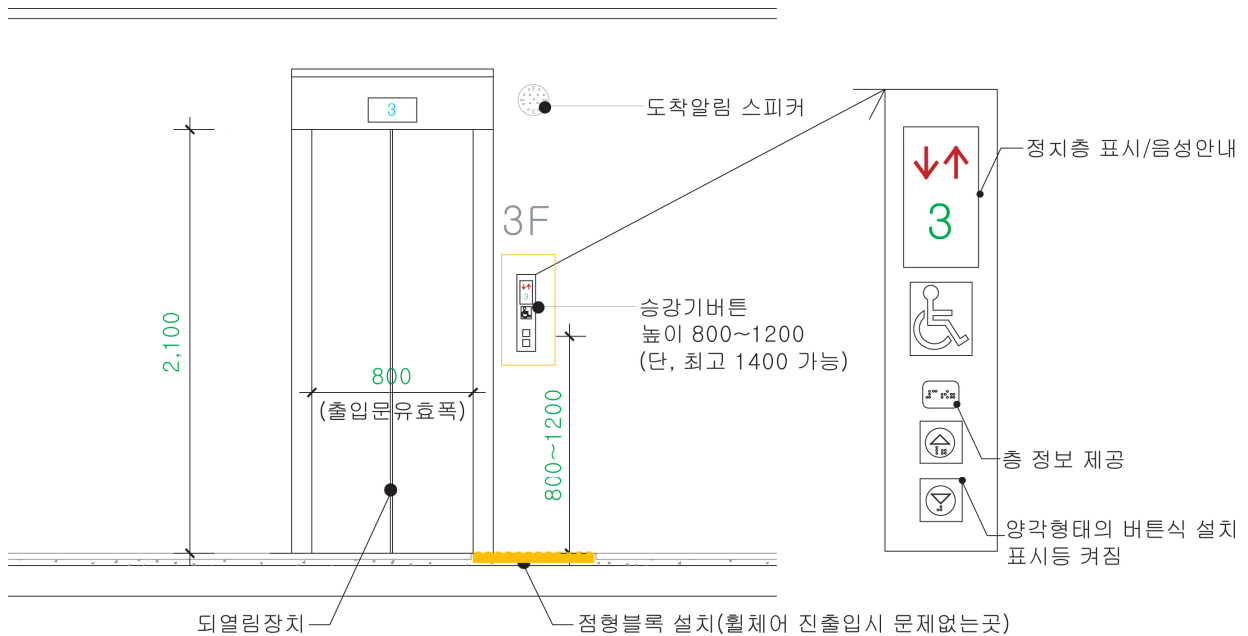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 및 로비에서 누구나 쉽게 인지되거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해야한다.
- ②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최소 폭 1.6m, 깊이 1.35m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의 회전이 불가한 경우 측면 조작반, 후면거울을 설치하는 등 대안적으로 승강기를 조작가능하게 해야한다.
- ③ 승강기 외부인 승강장은 누구나 승강기를 승하차할 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바닥면적 및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 ④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에 끼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 열림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턱의

틈은 3cm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 ⑤ 승강기 내부에는 출입문을 제외한 측면에 직경 3.2cm~3.8cm의 손잡이를 설치해야한다. 이때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로 하고 측면과는 5cm의 간격이 유지 되게 하며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

**(2) 점형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건물의 각층 승강장 부근에는 승강기 조작반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2장 설치한다.
- ②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는 모든 버튼과 비상호출버튼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 이는 일반조작반 뿐만 아니라 휠체어사용자용 가로 조작반도 해당한다.
- ③ 특히 승강장 조작반 부근에 현재 층 정보는 물론 해당건물의 층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층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버튼의 점자 문구는 KS 규격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에 준하도록 한다. 단, 인천공항 등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표기 가능하다.
- ⑤ 비장애이용 승강기의 운행층이 홀수층, 짝수층 또는 고층 및 저층운행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호출버튼 인근에 운행층 정보를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⑥ 장애인용 승강기 뿐만 아니라 일반 승강기 버튼 앞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저시력인 등의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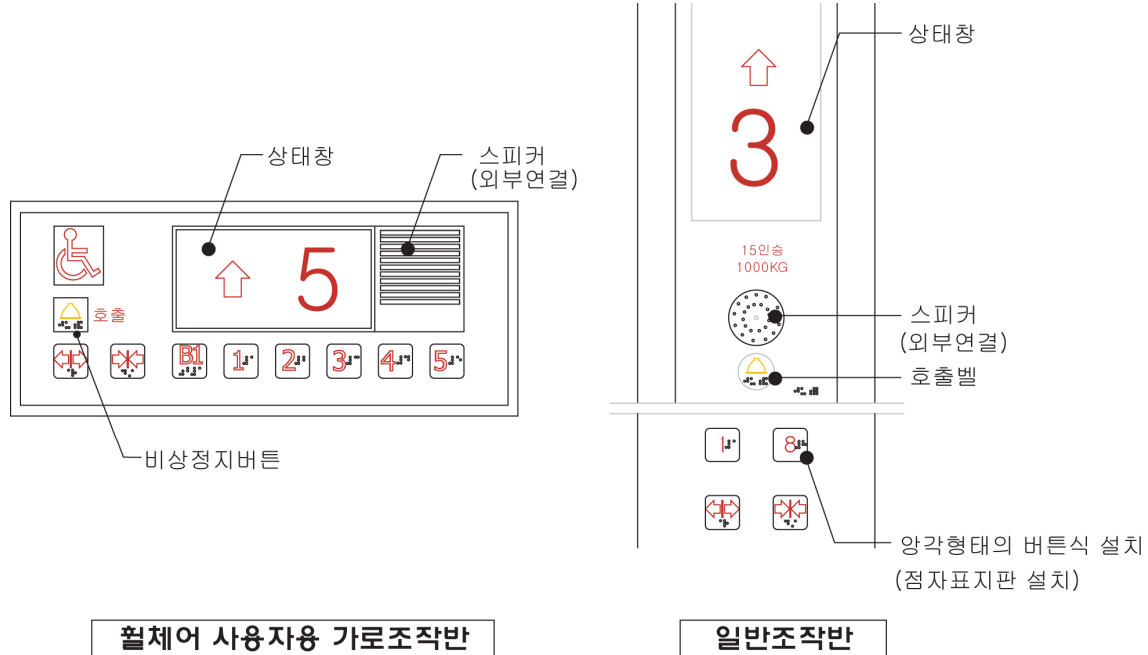


〈그림 4-31〉 승강기 구조, 조작반

**(3) 유용한 조작설비 확충**

- ① 승강기 승강장 호출 버튼(외부 상·하버튼) 설치위치는 우측보행을 고려하여 가급적 승강장 출입문 우측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때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로 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모든 승강기 버튼은 양각 버튼식으로 설치하고 버튼 동작시 점멸등이 켜지게 하여 동작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승강기 내부의 모든 조작 버튼은 취소가 가능한 토글 방식이어야 하며 누르면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 하고 취소할 때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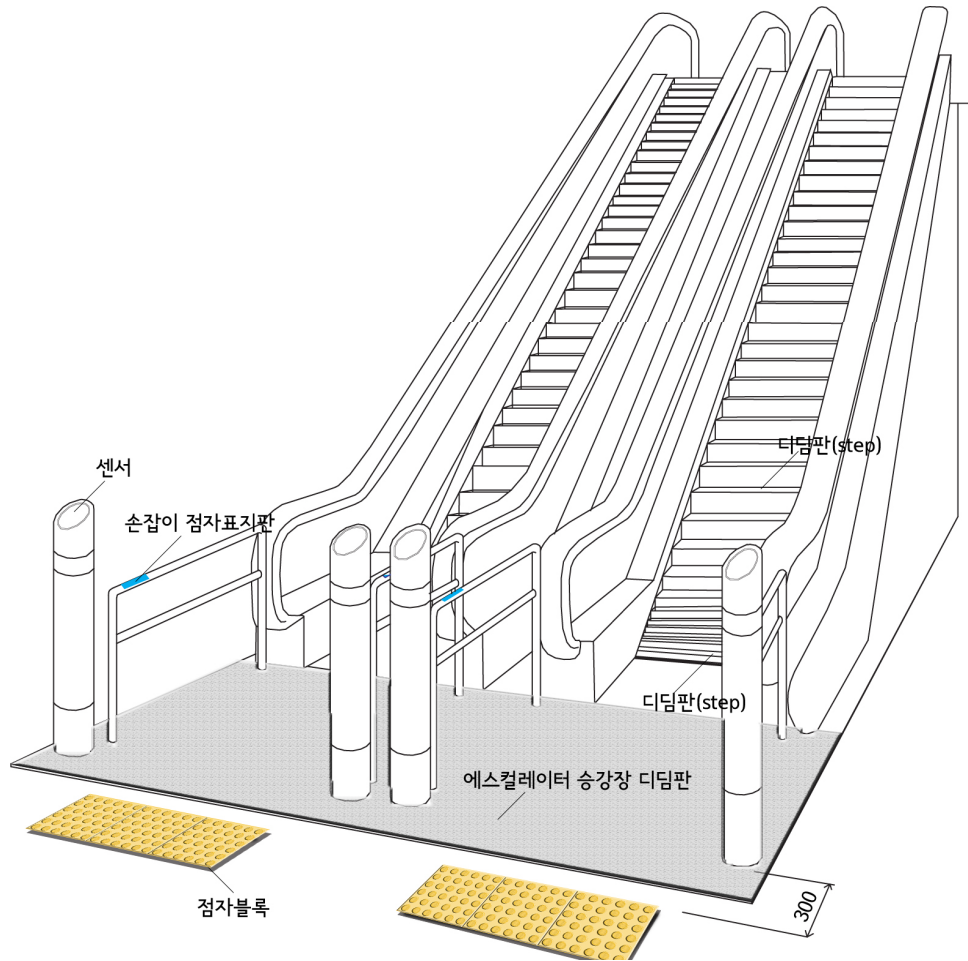
〈그림 4-32〉 승강기 가로조작반, 일반조작반

#### (4) 안내설비의 설치

- ① 각 층의 승강기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및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도착을 알리는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실제 승강기에서 발생한 도착음향이 외부 승강장에서 들려야 한다.)
- ②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설치되고 음성안내를 제공해야한다.(문의 개폐, 오르내림, 층 정보 등이 포함된다.)
- ③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예 ‘들어오신 뒷면(후면)에서 문이 열립니다.’ )
- ④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승강장, 승강기내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 ⑥ 승강장 측벽이나 바닥에 층 표시를 크게 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에게 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군관리 승강기 설치시 최소 1대는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하고 군관리에서 제외하여 전층 운행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⑧ 승강기 내부 층별안내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다.



## 8. 에스컬레이터



〈그림 4-33〉 에스컬레이터 예시

### 1) 설계 원칙

에스컬레이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사람을 층간에서 연속적으로 승강시키는 장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는 시설이므로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단과 마찬가지로 층별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2) 지침 요약

에스컬레이터는 쾌적한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확보, 운행속도 준수, 안전장치 설치,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쾌적한 승강장 공간 및 진입 유효폭, 합리적인 운행 속도, 비상정지버튼, 역진 입방지 센서, 진입방지봉 설치 등 안전장치 확보, 식별이 용이한 디딤판 등

- ①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부근은 혼잡한 경우 충돌사고 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 진입부는 최소 0.6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해야 한다.
- ②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내외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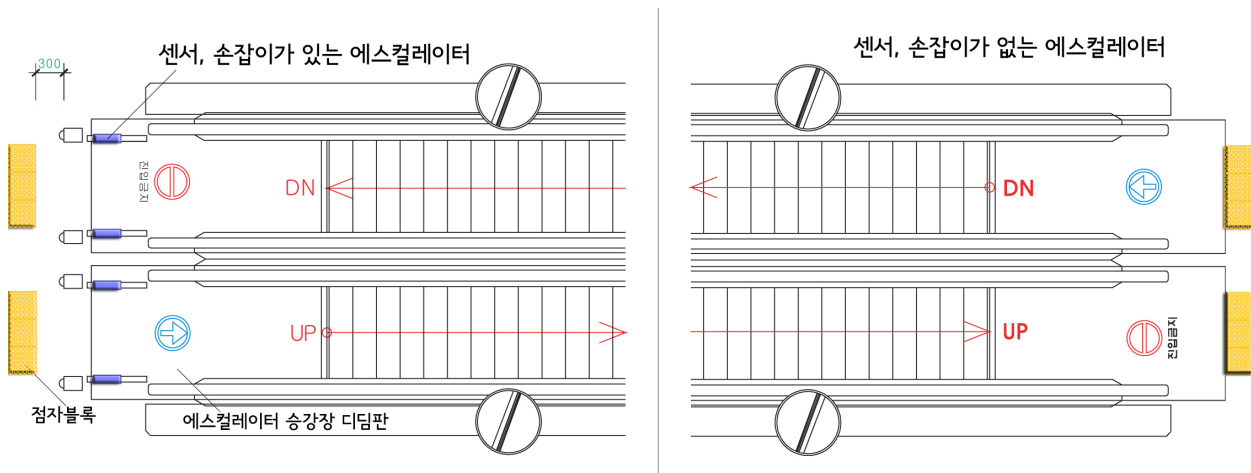
- ③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 중간부분에 위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해야 하고 역진입시 경고음향이 출력되는 역진입방지 센서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가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진입방지봉을 설치할 경우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변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마감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 해야한다.
- ④ 디딤판의 가장자리와 끝부분(계단코부근)은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황색으로 구분해야한다.

**(2) 손잡이와 점자표지판 설치**

- ①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수평이동 손잡이를 높이 1.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 ② 손잡이는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해야한다.
- ③ 시작과 끝부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높이, 길이 1m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하며 문구는 화살표방향, 층정보, 목적지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특히 역진입 방향 손잡이에는 진입방지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의 점자를 표기해야한다.

**(3) 점형블록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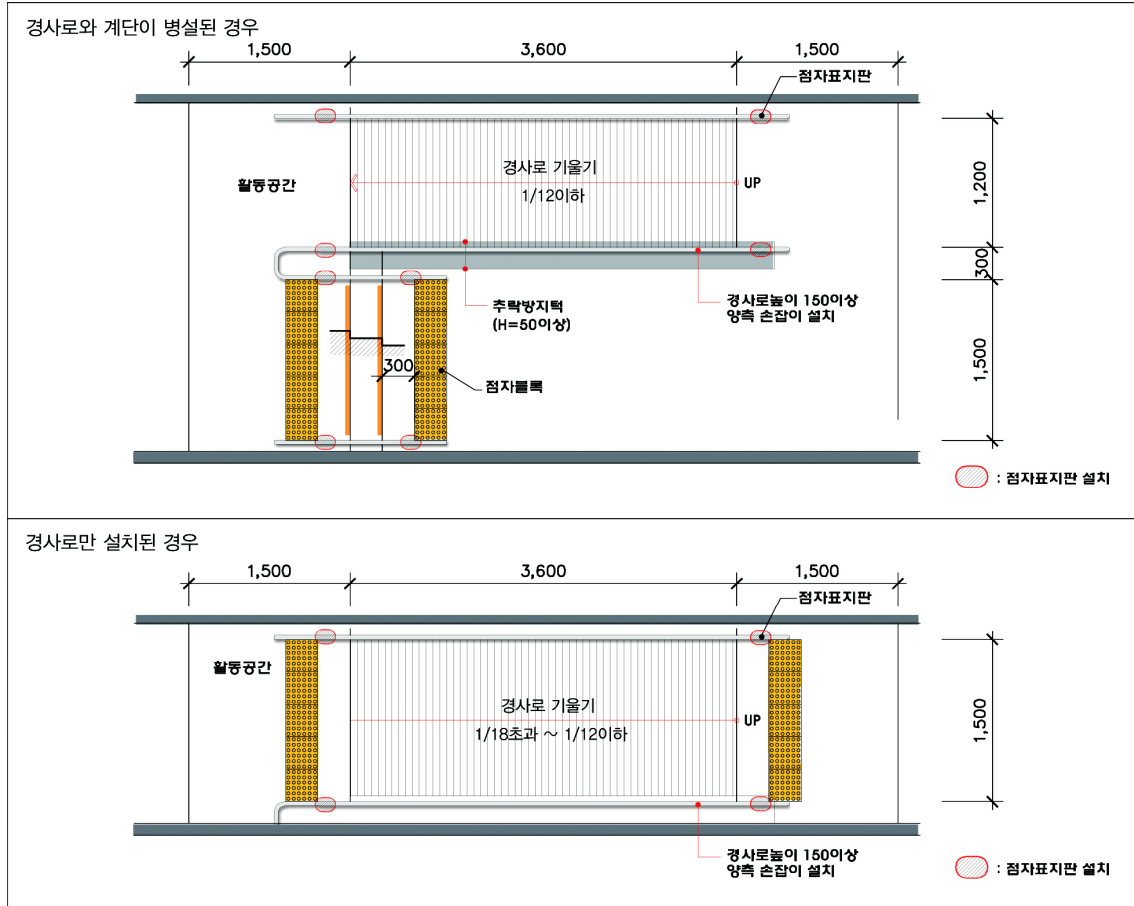
- ① 에스컬레이터의 시작과 끝부분은 계단과 마찬가지로 진입 유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 ② 이때 에스컬레이터는 시설 특성상 시·종점 부근에 승강장 디딤판이 존재하므로 움직이는 디딤판 전면 0.3m에 설치가 불가하다. 때문에 승강장디딤판에 바로 인접해 설치하도록 한다.
- ③ 단, 센서가 있을 경우 센서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4-34〉 에스컬레이터 점형블록 설치방법



- ④ 경사로 시·종점 양 끝 수평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목적지 및 위치 정보를 알려 주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한다.(점자문구 예: '→ 101동 주출입구' , '← 좌측 관리사무소 우측 102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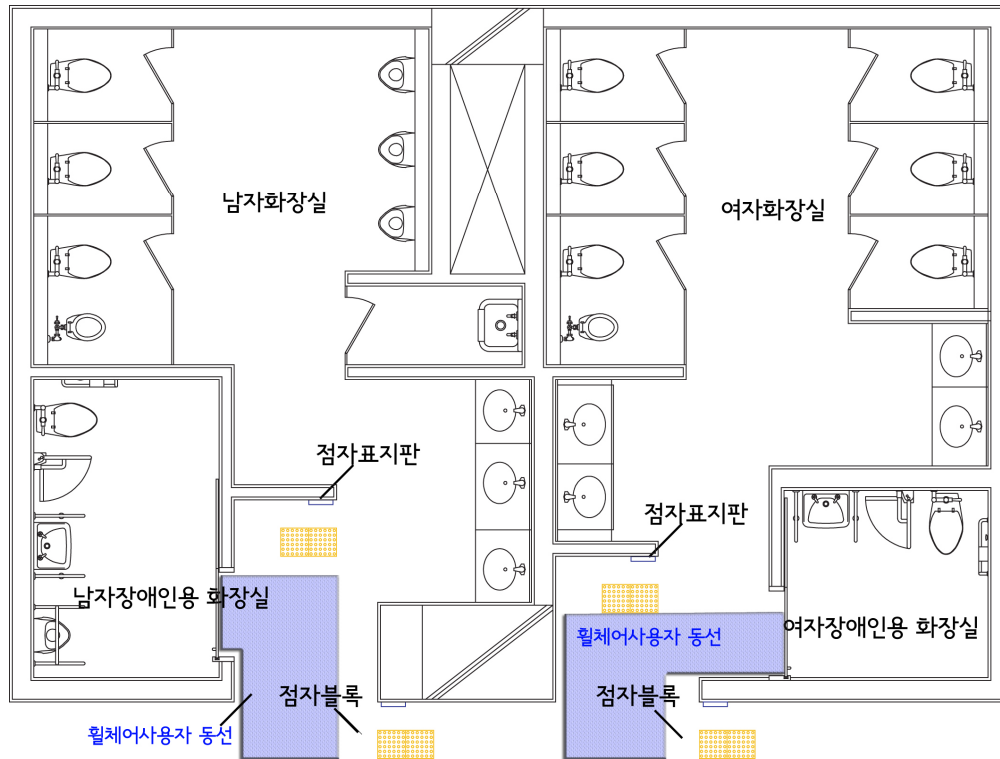


〈그림 4-36〉 경사로와 계단이 병설된 경우, 경사로만 설치된 경우 예시

### (3) 바닥마감

- ① 경사가 있는 곳은 미끄러질 수 있는 요인이 크므로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마감해야 한다.
- ② 장애특성을 고려했을 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를 피하도록 하고 경사로 전면 또는 경사로 바닥재질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경사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계단이 같이 설치된 경우 계단 전면 0.3m에 계단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경사로만 설치되어있는 경우 1/18초과 ~ 1/12이하의 경사로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폭만큼 설치하도록 한다.
- ⑤ 경사로 양측면에는 높이 5cm ~ 10cm의 휠체어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고 벽면에 충돌 완화를 위한 충격 완화 매트를 설치할 수 있다.

## 10. 화장실



〈그림 4-37〉 화장실 예시

### 1) 설계 원칙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인지와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진입에서부터 화장실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위생적이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자 표지판, 점형블록의 설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 2) 지침 요약

화장실은 접근성 확보, 장애인용화장실과 구분 설치,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미끄럽지 않는 바닥재질 및 마감, 편리한 화장실 시설,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장애인용화장실과 구분 설치,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등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복도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공간 구성이 복잡하거나 손잡이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용화장실은 사용이 불편하고 일반화장실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이용 편의시설은 일반 화장실에 설치하도록 한다. 오히려 점형블록을 장애인화장실 전면에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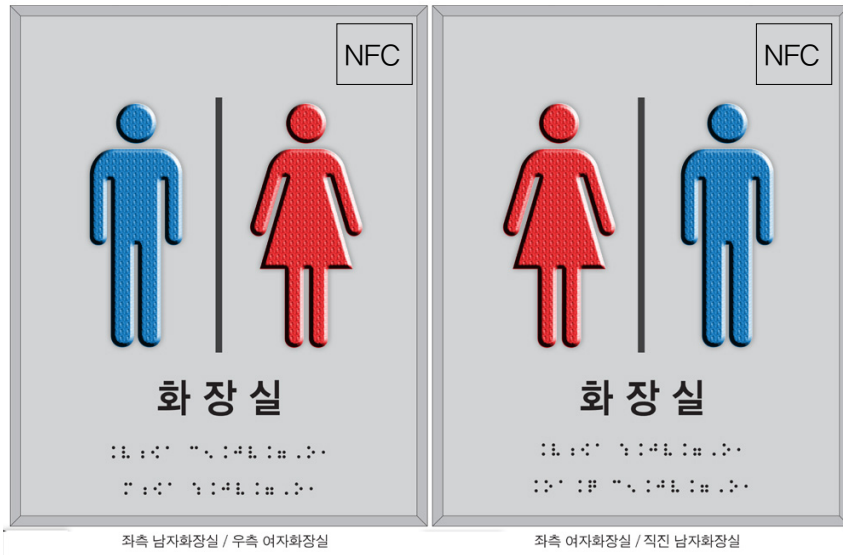
- ③ 화장실로 연결되는 모든 출입구(문)의 진입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화장실 내부에는 세면대, 소면기,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화장실내 바닥면의 높이차를 제거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한다.
- ⑤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 13호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 ⑥ 스윙도어의 경우 하부구조가 없어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접근시 충돌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2) 편리한 화장실 시설

- ①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레버식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동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고 수도꼭지에는 온·냉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수도꼭지의 형태가 광감지식, 누름버튼 식일 경우 동작방법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대변기 출입문의 경우 내부에서 잠금장치 조작이 용이해야 하며, ‘사용중’ 표시등이나 색의 변화로 대변기의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③ 대변기 이용시 필요한 휴지걸이, 대변기 세정장치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데 조작반에 점자가 표기되거나 동작버튼을 양각화하여 사용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 ④ 화장실 내부에는 조작하기 쉬운 형태의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점자도 표기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바닥재질을 달리하여 소변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

## (3) 점자표지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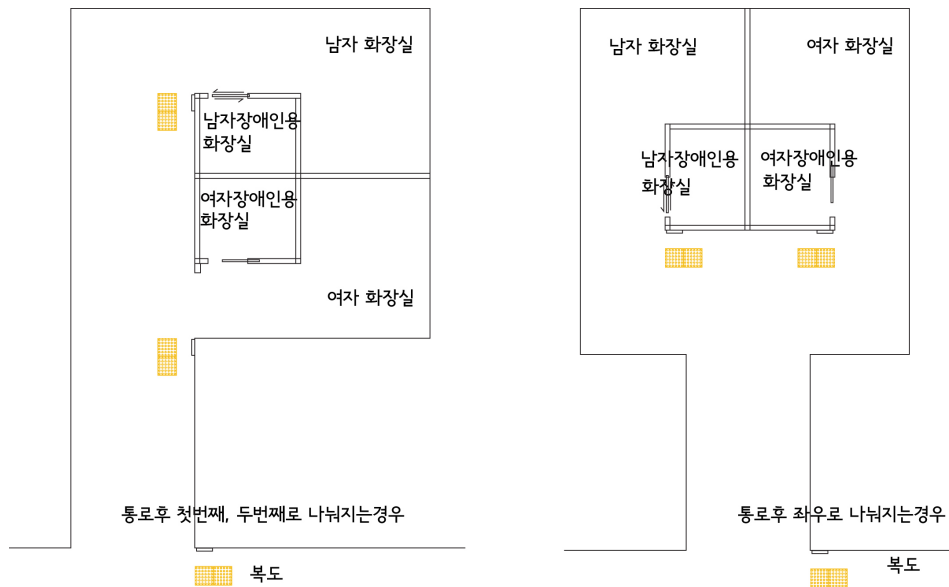
- ① 화장실 점자표지판은 남·녀를 구분하여 각각 입구 벽면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점자뿐만 아니라 픽토그램과 문자를 포함시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② 픽토그램은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등 색상을 구별하여 저시력인 등 시각장애인이 쉽게 구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화장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상세한 설치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의 수평중심선이 오도록 하며 화장실 출입문이 있다면 문손잡이가 있는 벽면으로 한다. 단, 문이 없는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정하도록 한다.
- ④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 ⑤ 일반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경우 점자표지판 문구는 ‘남자(장애인) 화장실’ 또는 ‘여자(장애인) 화장실’ 로 표현한다.
- ⑥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세면대 이용을 위해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기를 해야 한다. 레버가 없이 센서로 작동하는 경우 생략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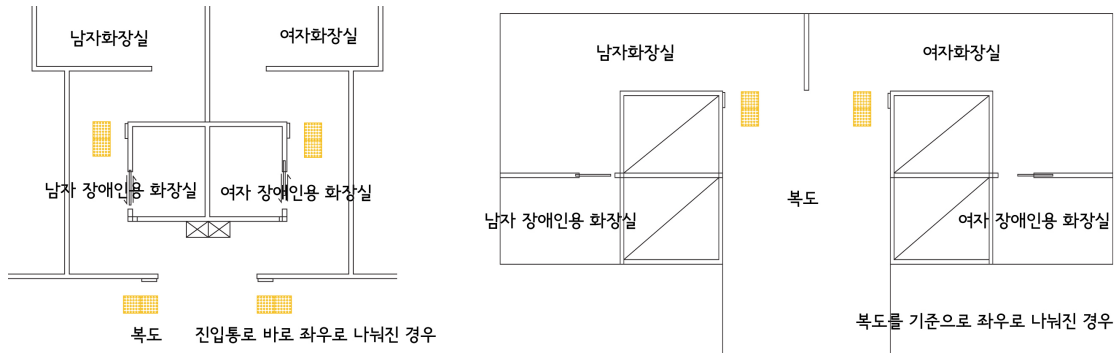
〈그림 4-38〉 화장실 점자표지판

#### (4) 점형블록 설치

- ① 일반화장실 입구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벽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남녀 구별하여 설치하여 점자표지판의 위치 확인 및 진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점형블록은 2장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2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점형블록의 설치위치는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로 한다. 일반화장실 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0.3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화장실 주출입구 까지 인근 보도에 설치되어있는 선형블록과 연결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화장실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39〉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1



〈그림 4-40〉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예시2



## 11. 객실 및 침실

### 1) 설계 원칙

객실 및 침실은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경보 및 피난 설비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 2) 지침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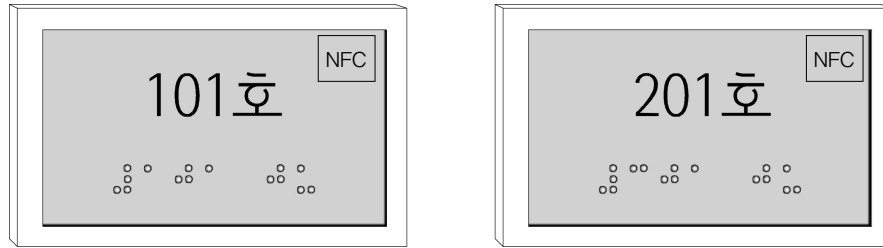
객실 및 침실은 쾌적한 통과 유효폭과 공간 확보, 점자표지판 설치, 올바른 바닥마감, 비상 및 알림장치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쾌적한 진입 유효폭 및 활동 공간 확보 등

- ① 장애인용 객실 등은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로비층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 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③ 객실 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 ④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한다.
- ⑤ 객실 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
- ⑥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한다.

#### (2) 명패 및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객실, 계단실, 화장실 등의 문 손잡이쪽 벽면에 명패와 같은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실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 ②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문 손잡이쪽 벽면,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 높이가 1.5m가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다만 노유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자의 실제 키를 고려하여 1.2~1.5m 내외로 설치높이를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적용의 완화를 따르도록 함.)
- ③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객실 등의 명패는 눈에 잘 될 수 있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을 사용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한다.
- ⑥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객실, 계단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문)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2. 점자표지판을 참고한다.



〈그림 4-41〉 벽면형 전자표지판 예시

### (3) 기타 편의시설

- ① 객실 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 13호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 ②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③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이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④ 객실 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객실내에 있는 스위치, 인터폰 등은 터치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한다.

## 12. 경비실



〈그림 4-42〉 경비실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설치 사례

### 1) 설계원칙

경비실은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경비실은 접근성 확보, 상시 인적서비스 제공,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및 점자안내판(촉지안내도)의 설치, 점자블록 설치,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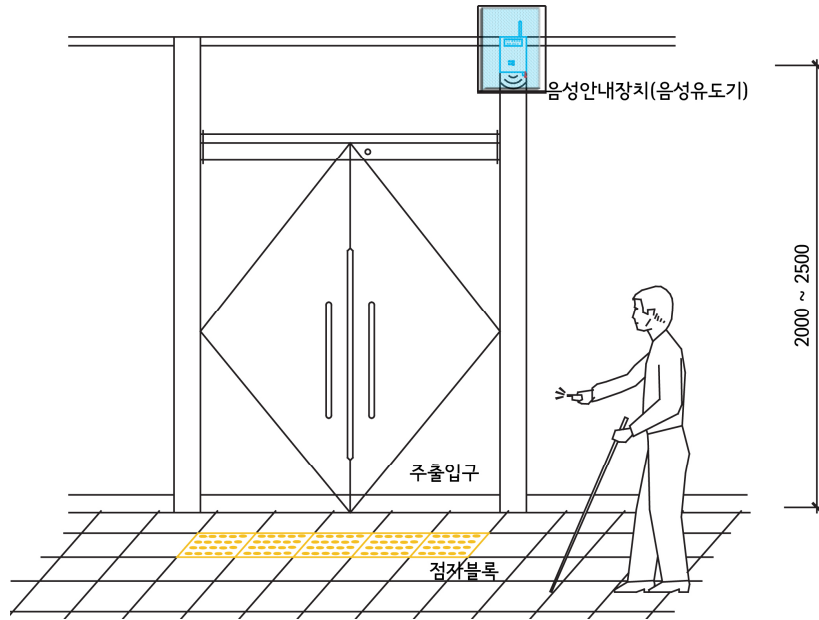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상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경비실 안내표지판을 접근로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단지 내 이동 및 문의를 위한 상시 인적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한다.

#### (2)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인근 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송신기)을 동작하여 단지의 주진입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비실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②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안내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해당 시설 명(동, 관 포함) 및 단지 이동을 위한 주요동선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점자안내판이 있을 경우 점자안내판 위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한다.(예: ‘관리사무실 앞입니다. 출입구 진입 후 좌측은 민원실, 우측은 승강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점자안내판을 참고하십시오.’ )
- ④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이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에 따라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로 하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⑤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⑥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⑦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⑧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그림 4-43〉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 (3) 점자안내판(촉지식 안내판, 촉지안내도) 설치

- ① 점자안내판을 경비실 인근에 설치하여 단지 주거동의 배치 및 보행 동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②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 3장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⑤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 (4) 점자블록 설치

- ① 경비실이 단지내 주민입로에 인접해 있는 경우 경비실까지 선형블록을 연계 설치하도록 한다.
- ② 경비실의 창구 및 응대하는 곳 전면 0.3m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 ③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1. 점자블록을 참고한다.

### (5) 기타 편의시설

- ① 단지 내 알림 및 공지에 대한 인쇄물은 점자 문서 또는 인적서비스로 제공되어야한다.

## 13.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림 4-44〉 주민공동시설 사례

### 1) 설계원칙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야한다.

### 2) 지침 요약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접근성 확보, 인적서비스 제공,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및 점자안내판(촉지안내도), 점자블록, 기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야한다.

#### (1) 일반 지침 - 접근성 확보, 인적서비스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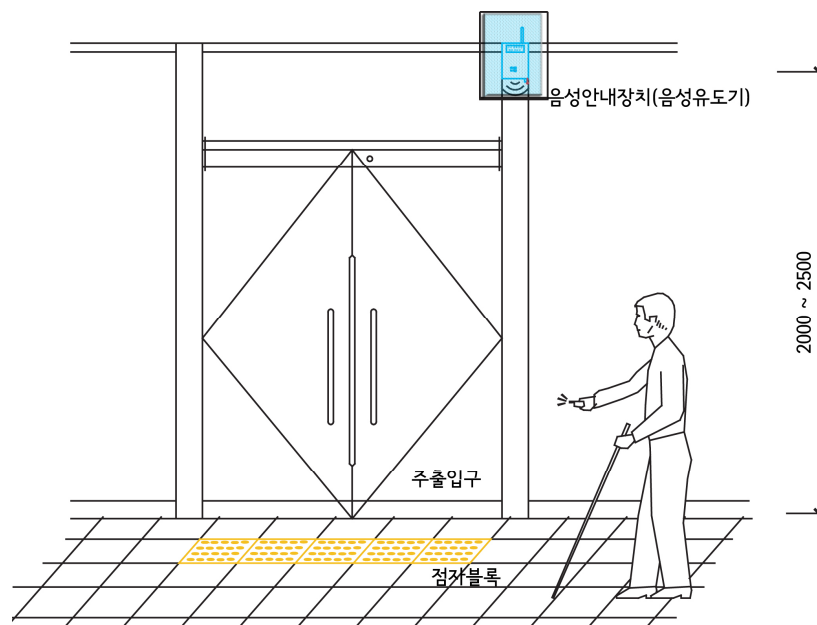
- 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접근로에 설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보도에 접하는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연결되는 접근로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유효폭 1.2m 이상 확보 및 점자블록이 설치되어야한다.

#### (2) 음성안내장치(음성유도기) 설치

- ① 단지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이 무선 리모콘(송신기)을 동작하여 동 시설 주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② 리모콘 수신거리는 10m 내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안내멘트는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고, 구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안내 등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 점자안내판이 있을 경우 점자안내판 위치에 대한 내용

도 포함해야한다.(예: ‘커뮤니티센터 앞입니다. 지하 1층에는 헬스장 1층에는 북카페 및 열람실, 2층에는 종합상가가 있습니다.’ )

- ④ 안내멘트 소리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에 따라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로 하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잘 들릴 수 있도록 한다.
- ⑤ 음성안내장치가 인근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제어 및 수신 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⑥ 음성유도기의 전원은 스위치로 켜거나 끌 수 없는 상시전원으로 해야한다.
- ⑦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상시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정기적 점검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⑧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6. 음성유도기를 참고한다.



〈그림 4-45〉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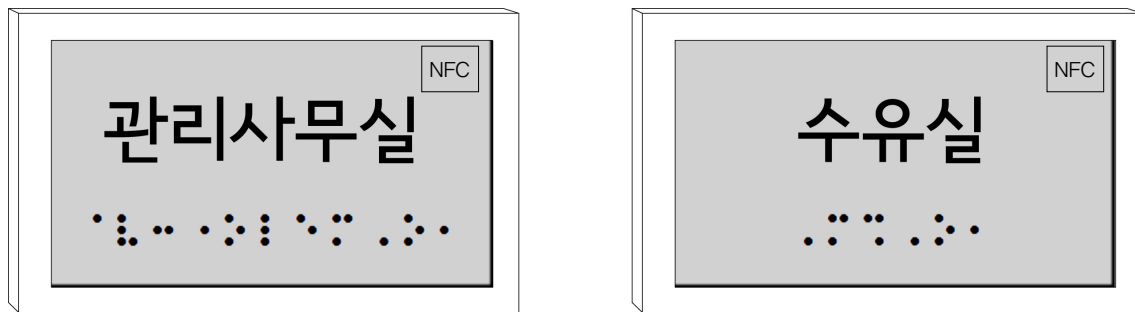
### (3) 점자안내판(촉지식 안내판, 촉지안내도) 설치

- ① 점자안내판을 동시설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실내 배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②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에 준하여 제작한다.
- ③ 외부에 설치할 경우 햇빛,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차양시설(캐노피)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점자안내판 전면 0.3m앞에 점형블록 3장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 ⑤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3. 점자안내판을 참고한다.

### (4) 명패 및 점자표지판 설치

- 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계단실, 화장실 등의 문 손잡이쪽 벽면에 명패와 같은 점자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실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한다.

- ②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문 손잡이쪽 벽면,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 높이가 1.5m가 되도록 설치해야한다. 다만 노유자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자의 실제 키를 고려하여 1.2~1.5m 내외로 설치높이를 정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적용의 완화를 따르도록 함.)
- ③ 쌍여닫이문의 경우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④ 점자표지판에 시각장애이용 AD 2차원 바코드 및 NFC 태그를 추가하여 점자를 모르는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사무실 등의 명패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바탕색과 대비되는 글자색을 사용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한다.
- ⑥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계단실, 화장실 등을 제외한 모든 출입구(문)에도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2. 점자표지판을 참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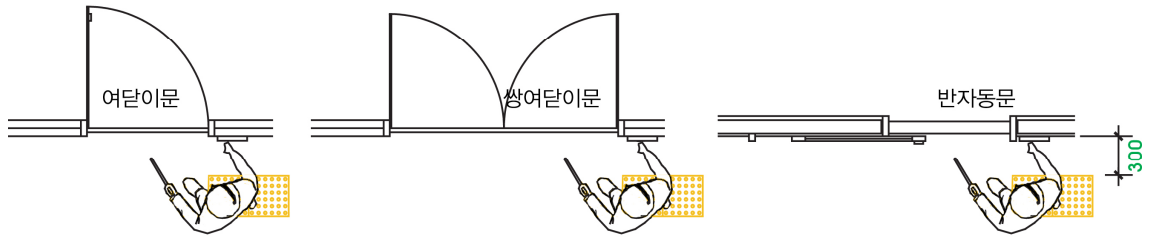


〈그림 4-46〉 사무실 점자표지판 예시

#### (5) 점자블록 설치

- ①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이때 각 항목은 해당 항목별 점자블록 설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② 유치원, 경로당 등 영유아, 노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신발을 벗는 실내라 판단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실내 점형블록의 설치가 생략 가능하다.
- ③ 상가의 경우, 보도에 접하는 매장 각 출입구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점형블록은 3장을 연속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 위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벽면에서 0.3m 이격하여 출입구와 걸치게 설치해야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3장설치가 불가할 경우 간소화 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④ 인근 보도에서 상가 건물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을 연계하여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⑤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1. 점자블록을 참고한다.

점형블록 설치



〈그림 4-47〉 실내출입문 점형블록 설치위치

(6) 기타 편의시설 구비

- ①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은 시인성 좋은 마감처리로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과 보도는 색과 재질을 다르게 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 하도록 한다.
- ② 샤워실 및 탈의실의 사물함(개인락커)의 숫자는 점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③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접근로에는 유효폭 확보 및 장애물 제거 한다.
- ④ 무인택배시스템 또는 우편함 호수에 점자를 병기할 수 있다. 무인택배시스템의 경우 조작반은 터치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하며, 동작음 작동을 권장 한다.
- 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단독건물인 경우 유도 및 안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부 록

- 부록 1. 점자블록
- 부록 2. 점자표지판
- 부록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 부록 4. 음향신호기
- 부록 5. 음성유도기
- 부록 6. 경보 및 피난설비
- 부록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록

## 부록 1. 점자블록

### 1) 기능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시설이다.

### 2)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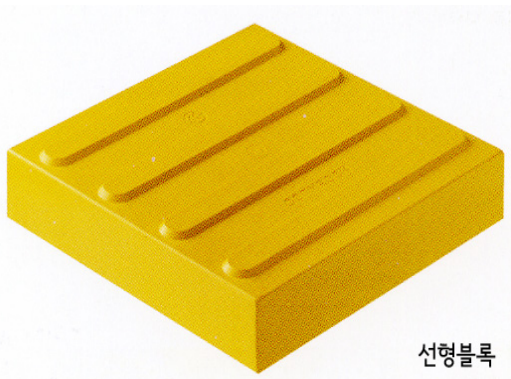
기능과 형태에 따라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뉜다.

#### (1)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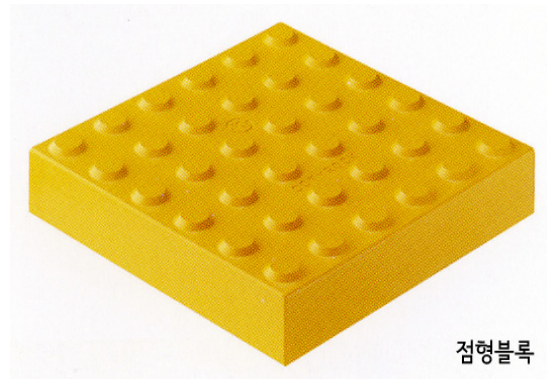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한다. 점형블록의 형태는 가로30cm×세로30cm 안에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원뿔절단형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2) 선형블록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된다. 끝나는 지점은 점형블록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선형블록의 형태는 가로30cm×세로30cm 안에 4개의 원뿔절단형 직선으로 구성되어야한다.



<그림 부록 1-1> 선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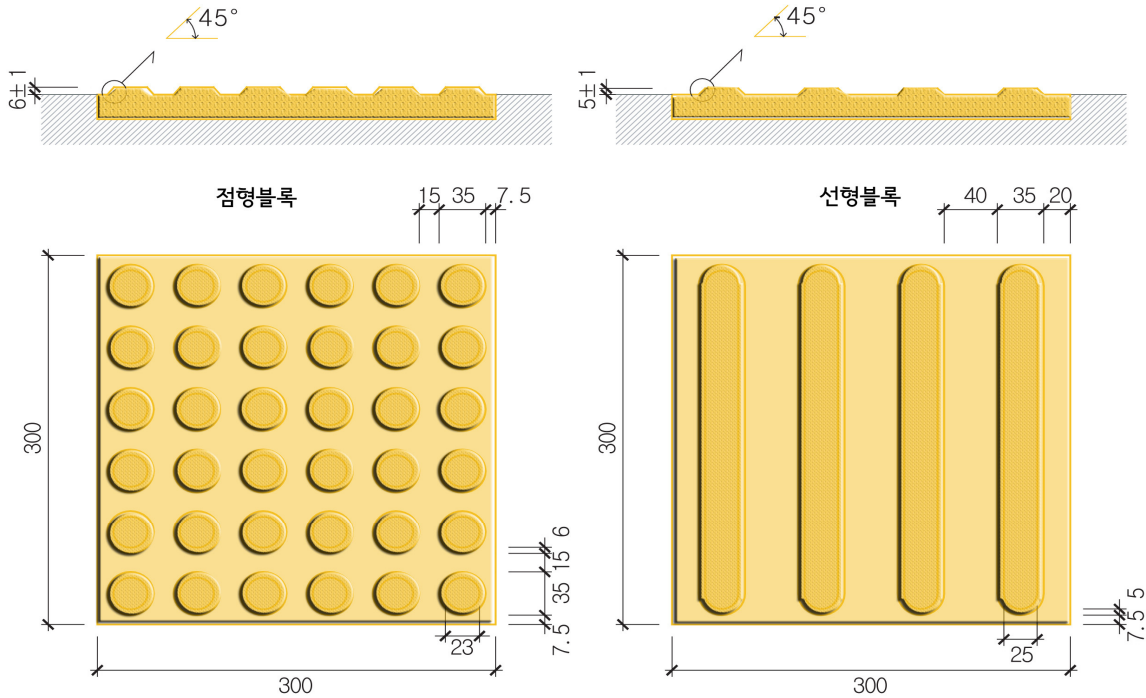


<그림 부록 1-2> 점형블록

### 3) 규격

(1) 점형블록은 30cm×30cm의 사각 판에 36개의 돌출된 원뿔절단형으로 구성되어야한다. 점의 크기는 지름 3.5cm, 높이는 0.6±0.1cm 내외가 적당하며, 점의 간격은 1.5cm으로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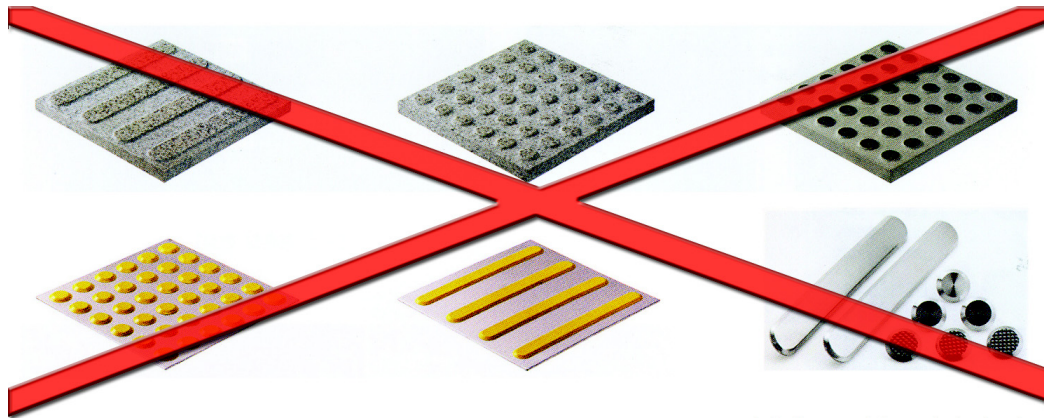
- (2) 선형블록은 30cm×30cm의 사각 판에 돌출된 원뿔절단형 직선이 네 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돌출선의 폭은 점자블록의 돌출점과 같은 크기인 3.5cm내외가 적당하며, 높이는 0.5±0.1cm으로 해야 한다.
- (3)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할 수 있다.



〈그림 부록 1-3〉 점자블록 규격

#### 4) 재질

- (1) 점자블록의 재질은 주로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3) 실외에는 고무소재, 합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실내에 기존 바닥의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합성수지, 고무소재 등 사용 가능하되 탈착하지 않도록 앵커 볼트나 피스로 고정하여 탈착되지 않도록 하며 재질은 불연소 소재로 해야 한다.)
- (4) 비나 눈 등의 물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철재 사용은 일절 금한다.
- (5) 모든 점자블록은 기술표준원(KATS)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표준번호 KS F 4561 참조)



사용을 금하는 재질의 사례

〈그림 부록 1-4〉 점자블록 사용을 금하는 재질

### 5) 시공

점자블록은 바닥에 매립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돌출하단면을 바닥면에 일치하도록 해야한다. 현장조건에 따라 매립시공이 불가능 할 경우 앵커볼트나 피스고정 등 탈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되 돌출하단면과 바닥면의 높이 차이를 최소로 해야 하고 각 지지체의 보도 포장 시방서 및 지침에 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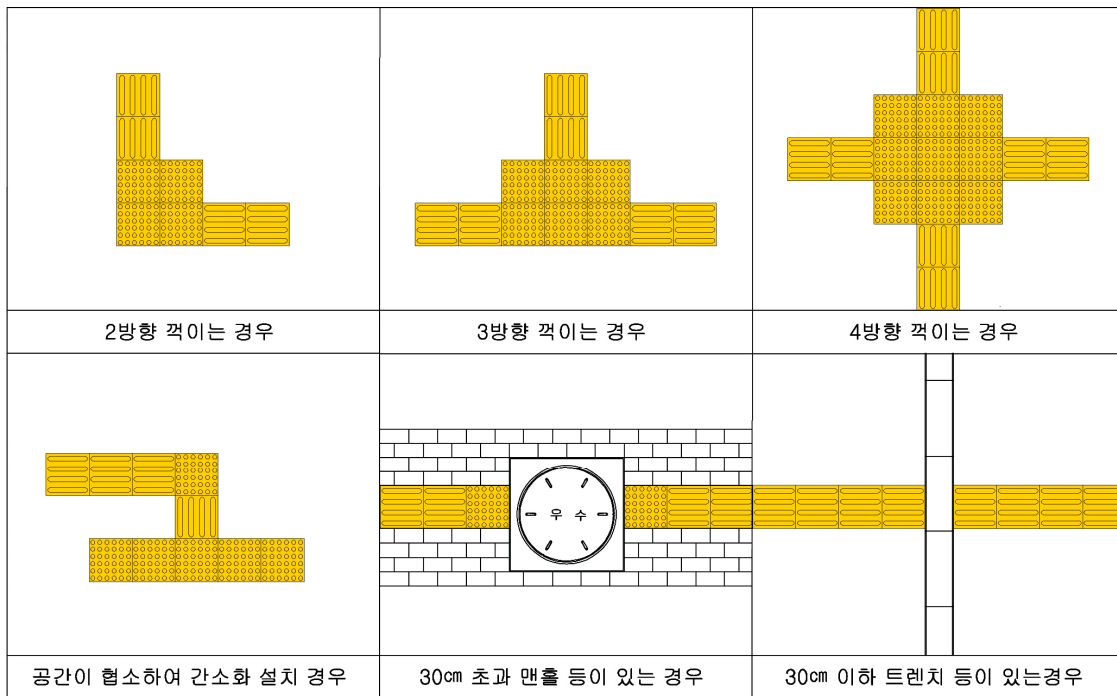
### 6) 유지 및 보수

- (1) 점자블록은 시공된 후 매 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 되어야한다.
- (2) 점자블록이 파손 또는 유실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되어야한다.
- (3) 비나 눈 또는 기타 이물질 및 장애물로 덮여있으면 즉시 치워야 한다.
- (4) 가설 상가 및 기타 가설물로 점자블록의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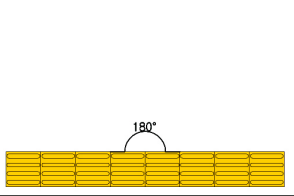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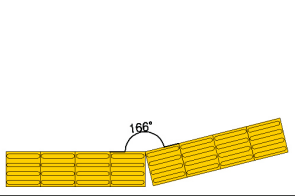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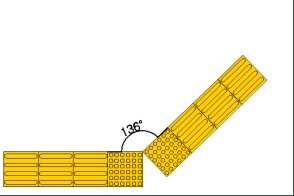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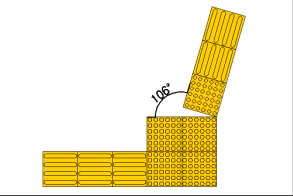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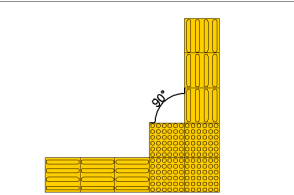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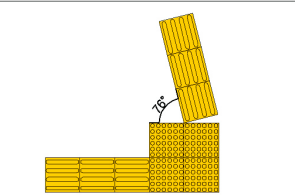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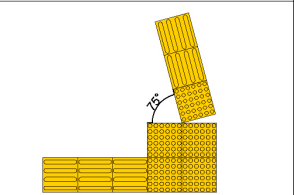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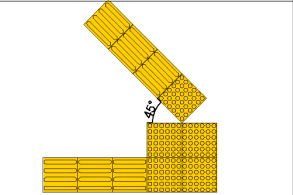
### 7) 설치 원칙

- (1) 선형블록은 돌출선이 유도 대상시설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고,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쉽도록 30cm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 (2) 선형블록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보행가능한 보도, 접근로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며,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의 굴절 및 시작, 끝지점, 시설주출입구, 횡단보도 전면(교통섬 포함), 음향신호기 수동식 버튼 전면, 계단 전면, 승강기 조작반, 버스정류장 및 노상시설 등 장애물 전면 및 측면에 30cm 이격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점형블록은 주의, 환기, 방향성 인지를 위해 대상물에서 해당 대상물의 폭만큼 30cm 전면에 설치해야한다. 다만 횡단보도 등 통행상 안전과 바닥마감 등 현장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30cm~90cm 범위 안에 설치 할 수 있다.(보통 횡단보도 전면에는 2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4)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굴절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해야한다.
- (5)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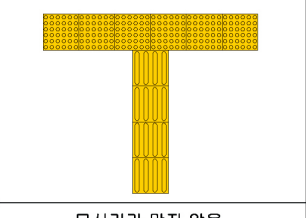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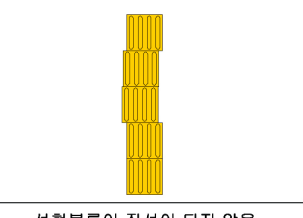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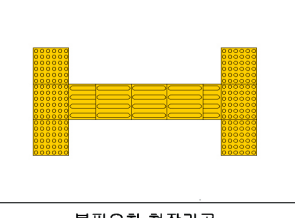
- (6) 점자블록은 현장 가공해서 설치하면 아니 되며 정규격 그대로 설치해야한다. 단, 선형블록은 현장 조건상 부득이하게 이격거리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현장 가공을 할 수 있다.
- (7)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한다.
- (8) 위험한 지역을 둘러막을 때에는 점형블록을 사용하고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가로선은 2줄(60cm)로 설치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세로선은 1줄(30cm)로 설치해야한다.
- (9) 점자블록 시·종점 부근의 선형블록은 보행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연장선상으로 유도해야한다.
- (10) 점자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11) 계단, 출입구의 진입을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구분한 경우, 점자블록 설계는 들어가는(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2) 선형블록 외곽선으로부터 좌우 최소 60cm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단, 폭이 1.5m미만인 경우 중앙에 선형블록을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 (13) 외부공간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보도, 접근로, 외부시설(승강기, 계단, 경사로 등)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14) 관공서, 복지관 등 공공건물 인근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선형블록은 해당 시설 접근로까지 연계하여 선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
- (15)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하며, 선형블록은 한줄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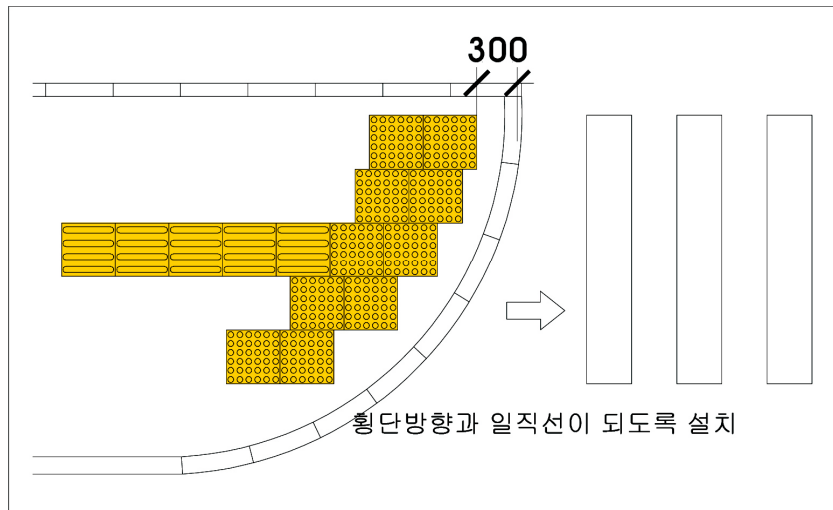
〈그림 부록 1-5〉 점자블록 설계 예시

			
180°	165°초과~180°이하	135°초과~165°이하	105°초과~135°이하
			
90°	75°초과~105°이하	75°이하	75°이하

〈그림 부록 1-6〉 점자블록 각도별 설계 예시

		
모서리가 맞지 않음	선형블록이 직선이 되지 않음	불필요한 현장가공

〈그림 부록 1-7〉 점자블록 잘못 설계한 예시



〈그림 부록 1-8〉 횡단보도 연석이 곡선인 경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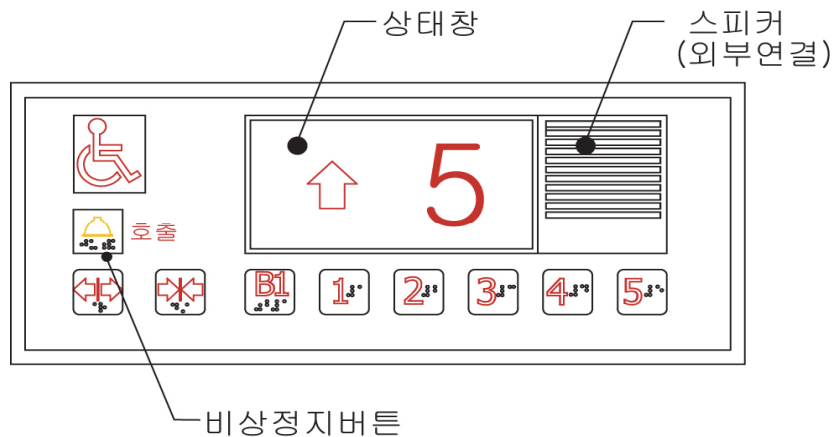
## 부록 2. 점자표지판

### 1) 기능

점자표지판은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화장실과 건물 실내출입문 벽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의 손잡이 및 승강기 조작반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 종류

- (1) 벽면 점자표지판: 공중의 사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 실내출입문(구)의 벽면에 설치한다.
- (2) 손잡이 점자표지판: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복도 등 매개시설, 내부시설 손잡이에 설치한다.
- (3) 기타 점자표지판: 승강기 조작반, 음향신호기의 수동식 버튼, 생활가전제품 조작반 등에 점자가 자체 포함된 버튼을 사용하거나 표기되어야한다.



〈그림 부록 2-1〉 승강기 조작반 예시

### 3) 구성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pictogram)을 같이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중증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저시력인,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시안(Universal Design)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을 위해 2차원 AD바코드나 NFC태그를 부착하여 음성으로 사무실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4) 규격

#### (1) 점자규격

점자표지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해야하며, 점자 표기는 반구형으로 해야한다. 부식형의 경우 손뼌, 촉지 가독성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금한다. 또한, 제작된 점자표지판은 점역 교정사의 검수를 받아 실제 촉지가 가능한지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림 부록 2-3〉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 5) 재질

- (1) 폴리카보네이트: 뛰어난 내충격성과 내후성, 시공성 우수, 내열성이 높고 저온 특수성이 우수하고(-40℃~135℃), 흡수성이 적으며 자기 소화성이 아주 좋다. 무독성이며 물, 약산에 아주 좋다. 주로 벽면, 손잡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2) 알루미늄: 뛰어난 내충격성과 내후성, 시공성 우수하며 반영구적, 흡수성이 없다. 주로 벽면, 손잡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3) 아크릴: 제조가 용이하며, 주로 벽면 점자표지판에 쓰인다.
- (4) 투명테이프(다이모, 모텍스 등): 자동판매기 및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표지판에 점자를 표기한 테이프를 덧붙이는 식으로 설치한다. 보존적이 약하므로 임시방편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 6) 시공

- (1) 벽면 표지판 설치는 본드 및 실리콘으로 설치하여 임의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시공한다.
- (2) 손잡이 점자표지판은 리벳으로 압착 시공하여 틈 없이 설치하여야한다. 본드, 양면접착, 테이프 부착으로 시공할 경우 손잡이 부근의 온도차, 손때 등 자칫 이물질이 발생되고 떨어지거나 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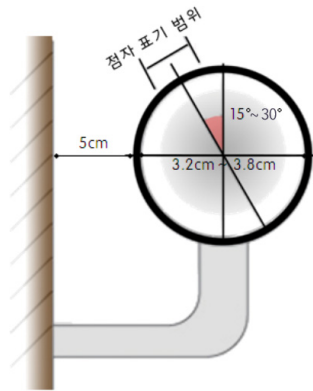
〈그림 부록 2-4〉 손잡이 점자표지판 마감

## 7) 유지 및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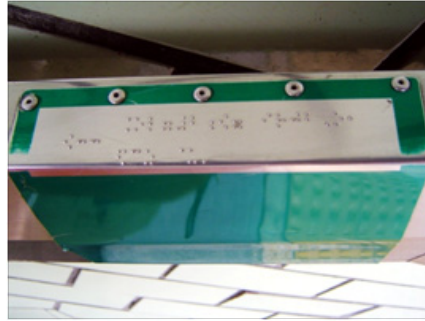
- (1) 위치 정보 및 공간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점자표지판의 내용도 즉각 수정하여야한다.
- (2) 점자표지판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한다.
- (3) 점자표지판의 점자가 일부 소실되거나 마모되어 인지하기 힘든 경우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여야한다.
- (4) 설치된 지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점자표지판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한다.

## 8) 설치 원칙

- (1)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시설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화장실과 건물 실내출입문 벽면, 계단,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의 손잡이 및 승강기 조작반 등에 점자가 표기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치와 방향, 용도 및 목적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2) 점자표지판은 가급적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알루미늄 판 등 내구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저시력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도록 글자도 기입할 수 있다.
- (3) 벽면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점자표지판의 중심선이 1.5m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시설물의 용도와 주요 이용자의 신장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는 조정 가능하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적용의 완화에 의거한다.)
- (4) 손잡이 점자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계단, 경사로, 복도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의 0.3m 수평 손잡이 중간에 설치하고 계단의 경우 가급적 점자블록과 계단의 이격 거리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손잡이 고정 장치로 인해 수평손잡이에 설치 못하는 경우 가능한 근거리에서 설치하여야한다.
- (5) 복도 손잡이의 경우 시작과 끝부분 0.3m 수평손잡이에 설치하고 시설에 해당하는 점자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소화전과 같은 시설은 설치를 생략한다.)
- (5) 원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할 경우 왼손으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벽면쪽으로 15° ~30° 기울여 시공하여야한다.(난간에 고정된 손잡이인 경우는 난간 쪽으로 15° ~30° 기울인다.)
- (6) 사각·오각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손잡이 윗면에 설치하여야한다. 또한, 손잡이가 2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위쪽 0.85m, 아래쪽 0.65m 내외) 성인용인 위쪽 손잡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부록 2-5〉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그림 부록 2-6〉 손잡이점자표지판  
설치 예시

- (7) 승강기 조작반 및 음향신호기의 지압식 누름버튼 점자표지판은 반드시 조작반과 동일 재질의 일체형으로 하여야한다.
- (8) 점자 표기 문구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표 부록 2-1〉 점자 표기 문구 예시

구 분	점자 표기 문구														
계단 손잡이 (하부)	화살표 2층 사무실														
	좌	⠠⠠⠠⠠⠠⠠⠠⠠⠠⠠⠠⠠⠠⠠⠠⠠													
우	⠠⠠⠠⠠⠠⠠⠠⠠⠠⠠⠠⠠⠠⠠⠠⠠														
계단 손잡이 (상부)	화살표 1층 안내데스크														
	좌	⠠⠠⠠⠠⠠⠠⠠⠠⠠⠠⠠⠠⠠⠠⠠⠠													
우	⠠⠠⠠⠠⠠⠠⠠⠠⠠⠠⠠⠠⠠⠠⠠⠠														
경사로 손잡이 (하부)	화살표 주출입구														
	좌	⠠⠠⠠⠠⠠⠠⠠⠠⠠⠠⠠⠠⠠⠠⠠⠠													
우	⠠⠠⠠⠠⠠⠠⠠⠠⠠⠠⠠⠠⠠⠠⠠⠠														
경사로 손잡이 (상부)	화살표 좌측 교실 우측 교무실														
	좌	⠠⠠⠠⠠⠠⠠⠠⠠⠠⠠⠠⠠⠠⠠⠠⠠													
우	⠠⠠⠠⠠⠠⠠⠠⠠⠠⠠⠠⠠⠠⠠⠠⠠														
공공 건물 공원 공동 주택	도어록, 승강기	1	2	3	4	5	6	7	8	9	0	개	폐	비상	호출
		⠠⠠	⠠⠠	⠠⠠	⠠⠠	⠠⠠	⠠⠠	⠠⠠	⠠⠠	⠠⠠	⠠⠠	⠠⠠	⠠⠠	⠠⠠	⠠⠠
화장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				⠠⠠⠠⠠⠠⠠⠠⠠⠠⠠⠠⠠⠠⠠⠠⠠				⠠⠠⠠⠠⠠⠠⠠⠠⠠⠠⠠⠠⠠⠠⠠⠠						
기타	사무실				안내소				공연장						
	⠠⠠⠠⠠⠠⠠⠠⠠⠠⠠⠠⠠⠠⠠⠠⠠				⠠⠠⠠⠠⠠⠠⠠⠠⠠⠠⠠⠠⠠⠠⠠⠠				⠠⠠⠠⠠⠠⠠⠠⠠⠠⠠⠠⠠⠠⠠⠠⠠						
	도서관				교무실				교실						
	⠠⠠⠠⠠⠠⠠⠠⠠⠠⠠⠠⠠⠠⠠⠠⠠				⠠⠠⠠⠠⠠⠠⠠⠠⠠⠠⠠⠠⠠⠠⠠⠠				⠠⠠⠠⠠⠠⠠⠠⠠⠠⠠⠠⠠⠠⠠⠠⠠						
휴게실				강의실				관리사무실							
⠠⠠⠠⠠⠠⠠⠠⠠⠠⠠⠠⠠⠠⠠⠠⠠				⠠⠠⠠⠠⠠⠠⠠⠠⠠⠠⠠⠠⠠⠠⠠⠠				⠠⠠⠠⠠⠠⠠⠠⠠⠠⠠⠠⠠⠠⠠⠠⠠							

### 부록 3.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그림 부록 3-1〉 점자안내판 예시

#### 1) 기능

점자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설의 주요 동선을 돌출된 선과 점자로 표현한 안내판으로 시설의 공간 현황 및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특정 랜드마크 지점에 설치하여 목표지점까지의 보행동선을 확인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목적으로 설치된다.

#### 2) 종류

점자안내판은 설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스탠드형과 벽면형으로 나뉜다.

- (1) 스탠드형 점자안내판: 외부출입구 부근 접근이 용이한 곳에 스탠드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의 제약이 있으며 위치 변동 가능성과 자칫 협소한 통로에 설치하면 보행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설치 시 인근 음성유도기에서 유도해주는 등 유기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2) 벽면형 점자안내판: 주출입구 및 접근이 용이한 곳에 벽면에 부착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상 제약이 적지만 점자안내판의 내용이 많을 경우 안내판의 규격이 허용기준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설치 시 인근 음성유도기에서 유도해주는 등 유기적으로 설치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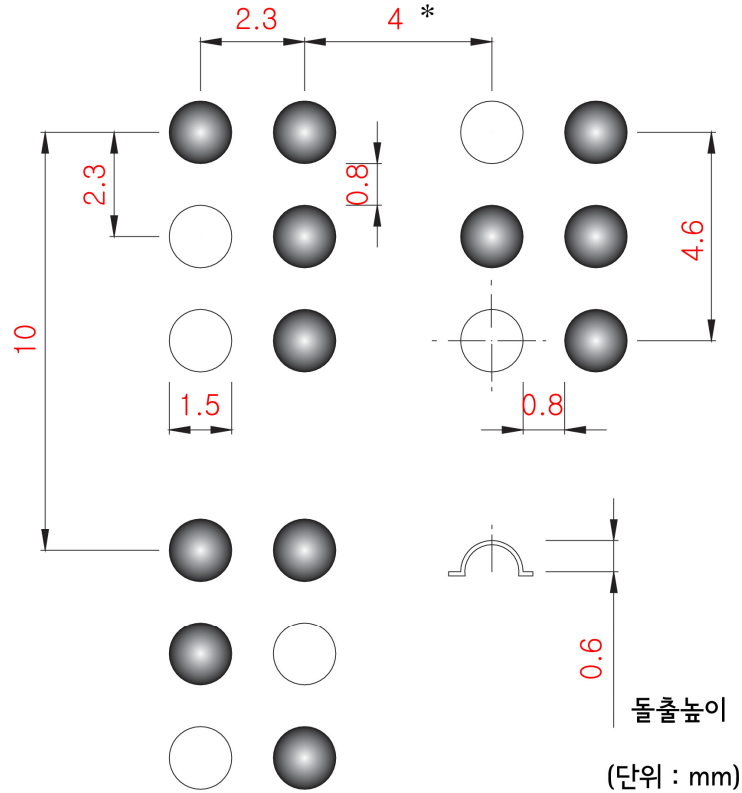
#### 3) 구성

- (1) 구성은 소개 및 진행 안내(점자안내문구), 현위치, 촉지안내도, 유도동선, 기타안내 등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2) 글자와 점자, 그리고 픽토그램(pictogram)을 같이 표기하여 중증 시각장애인뿐 만 아니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안(Universal Design)이어야 한다.
- (3) 일반적으로 소개 및 대략적인 진행에 대해 점자로 표기한 안내문, 실내 공간배치 현황 및 위치 정보에 대해 양각화 된 선 및 점 그리고 현위치와 점자 표기가 있는 '촉지안내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범례, 층별 안내, 음성안내 및 직원 호출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

#### 4) 규격

점자안내판에 표기되는 점자는 점자 규격을 준용해야한다. 촉지안내도는 두손으로 연속적으로

촉지할 수 있는 넓이(A3 사이즈 내외)로 제작해야하며, 소개 및 진행 안내, 현위치, 층별 안내, 음성안내 및 호출 버튼 등 까지 포함한 전체 안내판의 크기는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작게 한다. 점자 표기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반구형을 원칙으로 하며 부식형의 경우 손빔, 이질적 촉지감 등 이유로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 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등과 같이 표기내용이 많을 경우 최소 3mm 까지 조정가능.

〈그림 부록 3-2〉 KS B 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의 점자규격

### 5) 재질

재질은 내마모성 및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하며, 이질감과 손빔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온도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3) 4) 5) 항목은 세부내용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을 준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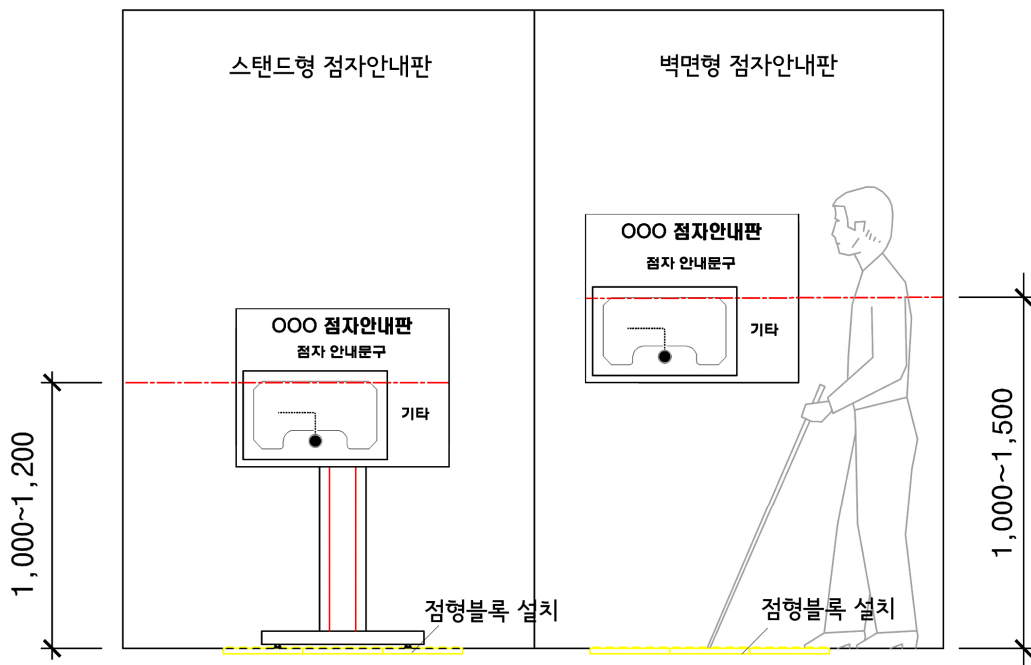
### 6) 유지 및 보수

(1) 시설 운영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배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점자안내판의 내용도 즉각 수정하여야한다.

- (2) 점자안내판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해야한다. 만약 실외에 설치된 경우 캐노피, 비막이 등을 설치하여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점자안내판의 방위는 실제 건물배치와 일치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단,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 방위 및 위치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 7) 설치원칙

- (1) 외부출입구 인근 등 쉽게 찾을 수 있고 점자블록을 통한 유도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2) 실제 시설 내부 배치와 동일한 방위로 점자안내판을 고정시켜야 한다.
- (3) 점자안내판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한다. 다만, 점자안내판이 벽면형이거나 점자안내표시 내용이 많아 1.0m~1.2m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판의 중심선이 1.0m~1.5m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4) 점자안내판의 내용은 실내배치도와 설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위치에서 목표지점까지의 보행동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축지안내도의 선과 구분이 되도록 점선의 형태를 달리해야한다. 반드시 표기되어야 내용으로는 화장실, 계단, 승강기, 안내 등 이다.
- (5) 실내배치도는 최대한 단순화하고 현재위치, 목표지점, 각 회전지점과 필요한 랜드 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 (6) 점자안내판의 내용인 각 내부시설이나 랜드마크는 그 위치에 직접 점자로 기입해야하며 범례로 표기하면 아니 된다.
-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서식 2에 기술된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시설이 의무인 대상시설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 (8) 환승역인 경우 환승에 대한 안내까지 표기해야한다.



〈그림 부록 3-3〉 스탠드형, 벽면형 점자안내판

## 부록 4. 음향신호기

### 1) 기능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에 연결하여 신호등화의 내용 및 변화를 음향으로 알려주는 보행자 신호기의 부가장치로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한다.

### 2) 설치기준

#### (1)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 전철·철도역·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 (2) 설치 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단,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차로는 해당 시설물을 개선한 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3) 안내음향의 구성

〈표 부록 4-1〉 위치 안내음향의 구성

구분	교차로 / 단일로	단일로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J. S. Bach)” (피아노음) : 약 5초간 발생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왼쪽 : 남성, 오른쪽 : 여성)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대기선으로 이동하여 신호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성)

〈표 부록 4-2〉 교통섬 지역에서의 음성유도기 유도음향의 구성

구분	교통섬 지역
멜로디	“G장조의 미뉴엣(J. S. Bach)” (피아노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전방 00m 앞 교통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왼쪽(오른쪽)에서 차량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 건너시기 바랍니다.” (여성 음성)

※ 이러한 음성전달 메시지의 내용은 교통섬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 신호안내음향의 구성

리모컨 또는 버튼을 작동시켜 한 수신기에서 신호안내음향이 발생되면 한 조를 이루는 맞은편 신호기에서는 보행 시간(보행녹색 및 점멸) 중에 바탕음이 발생하여 시각장애인이 맞은편으로 쉽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횡단하고자 하는 양쪽 수신기의 바탕음은 양쪽에서 교대로 이어서 울려야 한다.

〈표 부록 4-3〉 신호 안내음향의 구성

신호상태	적색	녹색(Walk)	녹색점멸 (Ped. Clear)	
			점멸음	끝 음
음향내용	예고음	시작음	점멸음	끝 음
멜로디	없음	딩동댕	없음	없음
음성전달 (메시지) 내용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차로 ○○방향 횡단보도입니다.	○○방향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멜로디 종료직후)	점멸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없음
바탕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 및 녹색점멸 신호시간 동안 바탕음 계속 (단, 메시지 방송시간 동안 바탕음 정지)</li> <li>○ 바탕음 발생시간 : 총 주기 2초, 발생시간 0.7초</li> <li>○ 바탕음 구분 : 귀뚜라미(동서방향 가로) 새소리(Chirp-Chirp, 남북방향 가로)</li> </ul>		

※ 음성전달은 좌측은 남성, 우측 및 단일로는 여성 목소리로 한다.

※ 바탕음은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음원을 사용한다.

#### 5) 위치신호 안내음향 공통사항

- (1) 위치 및 신호 안내음향을 발생시키는 송신전파 수신거리는 도로폭 등 주변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위치안내음향 약 15m, 신호안내음향 약 10m).
- (2) 시각장애인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남녀의 음성에 의한 좌우 횡단보도의 구분과 더불어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한 안내되어야 하며 가급적 음향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되는 경우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히 수신거리를 조정해야한다.
- (3) 작동 우선순위
  - ① 선 사용자 우선: 위치 또는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어 음향을 안내하는 중에 동일한 종류의 안내버튼이 다시 작동되는 경우 전달되던 음향은 계속 안내되어야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가 수신기에 기억되어 진행되던 음향의 종료 후에 자동적으로 음향이 전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② 신호 안내음향 우선: 위치 안내음향의 전달 중에 신호 안내버튼이 작동되면, 위치 안내음향이 중단되고 신호안내 음향이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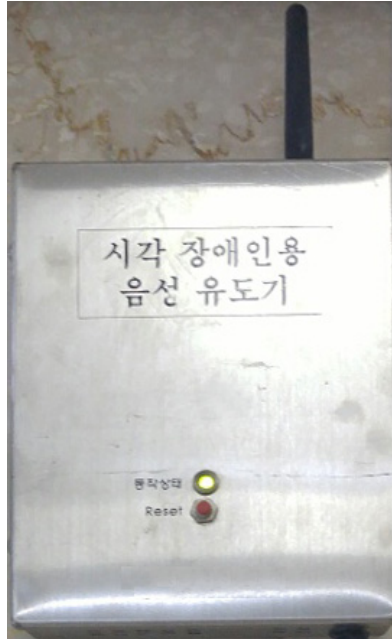
- ③ 횡단개시 안내 우선: 적색 신호 메시지를 안내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이를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 ④ 신호안내 버튼이 작동되어 대기 중인 상태에서 다른 버튼의 작동으로 위치 또는 신호 안내 음향이 전달되는 중에 녹색으로 신호가 변경되면 해당 안내 음향을 중단하고 횡단개시 메시지를 안내한다.

#### 6) 송수신기 공통사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리모컨과 버튼 어느 것으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의 설치 높이는 1.0m~1.2m 내외로 하며, 버튼의 기능은 신호안내 음향을 작동시켜야 한다. 버튼은 시각 장애인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접 물체와 대조된 색(황색)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버튼 함체의 상단 중앙부에는 흑색으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라고 인쇄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신호기 버튼’ 이라는 점자를 양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그 밖에 규격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경찰규격서(2009. 6)를 따름

## 부록 5. 음성유도기



〈그림 부록 5-1〉 음성유도기 사례

### 1) 기능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이 이동할 때, 지하철 및 기차 역사,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의 대중여객시설과 건물의 입구나 현관 및 각종 목표지점 등의 특정지점이나 시설에 부착하여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그 위치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 2) 근거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표준을 따름(KICS.KO-06.0046/R3)(Standard of Audio Guiding Device for Visually Handicapped).

### 3) 유지 및 관리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점자블록이나 점자표지판과 달리 동작하는 편의시설이므로 월별 등 주기적인 검사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 4) 설치원칙

#### (1) 설치장소

-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서식 2에 기술된 안내시설 중 유도 및 안내시설이 의무인 대상시설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한다.

- ② 시각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맹학교, 복지관, 공원 등의 시설에 설치하여야한다.
- ③ 특별히 복잡하거나 알려야 할 장소로 시각장애인들이 인지하기 쉬운 곳에 설치 가능하다.
- ④ 시각장애인 단체나 시각장애인들이 설치하기를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 가능하다.

(2) 음질, 크기, 안내멘트의 구성

- ① 음질은 비교적 명료한 톤으로 베이스가 적어야 하고 실내에서는 안내멘트와 멜로디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소리크기는 실내는 40dB, 실외는 60dB로 한다. 단, 실외의 경우 07시~19시(오차범위 ±10분) 에는 60dB로 하고, 19시~07시(오차범위±10분) 에는 40dB로 한다.
- ③ 음향 크기는 수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의 지면 1.2m~1.5m 높이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설치지점 주변소음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무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크기를 증감할 수 있다.
- ④ 타이머의 작동으로 변화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는 07시~21시까지로 하고, 유동인구가 적고 변화가 아닌 경우는 07시~19시로 정한다.
- ⑤ 가급적 간단하게 구성하여야 하고 지하철 역사의 맞이방(대합실)에서와 같이 인접거리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가급적 안내멘트의 내용이 짧아야 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구성하여야한다.

(3) 설치 방법

- ① 시설물의 출입구,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개표구, 승강장 등의 편의를 목적으로 음성안내를 하고자 하는 지점의 기둥 또는 벽면, 안내표지 등에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출력 방향은 보행동선에 맞게 하여야한다.
- ② 수신기 함체는 지상으로부터 2.0~2.5m 높이에 설치하여야한다.
- ③ 수신기는 자동발매기, 개표구, 화장실, 내부 및 외부계단, 외부 승강기, 승강장 끝부분 및 매개시설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음성유도기의 중복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기의 거리는 최소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음성 유도가 필요하여 협소 공간에 2개 이상 설치해야 할 경우 우선순위를 두어 순차 제어하도록 한다.
- ⑤ ④항 등의 이유로 음성유도기의 설치가 생략된 경우 인근에 설치된 음성유도기에서 추가안내할 수 있다.

## 부록 6. 경보 및 피난설비



〈그림 부록 6-1〉 경보 및 피난설비 사례

### 1) 기능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피난을 돕기위해 소화전, 화장실, 출입문 등에 설치하여 경보음, 불빛 등을 통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 소리와 불빛으로 위급상황을 알리고 피난을 돕기 위한 장치이다.

### 2) 근거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설치원칙

- (1)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한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m~2.5m에 설치 하도록 하되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비상시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출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 한다.
- (4) 모든 유도등에서 소리가 출력될 경우 시각장애인이 방향 찾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피난구 유도등에만 음성으로 유도할 수 있다.

## 부록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 1)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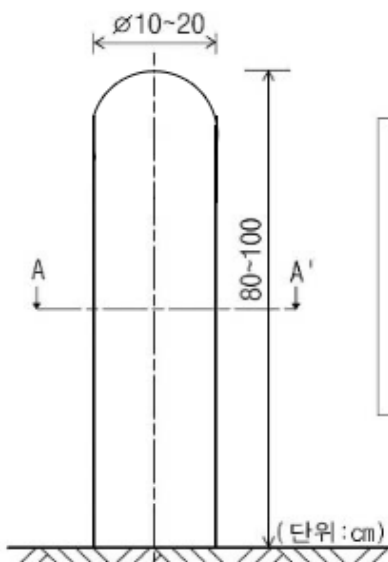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는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 등 보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 2)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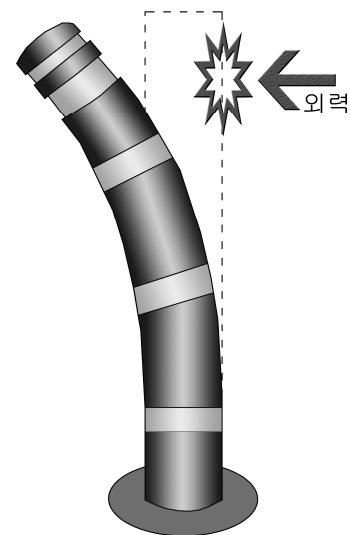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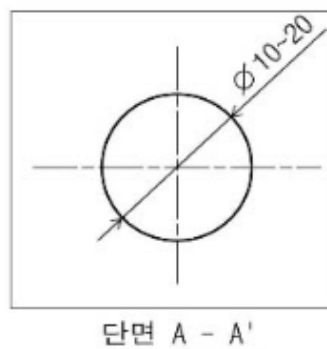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 설치원칙

- (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한다.
-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反射塗料)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 (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한다.
- (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한다.(2미터이상 권장)
-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 (7)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상단부는 하단의 예와 같은 반구형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
- (8) 선형블록에서 최소 60센티미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그림 부록 7-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규격



〈그림 부록 7-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길말뚝) 재질

## 부록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 2. 공원

〈표 부록 8-1〉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한다.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표 부록 8-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용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선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한다.</p>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한다.</p>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p>(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p> <p>(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p>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한다.</p> <p>(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한다.</p> <p>(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p> <p>(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p>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 부록 8-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전기구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에너지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개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응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 이상만 적용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300제곱m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전면리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부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유실	샤워실·탈의실	전자블록	에너지절감내설비	정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등에유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회 시설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의료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노 유 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운동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전면리	장애인지원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부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유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에너지절감내설비	정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등응급위험후계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 이상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전면리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부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유실	샤워실·탈의실	전자블록	에너지절감내설비	정보및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임상부등응급위험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 4. 공동주택

##### 가. 일반 사항

〈표 부록 8-4〉 공동주택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 부록 8-5〉 공동주택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대표소·판매기·음료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이번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매뉴얼 제작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며 2016년 『공원』 편에 이은 7번째 발행물입니다.

본 매뉴얼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7개 시·도 지부, 전국지회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들과 토의 및 합의를 통해 제작한 성과물이며 아래의 위원님들이 직접 자문에 참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문위원

-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부장)
-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홍현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국장)

발행일: 2017. 12.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후 원: 보건복지부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601호

홈페이지: [www.kbufac.or.kr](http://www.kbufac.or.kr)

문의처: 02-799-1022